#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2018. 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Ⅰ.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1
1.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3
가. 개 요
나. 기업지원4
다. 개인지원12
라. 공동훈련14
마. 민간훈련16
바. 공공훈련21
2. 국가기술자격제도22
가. 개 요
나.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및 응시요건26
다. 자격검정 종류 및 방법27
라. 자격검정 절차28
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3.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확산·······31
가. 추진 내용31
나. 블라인드 채용의 기대효과31
다. 추진 현황31
4. 숙련기술장려시책33
가. 기능경기대회33
나. 대한민국명장·우수숙련기술자 선정 ·······34
다. 숙련기술전수자ㆍ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35
5.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법령36

Ⅱ. 직업늉력개발사업 실적	37
1.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39
가. 총 괄	39
나. 재직자훈련	40
다. 실업자훈련	45
라. 공공훈련	50
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57
가.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 $11\sim$ ' $17$ ) ····································	57
나. 재직자훈련	58
다. 실업자훈련	
라. 공공훈련	
마. 국제협력사업	70
3.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72
4. 자격제도	73
가. 우리나라 자격 현황	73
나. 주무부처별 자격종목 현황	74
다. 직무분야별 자격종목 현황	75
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현황	······ 76
마. 민간자격 공인 현황	77
5. 국가직무능력표준	······ 81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현황	81
나. 직업훈련기준 현황	
다. 직업훈련 교재개발 현황	125
6. 숙련기술기능장려 사업현황	126
가. 연도별 전국기능경기대회 현황	126
나. 연도별 지방기능경기대회 현황	126
다. 연도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현황	
라. 대한민국명장 ·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선정	
마.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128

	Ⅲ. 관련자
연혁 ····································	1. 직업능
조직141	
국폴리텍 ······ 143 국대학교 ···· 144	
부개발원 ························145	
· 관계법령 주요변천 현황 ·······146	3. 직업능력
훈련비용단가178	4. 훈련직
l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185	5. 국가기
ː관련 조사 현황 ···································	6. 직업능

#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1.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3
<i>2.</i>	국가기술자격제도	22
3.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확산	31
4.	숙련기술장려시책	33
<i>5.</i>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법령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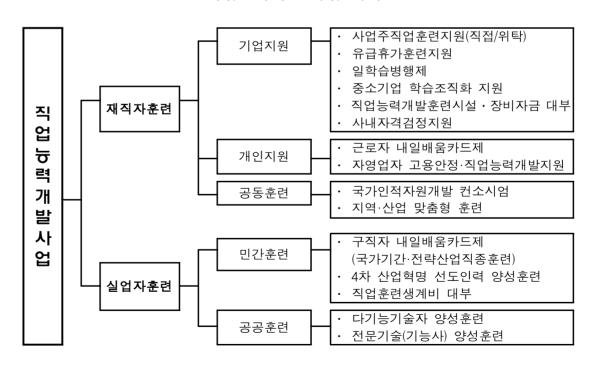


# 1. 직업능력개발 지원 시업

# 가. 개요

-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의 개념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업훈련 대상별 구분
  - (재직자 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
  - (실업자 훈련)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습득을 위하여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

####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나. 기업지원(사업주가 근로자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1) 사업주직업훈련지원

- 지원대상
  -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 훈련방법

- 자체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 우편),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훈련 실시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 집체훈련: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훈련비 지워
    - · (자체훈련)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6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1,000인 이상 기업 40%)
    - ·(위탁훈련)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6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1,000인 이상 기업 40%)
    - \* 사업주가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위의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
  -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훈련수당 지원
  -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식비(1일 3,300원 한도), 숙식비(1일 14,000원 한도) 지원
    - ※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000원 한도로 지원



#### ○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실시 전 현장훈련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집체 또는 원격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

#### ○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

-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 훈련과정 분량이 8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터넷원격훈련 지원단가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
- 우편원격훈련: 훈련기간이 2개월(32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편원격훈련 지원단가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

#### <워격훈련 지워금>

(단위 : 원)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훈련	스마트훈련	우편훈련
А	5,600	11,000	3,600
В	3,800	7,400	2,800
С	2,700	5,400	1,980

#### ○ 혼합훈련에 대한 지원

- 혼합훈련: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집체훈련과 원격 훈련 또는 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 혼합된 개별 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산정한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지워
  - ※ 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이상이고, 우편원격훈련을 포함할 경우 최소 2개월(3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 비용지원절차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신청
  - ※ 위탁훈련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과정 심사 일정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 ·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교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
-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지사에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

## 2) 유급휴가훈련지원

-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
    - ·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 ·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의 임금 외에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의 일부도 지원
  - 그 외 기업
    - ·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 ○ 지원수준

훈련비용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		
	ㅎ려차서지이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소정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50%	
임금	훈련참여자임금	그 외 기업	소정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00%	
	대체인력임금	우선지원대상 기업 등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00%	

#### ○ 지원절차

- 재직근로자훈련 비용지원 절차와 동일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

## 3) 일학습병행제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이(단독기업형 : 50인)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원칙)
    - \* 우수기술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 유형

	대상 및 유형	명 칭	주요 내용
자 단독기업형		엄형	명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현장 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 실시
직 자	듀얼공동훈련센터형		대기업 대학 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 훈련(OFF-JT) 실시 지원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 현장성 제고
재	<고교+전문대>	Uni-Tech	고교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통합하여 기간단축 및 조기입직 유도
학 생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大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제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 장기현장실습 + 일학습병행제 참여
後학습	P-Tech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

#### ○ 지원과정

- 채용자에 대한 양성훈련(1년~4년)



#### ○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과정 개발, 학습 도구 지원컨설팅 등 훈련인프라 구축 지원 및 훈련비, 전담인력 수당 지원

#### <기업 지원 내용>

인프라 구축 지원	▲ 훈련과정 개발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개발 기관(ISC 등)에 지원
훈련 지원금	▲ 현장훈련(OJT) 비용 ▲ 현장 외 훈련(OFF-JT) 비용 ▲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월 40만원 한도)	※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 비용은 1,000인 이상 기업은 차등 지원 ※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은 1,000인 이상 기업 지원 제외
기업 전담인력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400~1,600만원) ▲ HRD 담당자 수당(연300만원)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교육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은 1,000인 이상 기업 지원 제외

#### ○ 지원체계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 일학습병행제 홍보 및 참여기업 지도·감독	∘ 참여기업 선정
○ 일학습병행제 현장협업체계 운영	∘ 운영기관 시업계획서 심사, 지원금 지원 및 정산

# 4)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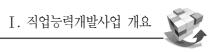
○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기업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 확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학습활동 및 이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 지워대상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 훈련 등에 참여하여 6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별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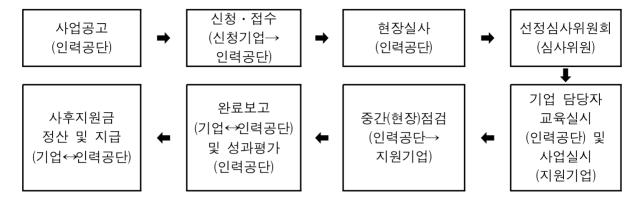
유 형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학습조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 학습조 운영비
활동지원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한하여 지원	- 조당 월 30만원 한도
	^\ <sup>™</sup>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단, 계속기업 중 우수기업은 조당 월 40만원한도)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조당 2개월에 60만원(우수기업 80만원) 한도 사용 가능



유 형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 <b>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b> - 학습조 지원 수	*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신규기업 : 최대 5개조까지 지원 * 계속기업 : 최대 8개조까지 지원(단 성괴평가	* 강사비, 수강료, 교재구입비, 인쇄비, 재료비 등 지원
	결과 우수기업은 최대 10개조까지 지원)	○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
	- 운영기간 : 최대 6개월(10월말까지 학습조 활동 종료해야 함)	- 기업당 200만원 한도(공단 주관 교육에 한함)   - 교육비 잔액을 학습조활동 공통 운영비로
	- 학습조 정기모임 : 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직화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	집행 가능(단, 총 교육비의 30%(최대 60만원) 까지 전용가능하나, 공단 승인을 득해야함)
	조직화 관심 유도, 근로자 참여 독려,	○ 학습리더 활동수당(기업당 1인에 한함)
	학습조 지원 등을 위하여 CEO, 학습조장,	- 월 20만원 한도
	학습리더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습리더 에게는 활동수당 지원	(단, 계속기업 중 우수기업은 월 3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리더에게 지급한 활동수당의 100분의 70 지원
		* 지원기업은 학습리더에게 지급하는 활동 수당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부담 (기업부담금)
		* 학습조 운영기간만 지원
		※ 학습조 활동지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지원 가능
우수사례	○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경진대회	○ 공단 주관 성과경진대회
확산지원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전국(지방) 학습활동 경진대회 결과 입상 기업 포상 : 전국대회는 최고 400만원, 지방 대회는 최고 120만원
학습네트워크 활동지원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 하는 기업들이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 컨설팅비,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 운영비, 우수기관 현장방문 운영비 등 학습네트워크 운영비용
	하는 경우 지원	- 신규·계속기업당 100만원 한도
		- 종료기업당 50만원 한도(종료 후 차년도에 바로 참여시 최대 3년간 지원)
외부전문가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조직 진단,	○ 외부전문가 코칭 및 컨설팅 비용
지원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이나 CEO, HRD 담당자 등에 대해 동기부여, 문제해결, 피드백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원(지도)을 받을 경우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정부지원금(소요비용) 7 대 3 비율로 의무 부담금을 부담
		* 지원기업은 의무부담금 외 자율부담금과 부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함
학습인프라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	○ 학습인프라(장비) 구축 비용
구축	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일정 구입비용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인프라구축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
		* 지원기업은 소요비용의 100분의 30을 의무적 으로 부담(기업부담금), 부가세 추가 부담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가능
- 지원절차



##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장비자금 대부

- 대부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훈련법인,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 대부금액
  - 60억원을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범위내에서 대부
- 대부조건

대 상	대부금리('16)	대부기간
○ 중소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1%	
○ 우수훈련기관·		○ 시설 : 10년이내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공동훈련센터		(5년거치 5년상환)
○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5%	○ 시설 + 장비 : 10년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 장비 : 평균내용연수
○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00/	(최대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 그 밖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직업훈련 사업주 등)	2%	
○ 근로자단체		

<sup>\*</sup> 우수훈련기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7조,「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규정 등에 의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



- 신청 및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6) 사내자격검정지원

- 지원대상
  -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 지원요건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심사를 받을 것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제출서류: 사업내자격검정사업신고서,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전년도 결산서류, 자격검정실시 계획서, 사업내자격검정실시 규정

#### ○ 지워내용

자격검정개발비	종목별 개발비의 1/2 범위내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1회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0만원까지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반영 시 검정개발비 추가 지급	
종목별 검정운영비의 1/2 범위내에서 연간 1,000만원 한도로 3년건 검정운영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0년간 지원 ※ 단, 다수 종목 운영시 연간 최고 3,000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총괄팀 ☎ 052) 714-8692



다. 개인지원(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 1)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일용근로자
  -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3년간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인지원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
  -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인 사람
  - 육아휴직 중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중인 자
  -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임의가입)

#### ○ 지원내용

-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개설) 확인 후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훈련 참여
-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능력개발 지원제도

#### ○ 지원수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100%지원
  - ※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됨)



# 2)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

- 개요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수준
  - (능력개발지원금) 훈련비용의 100% 지원(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훈련장려수당 지원(1일 18천원)
  - (취업훈련지원금) 실 훈련비의 20~95%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년간 200만원 지원(5년간 300만원)
-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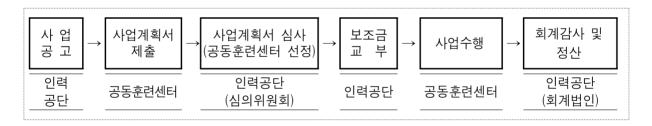




# 라. 공동훈련

#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지워대상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원과정
  -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양성훈련
- 지워내용
  - 훈련시설·장비비 : 연간 15억 한도(소요비용의 80%)
  - 운영비 : 연간 4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 ※ 전담인력 인건비는 80%
  - 프로그램 개발비 : 연간 1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 지원체계



# 2)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 개요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 지역단위에 지역상의·경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치 단체·노동단체·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 Regional Skills Council)를 구성, 공동수요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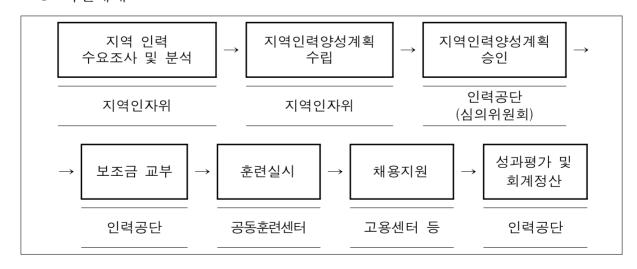
※ '18년 현재 16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운영 중



## ○ 지원내용

-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 인건비, 수요조사비, 운영비 등 연간 6억원 한도
- □ 지역 공동훈련센터
  - ▶ 훈련시설·장비 구축비용: 연간 15억원 한도 (공동훈련센터 20% 대응투자)
  - ▶ 훈련비: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사업주 훈련단가) 또는 실비지원 방식
  - ▶ 운영비(인건비 포함): 연간 최대 3억원 한도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 ▶ 프로그램개발비: 2억원 한도

#### ○ 지원체계





마. 민간훈련(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 1)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 제도개요
  - (내일배움카드) 취·창업을 위한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기계 금속 전기 동력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하여 기술 기능인력 양성 공급 및 기업의 구인난과 실업문제 해소

#### ○ 훈련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세 이상)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 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면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지원
  - 실업자
  -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5,000 만원 미만인 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휴업신고자의 경우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 · 사업기간이 1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근 1년간 사업소득이 15,0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기간 관계없이 지원가능)
  -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
  - 농 어업인 중 농 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제대예정군인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법무부장관 추천을 받은 난민인정자 등

#### ○ 지원대상 훈련과정

-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등을 거쳐 적합성을 인정받아 HRD-Net(hrd.go.kr)에 훈련기간, 시간표, 교·강사 등 세부훈련정보를 공개하는 과정



※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일정이 정해지면 HRD-Net에 등록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실시간 검색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 지원내용

#### <내일배움카드>

-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 간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마다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훈련생에게는 1일 훈련시간 및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 장려금(월 116천원 한도) 지급
  -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실제 훈련비의 50~95%를 지원하고, 1유형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 전액 또는 90% 지원
  - · 180일 이상 취·창업 전까지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계좌사용 중지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하여야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
    - ※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좌사용이 중지되어 개인에게 부여된 지원한도가 전액 소멸
- 훈련수료자(훈련수료 전 조기취업자 포함)가 훈련종료 후 6개월 이내 동일직종으로 취 창업하여 6개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면 자비로 부담한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환급 신청 가능(소멸시효 3년)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훈련비 전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참여 가능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는 월 최대 216~4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 실업급여를 수급받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훈련 장려금이 일부 부지급될 수 있으며, 2회차 수강자는 추가 지원가능금액의 50%만 지급되고, 3회차 수강자에게는 미지급

#### ○ 신청방법

- HRD-Net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동영상" 이수 및 WORK-Net 구직신청 완료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서 제출



- ※ 지원절차 : ①교육동영상 이수 및 구직신청 → ②계좌발급 신청 → ③ 훈련상담 → ④계좌발급 결정 → ⑤훈련 신청 · 수강 → ⑥훈련비 · 훈련장려금 정산 · 지급
- 기 타
  - HRD-Net 인터넷주소 : http://www.hrd.go.kr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2)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 제도개요
  -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 등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고학력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 운영
- 훈련대상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실시규정에 따른 계좌 발급가능자 중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고 취업의지가 높은 구직자 중 훈련기관이 자율 선발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스마트제조, IoT,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모하여 선도훈련과정 선정
    - ※ '18년 1차 14개 기관 24개 훈련과정(595명), 2차 12개 개관 20개 훈련과정(501명) 선정

#### ○ 지워내용

- 훈련비 전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참여 가능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는 월 최대 216~4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동일
- 훈련기간 및 수강 가능 횟수
  - 훈련기간은 3~10개월(350시간 이상)



#### ○ 훈련수준

- NCS Level 5 이상 고급수준
  - ※ NCS 미 개발과정은 유사(명칭) 훈련과정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고급 훈련과정임을 제시
-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추기 위해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 프로젝트 실습 편성
- 훈련과정별 20~30명 정원 편성, 테스트를 통한 탈락제도 운영 등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품질관리 실시
- 신청방법
  - 희망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생으로 선발된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발급신청
    - ※ 지원절차 : 훈련생 선발(훈련기관) → 계좌발급 → 훈련수강 → 훈련장려금 지원

#### 0 기타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에 대한 상세한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www.hrd.go.kr)에서 검색할 수 있음

## 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사업목적
  - 취약계층(비정규직, 전직실업자)이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부대상
  -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연간 소득 배우자 합산 8,000만원 초과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지원하도
  -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내) 한도
    -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 상환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 지원 절차

-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인

비정규직 여부(근로계약서) 및 훈련사실(수강증) 확인 근로복지공단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입금 (신청인 구좌) 대부 대행은행

 $\Rightarrow$ 

- 전직 실업자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인 실업자 여부(Work-net) 및 훈련사실 확인(HRD-Net) 근로복지공단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근로복지공단

대부금 입금 (신청인 구좌) 대부 대행은행



# 바. 공공훈련

# 1)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

훈련기간	2년 과정(주간 및 야간, 일부 대학은 주간만 운영) ※ 졸업 시 산업학사 학위 수여
입학자격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예정자
전형방법	고등학교 내신(학생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 등
- 졸업 시 산업학사 학위 수여(전문대졸과 동등 학력) -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 부여 - 희망자 전원 기숙사 제공(일부 대학 제외) - 재학 중 군입영 연기	

※ 상담 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 학사총괄팀 ☎ 032-650-6642

※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www.kopo.ac.kr

# 2) 전문기술(기능사) 양성훈련

훈련기간	1년 과정(주간), 단기과정(주간,야간)
입학자격	·만 15세 이상 실업자 ·일반고 3학년 진급예정자로서 수료 후 취업을 원하는 비진학 예정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훈련생 특전	・기숙사 무료제공 및 훈련비, 식비 등 전액 국가부담 ・국가기술자격(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및 취업알선 ・훈련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통학생에 한함)

※ 상담 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 학사총괄팀 ☎ 032-650-6642

※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www.kopo.ac.kr



# 2. 국가기술자격제도

## 가. 개요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념 : 국가가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skill)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하는 제도

## 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구성

- **자격의 틀**(framework) :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어느 수준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정하는 것
  - 등급체계(직무수행능력수준의 수직적 위계, skill level), 분류체계(직무수행의 횡적 분야, skill type), 종목의 신설·통합·폐지, 시험 응시요건,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분 등

<국가기술자격의 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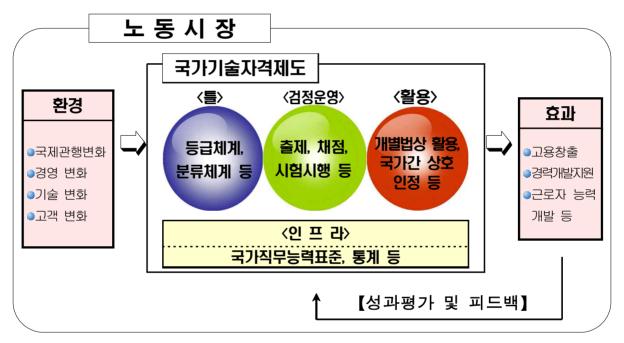
skill	기술사				
level					
	산업기사	>	종목(용접산업기사)		
-			<b>↑</b>		
-	기능사		I		
-		기계제작	용접	전기	····· skill type

- ※ 2017.12.31.현재 26개 직무분야, 61개 중직무분야, 525종목 운영
- **검정의 운영** : 평가분야 및 수준별로 이루어진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취득자를 배출하는 것
  - 자격종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시험시행·채점, 합격자에 대한 관리 (증서발급 등) 등



- **자격의 활용** : 취득한 자격이 국내·외 노동시장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장치
  - 국내에서의 활용(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의무고용, 면허취득요건 등), 국외에서의 활용(국가간 협약을 통한 자격상호인정 등) 및 불법적인 자격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 **제도 인프라**: 자격의 틀, 검정의 운영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토대가 되는 것으로 주변환경의 변화(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 등)를 파악하여 피드백하는 것
  - 국가직무능력표준(산업현장의 직업(직무)수행능력 요소를 표준화한 것), 각종 통계, 정보체계(Q-Net) 등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성도>



# 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기능 및 역할

- □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 및 선별
  -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의 직무수행능력의 수준(level)과 분야(type)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신호(signal)로서 기능
    - 신호기능은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 발생하는 skill mismatch 문제 해소에 도움
    - \* 구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을 과대평가,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과소평가
  - 기업이 근로자의 인사관리(채용, 승진, 전보, 보수 등)시 국가기술자격을 선별장치(screening device)로 활용



####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경력개발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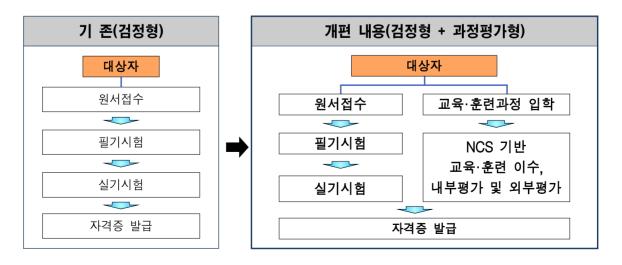
- 기업에서의 보상과 연결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업 훈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토록 유인(guide)하는 기능
-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의 수직적 등급체계를 통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도
  - 특히, 별도의 경력경로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소속 근로자의 경력경로개발에 활용 가능
    - ※ 재직근로자에 대한 미래비전(경력경로 구축) 부족이 중소기업 근무 기피의 원인중 하나로 작용하는 문제 해소에 도움

## □ 국가 인적자원의 확충

- 국가기술자격의 신호·선별·선도 기능이 복합되어 국가적으로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중소기업 경우 근속년수나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의 인적자원관리로 전환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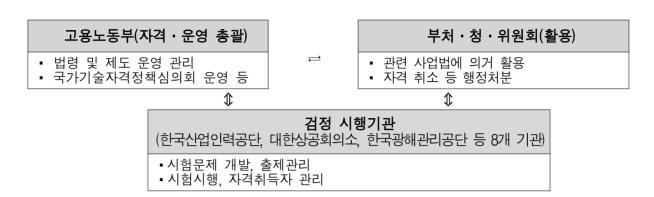
# 4)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체계

- 국가기술자격은 18개 소관부처(청,위원회)별로 관장하나 제도 총괄관리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담당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4.5.20)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방식이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개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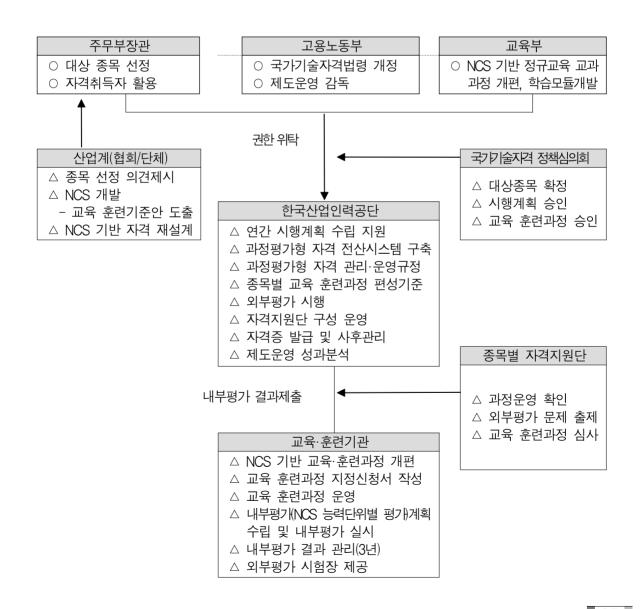




-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NCS를 기반으로 개편·운영하고,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정상화



- '14년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시행





# 나.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및 응시요건

# 1) 검정형 응시자격

	응 시 요 건				
등급 	기술자격 소지자	<u>관련학과 졸업자</u>	순수 경력자	비고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경력	○ 대졸+6년			
	- 기술사	○3년제 전문대졸+7년			
┃ ┃ 기술사	- 기사+4년	○2년제 전문대졸+8년	9년		
/  <u> </u> /	- 산업기사+5년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3단		
	- 기능사+7년	+6년(8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지격			
	- 기능장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			
기능장	- 산업기사+5년	(예정자)	9년		
	- 기능사+7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	○3년제전문대졸+1년			
기사	- 산업기사+1년	○2년제전문대졸+2년	4년		
	- 기능사+3년	○ 기시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2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전문대졸(졸업예정자)			
   산업	- 산업기사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I 기사	- 기능사+1년		2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				
기능사	○제한 없음				
	○(기초사무) 제한 없음				
서비스	○(전문사무)대학졸업자,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을 가진 자 등 종목에 따라 다름				

<sup>※</sup>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06학점이상 인정받은 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이상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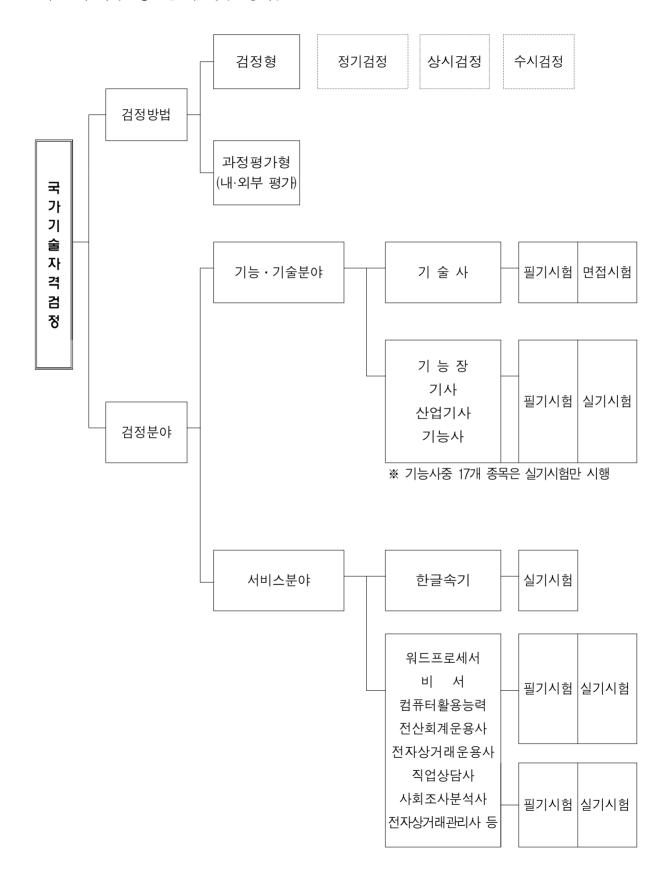
# 2) 과정평가형 자격: 별도 요구되는 응시자격은 없음

\* 지정 교육 훈련시간의 75%이상 출석하고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최종 80점이상인 경우 자격 취득

<sup>※</sup>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폐지(2013.1.1부터)



# 다. 자격검정 종류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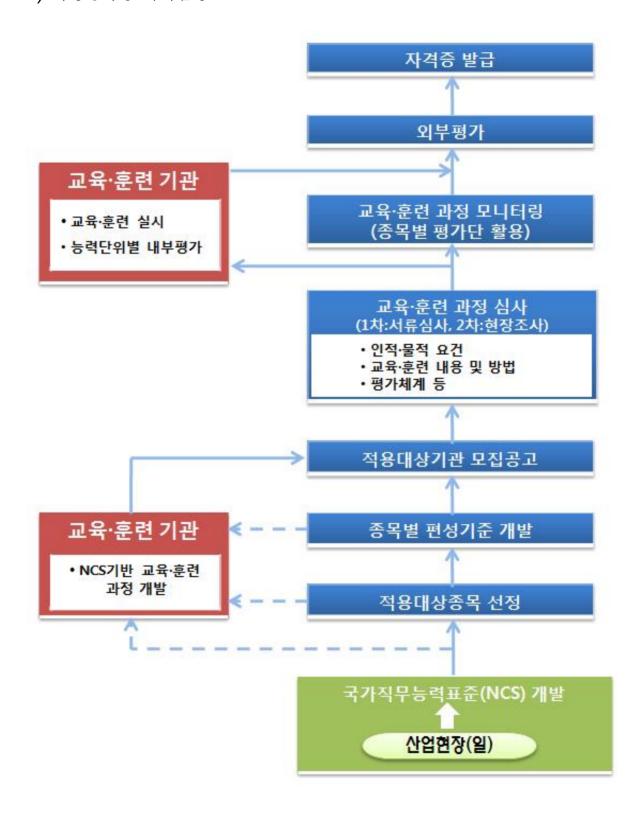
# 라. 자격검정 절차

# 1) 검정형 자격검정





## 2)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 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 '13년부터 고용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 24대 분야 948개 NCS 개발 고시('18. 6. 1)
  - \* 매년 신산업분야 등 50여개 NCS 신규 개발

#### < NCS 24대 분야(대분류) >

01.사업관리	02.경영·회계·사무	03.금융·보험	04.교육·자연·사회과학
05.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보건·의료	07.사회복지·종교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
09.운전·운송	10.영업판매	11.경비·청소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음식서비스	14.건설	15.기계	16.재료
17.화학	18.섬유·의복	19.전기·전자	20.정보통신
21.식품가공	22인쇄·목재·기구·공예	23.환경·에너지·안전	24.농림어업

□ 각 NCS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예시: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NCS의 내용 >

- I	1 74		
직무	능력	세부능력	수 행 준 거 ※ 일부 내용만 발췌
(NCS)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하드웨어	부품의 특성	ㅇ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부품 선정	분석하기	ㅇ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동작조건을 확인
		비표이 거시하다	할 수 있다.
		부품의 검사항목	【지 식】
		결정하기	이 전자부품에 대한 기본 지식
가전기기		ㅂㅍ 서저늰기	
하드웨어		부품 선정하기	ㅇ 부품사양서
		•	[기 술]
개발		•	ㅇ 계측장비 사용 능력
	하드웨어		ㅇ 부품 적용 기능여부 판단 능력
	회로 구현설계		[태도]
	:		ㅇ 부품의 소재 및 재질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
	•		ㅇ 정확한 부품 평가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 (인력공급)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고, (인력수요)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



# 3.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확산

- 가. 추진 내용(대통령 지시사항, '17.6.22. 수석·보좌관 회의)
  -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 하지 않도록 추진
    - \* 채용분야가 특별히 일정이상의 학력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
  -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블라인드 선발 시행
- 나. 블라인드 채용의 기대효과
  - (기회균등)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기회 부여, 학력·지역 차별 감소
    - \* 참여정부 5년 KBS: 명문대 출신 70% → 30%. 지방대 출신 10% → 31%
  - (과정의 공정성) 인적 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신뢰도 향상
  - (만족도 제고) 신입 사원 이직률 감소, 만족도 높고 직무 적응 수월

# 다. 추진 현황

-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17.7.5.)
  -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17.7.13) 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 지원
  - ▲ 330개 공공기관, 44개 지방공기업 대상 컨설팅 완료('17년), '18년 107개 지방 공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중(4월~)
  - ▲'17년 직무능력 평가방법 교육(6회, 188명), 블라인드 채용 적용 교육(5회, 429명), '18.3월부터 인사담당자 및 면접관 상설교육과정 운영
  - ▲ 입사지원서 모니터링('17.7월~) 및 블라인드 면접 현장 모니터링('17.12월 5회, '18.4월~5월 6회)



#### <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

공공기관	우수사례
한국동서발전	<ul> <li>❖(특이사항) '14년부터 서류전형 폐지, '15년부터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 투명한 채용과정을 위해 '16년부터 필기전형 점수 및 경쟁률 공개</li> <li>❖(주요내용) 면접전형에서 상황, 토론면접 등 직무중심 상황을 부여, 경험중심질문(BEI 방식)으로 직무역량중심 해결방안 평가, 면접당일 면접번호 재부여 등 개인정보 일체 미제공, 면접복장 자율화</li> </ul>
	❖(성과) 신입사원 인력의 다양성 확보(하반기 기준, 비수도권 지역인재 53%, 여성 29% 등) 및 채용절차 만족도 95%(지원자 대상)
한국주택공사	<ul> <li>❖(특이사항) '12년 면접심사, '16년~'17년 상반기 서류 및 면접심사, '17년 하반기 공채부터 전 채용과정에 블라인드 도입</li> <li>❖(주요내용) 면접전형 개인식별(면접순서 면접번호 블라인드 등 응시자특정 요소 차단) 및 불필요한 스펙 관련 정보 미제공, 모의면접</li> </ul>
인식무력증사	사전교육 실무면접문항 풀(pool) 도입 등 면접위원 역량강화  ❖(성과) 신입사원 다양성 증가(여성 비중, 고졸 비중 증가), 특히 둘째 임신 중인 여성이 신규채용에 성공한 사례 도출
   인천국제공항공사	<ul> <li>◆(주요내용) 채용직무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개발, 평가변별력 강화</li> <li>★ 폭발물 처리반 실기면접, 직무상황기반 역할면접(Role Play) 실시</li> <li>◆(성과) 나이 학력 등 차별없는 다양한 인재 분포(여성 34%, 지역인재</li> </ul>
	40%, 20대~40대, 검정고시~석사 등 다양), 채용절차 만족도 조사 결과 93%가 만족(최종합격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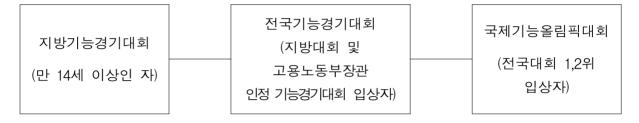
- 취업준비생을 위해 대학·특성화고 등 '찾아가는 설명회' 및 직무중심 자기 소개서·블라인드 면접 대비 '1:1 컨설팅 프로그램'제공('17년~)
  - ▲ ('17년) 찾아가는 설명회 210회 실시, 24,137명 참여, 1:1 컨설팅 65회 793명 참여
  - ▲ ('18.6월말) 찾아가는 설명회 113회 실시, 9,458명 참여, 1:1 컨설팅 18회 157명 참여



# 4. 숙련기술장려시책

# 가. 기능경기대회

# 1) 참가절차



#### 2) 우대사항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단위 : 천원)

구 분	표 창	상 금	계속종사장려금 (매년 1회)	특 전
금	동탑산업훈장	67,200	9,500~12,000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인	철탑산업훈장	56,000	7,160~9,000	○산업기능요원 편입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동	석탑산업훈장 39,200		5,050~6,300	(동일분야 종사시)
우수상	산업포장	10,000	_	-

# ○ 전국기능경기대회

(단위 : 천원)

구 분	상 금	특 전
그 인 땅	12,000(300) 8,000(200) 4,000(100)	○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지방대회는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 중 최근 2년간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 입상자(1위,2위)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기회 부여
우수상 4위	1,000	
5위	700	_
6위	500	

※ ( )는 지방기능경기대회



# 나. 대한민국명장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 1) 신청절차

○ 대한민국명장 신청 <추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 중소기업청장> ○ 우수숙련기술자 신청 <추천: 사업주, 사업주단체>

# 2) 선정대상・방법・우대사항

구 분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선정대상	○ 산업현장의 선정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동일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 -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산업현장의 선정대상 직종에서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으로써 우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선정방법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면접을 거쳐 선정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
우대사항	○대한민국명장증서 및 휘장수여 ○명패 제작 수여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매년 계속종사 장려금 지급 ○해외산업시찰	○일시장려금 200만원 지급 ○우수숙련기술자증서 수여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 다. 숙련기술전수자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 1) 신청절차

○ 숙련기술전수자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선정
○ 국년기물성터 모임사합세	(연독산합인덕중단)	

# 2) 선정대상・방법 및 우대사항

구 분	숙련기술전수자 및 전수대상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대상	○ 다음 종목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 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1. 제조업의 기반 분야(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2. 산업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3. 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 재설계 -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 촉진 등
선정방법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면접을 거쳐 선정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우대사항	○숙련기술전수지원금(2~5년) - 숙련기술전수자: 월 80만원 - 전수대상자: 월 20만원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수여	<ul> <li>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li> <li>정기근로감독 면제(3년)</li> <li>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li> <li>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li> <li>산업현장교수단 활용한 HRD종합 서비스 우선지원</li> <li>언론홍보(기획보도)</li> </ul>

# 5.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법령

구 분	제 정	최 종 개 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97. 12. 24.	'16. 7. 28. ('16. 1. 27. 공포)
○ 고용보험법	'93. 12. 27.	'17. 6. 28. ('16. 12. 27. 공포)
○ 국가기술자격법	'73. 12. 31.	'17. 3. 28. ('16. 12. 27. 공포)
○ 숙련기술장려법 (기능장려법에서 변경)	'89. 4. 1.	'16. 7. 28. ('16. 1. 27. 공포)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81. 12. 31.	'11. 6. 10. ('11. 3. 9. 공포)
○ 자격기본법(교육부 공동)	'97. 3. 27.	'17. 6. 21. ('16. 12. 20. 공포)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교육부 공동)	'97. 3. 27.	'18. 9. 28. ('18. 3. 27. 공포)
○ 기능대학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통합)	'77. 7. 23.	'10. 9. 1. ('10. 5. 31. 공포)



#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1.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39
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57
3.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72
4.	자격제도	73
<i>5.</i>	국가직무능력표준	81
6.	숙련기술기능장려 사업현황	126



# 1.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 가. 총 괄

(단위: 천명, 억원)

· · · · · · · · · · · · · · · · · · ·	2017	7
문 년 경	인 원	집행액
총 계	4,044.4	16,445
□ 재직자훈련	3,720	9,035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3,439	5,623
○ 유급휴가훈련	19	149
○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262	820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_	2,312
○ 시설·장비대부	_	131
□ 실업자훈련	291.4	6,538
○ 전직실업자훈련	182	1,796
○ 신규실업자훈련	38	640
○ 지역실업자훈련	0.4	2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71	4,100
□ 공공훈련	33	872
○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	23	355
○ 기능사양성훈련	6	301
○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4	216

<sup>※</sup>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은 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 ('14.4.15)한 사업임. 따라서 근로자능력개발지원의수치는 기존 직무능력향상지원금재직자내일 배움카드제의 수치와 신규 근로자능력개발지원의합임

<sup>※</sup>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다기능기술자, 기능장, 전공심화과정(12), 베이비부머(13), 여성특별과정(14) 합계), 기능사양성 훈련,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훈련의 예산은 순수 훈련비임

<sup>※</sup>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유급휴가훈련에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전략분야 제외), 지역산업맞춤형 포함('17.2월 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에 일학습병행제 등 현황 포함)

<sup>※</sup> 실업자훈련인원은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집행액은 일부 기타 운영비 예산 제외임



#### 나. 재직자훈련

#### 1) 고용보험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 □ 규모별 적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총 계	50인 미만	50~150인 미만	150인~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업장	2,211,482	2,167,210	31,903	7,355	2,497	1,570	947
(비 율)	100.0	98.0	1.4	0.3	0.1	0.1	0.0
피보험자	12,958,825	6,574,727	1,818,364	1,039,549	577,398	706,930	2,241,857
(비 율)	100.0	50.7	14.0	8.0	4.5	5.5	17.3

<sup>※</sup> 사업장쉬피보험자수는 건수개념이 아닌 순수사업장임

#### □ 업종별 적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 - 11	· · · · · · · · · · · · · · · · · · ·	<del>3,</del> /0/
구 분	Й	당 항 항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창고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융 험 산 금 보 부	전문,과학 및기술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시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 예술, 여가관련 · 기타
사업장	2,211,482	17,060	322,531	8,746	512,652	736,008	45,167	93,719	160,637	20,046	294,916
(비 율)	100.0	0.8	14.6	0.4	23.2	33.3	2.0	4.2	7.3	0.9	13.3
피보험자	12,958,825	48,225	3,608,920	143,479	692,350	2,649,035	593,982	805,707	1,874,417	258,906	2,283,804
(비 율)	100.0	0.4	27.8	1.1	5.3	20.4	4.6	6.2	14.5	2.0	17.6

<sup>※</sup> 사업장수/피보험자수는 건수개념이 아닌 순수사업장임

## 2) 고용보험운영 현황

(단위: 개소, 건, 백만원, %)

구	분	사업주 훈련 (유급휴가제외)	유급휴가 훈련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전직 실업자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사	업장	153,654	5,451	-	214	-	-
건	수	3,439,373	18,861	261,934	-	181,655	71,450
지위	원금	562,345	14,891	82,015	231,174	179,596	410,030

<sup>※</sup> 기금결재기준으로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 건수는 중복 계산된 지급연인원수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장수는 운영기관수임).

<sup>※ &#</sup>x27;17.7.1일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0차로 개정됨에 따라 10차 업종코드 적용

<sup>※</sup> 전직실업자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집행액은 기타 운영비 예산 제외임

<sup>※</sup> 비율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에 대한 사업별 지원현황의 비율임



# 3)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 □ 규모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계	50인 미만	50~150인	150~300인	300~500인	500~1,000인	1,000인 이상	해당없음
사업장	153,654	124,219	18,956	5,654	2,045	1,464	1,312	4
(비 율)	100.0	80.8	12.3	3.7	1.3	1.0	0.9	0.0
건 수	3,439,373	745,179	597,081	443,414	279,500	319,611	1,054,578	10
(비 율)	100.0	21.7	17.4	12.9	8.1	9.3	30.7	0.0
지원금	562,345	191,955	127,493	68,794	36,127	33,156	104,819	1
(지원율)	100.0	34.1	22.7	12.2	6.4	5.9	18.6	0.0

- ※ 기금결재기준으로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 건수는 중복 계산된 지급연인원수임
- ※ 비율은 직업능력개발훈련활용사업장(건수)에 대한 규모별 비율임
-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규모별 지원 비율임

## □ 업종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Я	농·임·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창고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 보험 · 부동산	전문,과학 및기술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시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 예술, 여기관련 · 기타	사 구 분이 나무 기가 가 나무 기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건 수	3,439,373	3,076	974,965	54,562	141,890	331,525	194,691	524,777	452,144	10,775	750,958	10
(비 율)	100.0	0.1	28.3	1.6	4.1	9.6	5.7	15.3	13.1	0.3	21.8	0.0
지원금	562,345	633	233,875	5,459	33,169	47,000	45,405	42,144	67,274	889	86,495	1
(지원율)	100.0	0.1	41.6	1.0	5.9	8.4	8.1	7.5	12.0	0.2	15.4	0.0

- ※ 건수는 기금결재기준으로중복 계산된 지급연인원수임
- ※ 비율은 직업능력개발훈련활용사업장(건수)에 대한 업종별 비율임
-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업종별(10차) 지원 비율임



#### 4) 유급휴가훈련

#### □ 규모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계	50인 미만	50~150인	150~300인	300~500인	500~1,000인	1,000인 이상	해당없음
시업장	5,451	4,768	357	164	49	38	75	-
(비 율)	100.0	87.5	6.5	3.0	0.9	0.7	1.4	-
건 수	18,861	12,077	2,276	2,344	1,081	218	865	-
(비 율)	100.0	64.0	12.1	12.4	5.7	1.2	4.6	-
지원금	14,891	9,158	1,812	1,766	607	103	1,444	-
(지원율)	100.0	61.5	12.2	11.9	4.1	0.7	9.7	-

- ※ 기금결재기준으로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 건수는 중복 계산된 지급연인원수임
- ※ 비율은 유급휴가훈련 활용사업장(건수)에 대한 규모별 비율임
-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규모별 지원 비율임

## □ 업종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계	농·임·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창고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 보험 · 부동산	전문,과학 및기술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시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 예술, 여기관련 · 기타	분 불
건 수	18,861	1	5,301	90	6,868	996	160	4,061	1,003	26	355	-
(비 율)	100.0	0.0	28.1	0.5	36.4	5.3	0.8	21.5	5.3	0.1	1.9	-
지원금	14,891	0	4,174	23	6,450	659	68	2,816	600	8	92	-
(지원율)	100.0	0.0	28.0	0.2	43.3	4.4	0.5	18.9	4.0	0.1	0.6	-

- ※ 건수는 기금결재기준으로중복 계산된 지급연인원수임
- ※ 비율은 유급휴가훈련 활용사업장(건수)에 대한 업종별 비율임
-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업종별(10차) 지원 비율임



## 5)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 □ 규모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계	50인 미만	50~150인	150~300인	300~500인	500~1,000인	1,000인 이상	해 없음
건 수	261,934	161,017	35,705	18,246	10,237	11,125	25,559	45
(비 율)	100.0	61.5	13.6	7.0	3.9	4.2	9.8	0.0
지원금	82,015	50,420	10,911	5,476	3,111	3,508	8,566	22
(지원율)	100.0	61.5	13.3	6.7	3.8	4.3	10.4	0.0

- ※ 건수는 기금결재기준으로중복계산된 건수개념임
- ※ 비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건수에 대한 규모별 비율임
-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규모별 지원비율임
- ※ 재직자 임의가입 자영업자(훈련장려금)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자영업자) 포함

## □ 업종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계	농·임·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창고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 보험 · 부동산	전문,과학 및기술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시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 예술, 여기관련 · 기타	독 구 이 40
건 =	수	261,934	574	42,804	1,716	16,799	43,515	15,744	19,203	51,299	9,383	60,852	45
(비 울	울)	100.0	0.2	16.3	0.7	6.4	16.6	6.0	7.3	19.6	3.6	23.2	0.0
지원금	ᅼ	82,015	233	13,490	589	6,073	14,182	4,479	5,769	16,190	3,141	17,846	22
(지원율	울)	100.0	0.3	16.4	0.7	7.4	17.3	5.5	7.0	19.7	3.8	21.8	0.0

- ※ 건수는 기금결재기준으로 중복계산된 건수개념임
- ※ 비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건수에 대한 업종별 비율임
-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업종별(10차) 지원비율임
- ※ 재직자 임의가입 자영업자(훈련장려금)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자영업자) 포함



# 6) 2017년 재직자훈련 특성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사업주훈련 (유급휴가제외)	유급휴가훈련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합계	3,720,168	3,439,373	18,861	261,934
V4 H4	남	2,290,934	2,183,176	15,403	92,355
성별	여	1,429,233	1,256,196	3,458	169,579
	분류불능	1	1	-	-
	합계	3,720,168	3,439,373	18,861	261,934
	19세이하	34,152	32,049	373	1,730
	20~29	940,833	852,286	4,663	83,884
~ ~ ~ ~	30~39	1,233,117	1,159,045	5,537	68,535
연령별	40~49	928,850	858,067	5,176	65,607
	50~59	458,819	421,836	2,754	34,229
	60세이상	124,394	116,087	358	7,949
	분류불능	3	3	-	-
	합계	3,720,168	3,439,373	18,861	261,934
	초졸	5,559	5,252	16	291
	중졸	17,791	16,365	225	1,201
	고졸	351,649	289,960	2,553	59,136
학력별	전문대졸	147,561	112,463	356	34,742
	대졸	646,076	528,584	3,879	113,613
	대학원졸	38,139	32,448	44	5,647
	기 타 (무학력, 학점은행제 포함)	2,024	625	-	1,399
	분류불능	2,511,369	2,453,676	11,788	45,905



# 다. 실업자훈련

# 1) 훈련직종별 훈련실시현황(2017년 12월말)

(단위 : 명)

		내일배원	음카드제	77171717171
훈 련 분 야	합 계	신 규 실업자훈련	전 직 실업자훈련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합 계	290,694	37,589	181,655	71,450
관리직(임원·부서장)	81	23	13	45
경영·행정·사무직	65,789	9,337	52,429	4,023
금융·보험직	162	27	135	-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36	9	42	85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913	342	1,549	14,022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494	194	1,218	4,08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433	826	5,153	8,454
교육직	869	142	727	-
법률직	2,363	341	2,022	-
사회복지·종교직	4,725	523	4,202	-
보건·의료직	17,210	2,789	14,400	21
예술·디자인·방송직	16,518	940	4,856	10,722
미용·예식 서비스직	20,428	4,336	16,092	-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183	264	1,487	432
음식 서비스직	35,226	6,829	28,397	_
경호·경비직	132	8	124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2,725	5,082	17,643	-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77	3	74	-
영업·판매직	1,016	154	849	13
운전·운송직	3,721	310	3,411	-
건설·채굴직	8,446	653	6,017	1,776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0,365	250	1,501	8,614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4,080	64	984	3,032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9,671	658	3,331	5,68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596	-	1	8,59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20	14	63	43
섬유·의복 생산직	1,483	255	1,105	123
식품가공·생산직	11,197	2,384	8,813	-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6,593	776	4,739	1,078
농림어업직	942	56	278	608

<sup>※</sup> 훈련분야 구분 KECO 중분류(2018 직종)로 적용,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sup>※ &#</sup>x27;17년 회계연도 결산설명자료는 '18.1월 실시간통계로 상이할 수 있음

# 2) 훈련생 특성별 훈련실시 현황(2017년 12월말)

(단위 : 명)

			내일배워	음카드제	국가기간
	구 분	합 계	신 규 실업자훈련	전 직 실업자훈련	전략산업 직종훈련
	합계	290,694	37,589	181,655	71,450
성별	남	104,912	8,760	47,437	48,715
	여	185,782	28,829	134,218	22,735
	합계	290,694	37,589	181,655	71,450
	19세 이하	19,837	6,484	5,327	8,026
	20~29세	119,205	13,069	62,539	43,597
연령별	30~39세	55,877	4,075	42,161	9,641
	40~49세	46,426	4,875	37,158	4,393
	50~59세	34,040	5,874	24,680	3,486
	60세이상	15,309	3,212	9,790	2,307
	합계	290,694	37,589	181,655	71,450
	초졸	4,604	1,181	3,162	261
	중졸	21,461	5,906	9,352	6,203
	고졸	124,309	16,668	78,313	29,328
학력별	전문대졸	55,600	4,255	38,283	13,062
	대졸	80,211	8,967	49,713	21,531
	대학원졸	4,008	507	2,503	998
	기 <b>타</b> (무학력, 학점은행제 포함)	477	98	316	63
	분류불능	24	7	13	4

<sup>※</sup>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sup>※ &#</sup>x27;17년 회계연도 결산설명자료는 '18.1월 실시간통계이므로 본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3) 훈련종류별 훈련실시현황(2017년 12월말)

# 가) 내일배움카드제

## ○ 신규실업자 훈련

(단위 : 명, %)

훈 련	실시	성	 별	연령별					
분 야	인원	남	여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37,589	8,760	28,829	6,484	13,069	4,075	4,875	5,874	3,212
(비율)	100.0	23.3	76.7	17.2	34.8	10.8	13.0	15.6	8.5
관리직(임원·부서장)	23	15	8	23	-	-	-	-	-
경영·행정·사무직	9,337	1,804	7,533	857	5,601	999	934	670	276
금융·보험직	27	17	10	-	15	8	4	-	-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9	3	6	-	1	-	1	5	2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42	197	145	59	246	19	7	7	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94	97	97	38	117	18	8	7	6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26	602	224	52	657	40	20	36	21
교육직	142	23	119	-	38	23	36	30	15
법률직	341	123	218	5	228	60	21	22	5
사회복지·종교직	523	100	423	6	154	85	150	93	35
보건·의료직	2,789	129	2,660	804	858	294	550	249	34
예술·디자인·방송직	940	257	683	134	573	100	59	53	21
미용·예식 서비스직	4,336	424	3,912	1,500	1,156	811	558	252	59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64	46	218	23	185	30	15	10	1
음식 서비스직	6,829	2,042	4,787	1,723	1,235	843	1,235	1,301	492
경호·경비직	8	8	-	-	2	-	-	4	2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5,082	246	4,836	10	48	90	639	2,391	1,904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3	2	1	-	-	-	1	2	-
영업·판매직	154	64	90	5	45	22	42	26	14
운전·운송직	310	305	5	52	131	22	21	50	34
건설·채굴직	653	585	68	97	121	85	104	163	83
기계 설치· 정비·생산직	250	237	13	65	106	20	16	21	2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64	63	1	15	31	4	3	10	1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658	521	137	20	529	32	18	35	2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	-	-	-	-	-	-	-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4	10	4	-	4	4	3	3	-
섬유·의복 생산직	255	14	241	7	45	48	54	77	24
식품가공·생산직	2,384	717	1,667	948	662	265	232	209	6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776	72	704	41	269	149	139	133	45
농림어업직	56	37	19	-	12	4	5	15	20

<sup>※</sup> 훈련분야 구분 KECO 중분류(2018 직종)로 적용,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 전직실업자 훈련

(단위 : 명, %)

변수 변수 변설 년 여 9세 이라 20~39세 30~39세 30~59세 50~59세 50~60세 이상 이상 변분 이 9세 이라 20~39세 30~39세 30~59세 50~50세 100세 이상 100 이 100 이 26.1 73.9 5.32 32.9 32.16 37.158 24.68 9.790 (비율) 100.0 26.1 73.9 2.9 34.4 23.2 20.5 13.6 5.4 관리직임원부사상) 13 4 9 8 8 3 1 12.401 9.549 13.0 2.2 20.5 13.6 12.401 20.5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		41.1		لب	(인기 · 경,					
합계 (비용) 181,655 47,437 134,218 5,327 62,539 42,161 37,158 24,680 9,790 (비용) 100.0 26.1 73.9 2.9 34.4 23.2 20.5 13.6 5.4 관리직(임원·부사장) 13 4 9 8 8 3 1 1 1 1 5 3 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훈 련	실시			10111 01-1	m m:"			FO FO: "	MUI ALL
(비율) 100.0 26.1 73.9 2.9 34.4 23.2 20.5 13.6 5.4 관리(원원·부서장) 13 4 9 8 3 1 1 1 1 -										
관리직(임원·부서장) 13 4 9 8 3 1 1 1 1		· ·				·				
경영·행정·사무직 52,429 8,981 43,448 913 24,956 12,401 9,549 3,508 1,102 급용·보험적 135 32 103 1 55 34 40 3 2 전선생명과학 연구직 42 15 27 - 10 7 6 12 7 경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1,549 945 604 47 1,006 310 140 33 13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1,549 945 604 47 1,006 310 140 33 13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1,218 677 541 32 733 225 135 70 23 제조 연구개발직 및 5,153 3,882 1,271 77 3,087 898 556 363 172 교육직 727 145 562 2 195 229 188 100 13 범률적 2,022 745 1,277 22 1,180 528 189 76 27 1,344 458 102 보건·의료직 4,202 806 3,396 15 996 1,297 1,334 458 102 보건·의료직 14,000 426 13,974 967 4,419 3,331 4,456 1,113 94 여슬·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예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혈·숙박·오락·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검결·경비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22,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검결·경비적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참 임원·생신직 (3,411 3,370 4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4,51 전비·생신직 1,49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4,51 전비·생신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379 14 7 7 20 전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379 14 7 7 20 전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379 14 7 7 20 전치·장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379 14 7 7 58 41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13.6	5.4
금융·보험적 135 32 103 1 55 34 40 3 2 2 전선생명과학 연구적 42 15 27 - 10 7 6 12 7 경보통신 연구개발적 및 1,549 945 604 47 1,006 310 140 33 13 건설·체굴 연구개발적 및 1,218 677 541 32 733 225 135 70 23 제조 연구개발적 및 5,153 3,882 1,271 77 3,087 898 556 363 172 교육적 2,022 745 1,277 22 1,180 528 189 76 27 사회복자·종교적 4,202 806 3,396 15 996 1,297 1,334 458 1,102 보건·의료적 14,400 426 13,974 997 4,419 3,331 4,456 1,113 94 예술·디자만·방송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예식 서비스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적 12,897 7,997 20,410 1,074 5,941 7,714 7,314 5,314 1,580 검호·검비적 124 115 9 - 24 20 21 3 227 돌봄 서비스적 28,397 7,997 20,410 1,074 5,941 7,714 7,314 5,314 1,580 검호·검비적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전설·체로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4,51 1,510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1,410 1,41								•	0.500	1 100
전선·생명과학 연구직 42 15 27 - 10 7 6 12 7 정보통실 연구개발적 및 1.549 945 604 47 1.006 310 140 33 13 13 건설·채굴 연구개발적 및 1.218 677 541 32 733 225 135 70 23 제조 연구개발적 및 1.218 677 541 32 733 225 135 70 23 제조 연구개발적 및 5.153 3.882 1.271 77 3.087 898 556 363 172 교육적 727 145 582 2 195 229 188 100 13 범률적 2.022 745 1.277 22 1.180 528 189 76 27 사회복지·종교적 4.202 806 3.396 15 996 1.297 1.334 458 102 보건·의료적 14.400 426 13.974 987 4.419 3.331 4.456 1.113 94 예술·디자인·방송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예식·서비스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서비스적 16.092 1.343 14.749 1.135 5.941 7.174 7.314 5.314 1.580 검호·경비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검호·경비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적 1.487 3.24 1.15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적 1.487 3.24 1.15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적 1.487 3.25 1.584 8 153 752 3.584 8.426 4.720 참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적 1.609 520 5 181 1.020 5 184 8 153 752 3.584 8.426 4.720 참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적 1.609 520 5 181 1.020 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적 6.017 5.662 355 127 1.170 1.337 1.564 1.316 483 기계 설치 전비·생산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감상 생각적 24 30 251 155 97 감상 생각적 3.014 4.404 4.501 4					913		·	· ·		
정보통실 연구개발적 및 1,549 945 604 47 1,006 310 140 33 13 건설·체굴 연구개발적 및 1,218 677 541 32 733 225 135 70 23 제조 연구개발적 및 5,153 3,882 1,271 77 3,087 898 556 363 172 교육적 727 145 582 2 195 229 188 100 13 법률적 2,022 745 1,277 22 1,180 528 189 76 27 사회복지·종교직 4,202 866 3,396 15 996 1,297 1,334 458 102 보건·의료직 14,400 426 13,974 987 4,419 3,331 4,456 1,113 94 예술·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예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1,247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1,247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74 62 12 - 11 22 17 20 4 영업·관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오순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 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감수 장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감수 장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전부·장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전부·장비·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식품자·장비·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자·공예 및 기타 설치·장비·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자·공예 및 기타 설치·장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l				_	
공학기술직 기 1,049 940 004 47 1,006 310 140 33 13 건설·제굴 연구개발직 및 1,218 677 541 32 733 225 135 70 23 제조 연구개발직 및 5,153 3,882 1,271 77 3,087 898 556 363 172 교육직 727 145 582 2 195 229 188 100 13 번률직 2,022 745 1,277 22 1,180 528 189 76 27 사회복지·종교직 4,202 806 3,396 15 996 1,297 1,334 458 102 보건·의료직 14,400 426 13,974 987 4,419 3,331 4,456 1,113 94 예술·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예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74 62 12 - 11 22 17 20 4 영업·판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제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 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급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63 51 12 1 2 1 2 1 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전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 7 9 14 7 5 5 선부·용건 설치·정비·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선취·용제·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재·공에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42	15	27	-	10	/	6	12	/
공학기술직 기상이 이 341 32 133 10 23 135 10 23 143 172 173 3,087 898 556 363 172 교육직 727 145 582 2 195 229 188 100 13 14률적 2,022 745 1,277 22 1,180 528 189 76 27 143 14,400 426 13,974 987 4,419 3,331 4,456 1,113 94 예술·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예식 서비스직 16,092 1,434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13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간방·축이)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4 1,857 3,44 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전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5 44 9년시 4 10 1 1 1 2 7 9 14 7 7 5 5 44 1 1,058 85 1,020 54 1,581 1,581 1,581 1,581 1,541 1,551 1,54		1,549	945	604	47	1,006	310	140	33	13
공학기술직 7.75 3.00 1.27 1/ 3.007 99 50 50 1/2  교육직 727 145 582 2 195 229 188 100 13  법률직 2.022 745 1.277 22 1,180 528 189 76 27  사회복지·종교직 4.202 806 3.396 15 996 1.297 1.334 458 102  보건·의료직 14,400 426 13,974 987 4,419 3.331 4,456 1,113 94  예술·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예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유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전전·장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설치·장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성유·의복 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1,218	677	541	32	733	225	135	70	23
법률직 2,022 745 1,277 22 1,180 528 189 76 27 사회복지·종교직 4,202 806 3,396 15 996 1,297 1,334 458 102 보건·의료직 14,400 426 13,974 987 4,419 3,331 4,456 1,113 94 예술·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예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건병·육아)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탁 개인서비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문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급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전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4유·의복 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인쇄·목재·공에 및 기타 상신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5,153	3,882	1,271	77	3,087	898	556	363	172
사회복지·종교직 4,202 806 3,396 15 996 1,297 1,334 458 102 보건·의료직 14,400 426 13,974 987 4,419 3,331 4,456 1,113 94 예술·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에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윤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급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전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4유·의복 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재·공에 및 기타 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교육직	727	145	582	2	195	229	188	100	13
보건·의료직 14,400 426 13,974 987 4,419 3,331 4,456 1,113 94 예술·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예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간병 육아)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가입서비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요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급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44 7 5 44 7 5 44 7 5 5 44 7 9 14 7 5 5 44 7 9 14 7 5 5 44 7 9 14 7 5 5 44 7 9 14 7 5 5 44 7 9 14 7 5 5 44 7 9 14 7 5 5 44 7 9 14 7 5 5 44 7 9 14 7 5 5 44 7 9 14 7 9 14 7 5 5 44 7 9 14 7 9 14 7 5 5 44 7 9 14 7 9 14 7 5 5 44 7 9 14 7 9 14 7 5 5 44 7 9 14 7 9 14 7 5 5 44 7 9 14 7 5 5 44 7 9 14 7 9 14 7 9 14 7 5 5 44 7 9 14 9 14	법률직	2,022	745	1,277	22	1,180	528	189	76	27
에술·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미용·에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기타 4 62 12 - 11 22 17 20 4 영업·판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1 1 1 1 1 1 조착 전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4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사회복지·종교직	4,202	806	3,396	15	996	1,297	1,334	458	102
미용·에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탁 개인서비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산직 1 1 1 1 1 3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 1 27 9 14 7 5 4유·의목 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기타 설치·장비·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기타 설치·장비·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보건·의료직	14,400	426	13,974	987	4,419	3,331	4,456	1,113	94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가인서비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4 6 6 6 7 5 6 6 6 7 6 6 7 6 6 7 6 6 7 6 7	예술·디자인·방송직	4,856	1,512	3,344	118	2,897	1,098	550	140	53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가인서비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984 968 16 22 302 197 17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의 1	미용·예식 서비스직	16,092	1,343	14,749	1,139	5,477	5,492	3,016	807	161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이)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74 62 12 - 11 22 17 20 4 영업·판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984 968 16 22 302 197 17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1 1 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487	324	1,163	20	1,159	202	65	33	8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가입서비스직 74 62 12 - 11 22 17 20 4 영업·판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984 968 16 22 302 197 17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1 1 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4유·의복 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음식 서비스직	28,397	7,987	20,410	1,074	5,941	7,174	7,314	5,314	1,580
(간병·육아) 17,043 1,759 15,864 8 153 752 3,384 8,426 4,720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74 62 12 - 11 22 17 20 4 명업·판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급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등) 984 968 16 22 302 197 17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1 1 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4유·의목 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경호·경비직	124	115	9	-	24	20	21	32	27
개인서비스직		17,643	1,759	15,884	8	153	752	3,584	8,426	4,720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 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984 968 16 22 302 197 17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74	62	12	-	11	22	17	20	4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기계 설치· 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984 968 16 22 302 197 17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1 1 1	영업·판매직	849	329	520	5	181	252	253	126	32
기계 설치· 정비·생산직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984 968 16 22 302 197 17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의 1 1 1 1 1 수 보험 기·생산직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설치·정비·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운전·운송직	3,411	3,370	41	81	1,026	713	624	657	310
정비·생산직 1,301 1,449 32 30 371 309 231 133 97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984 968 16 22 302 197 17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1	건설·채굴직	6,017	5,662	355	127	1,170	1,357	1,564	1,316	483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984 988 16 22 302 197 177 208 7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1 1		1,501	1,449	52	58	571	369	251	155	97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0 338 212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1		984	968	16	22	302	197	177	208	78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섬유·의복 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331	3,001	330	39	1,948	398	376	358	212
설치·정비·생산직 63 51 12 1 27 9 14 7 5 삼유·의복 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	-	-	1		-	-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63	51	12	1	27	9	14	7	5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섬유·의복 생산직	1,105	85	1,020	5	158	315	340	207	80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39 418 4,321 41 1,801 1,834 733 337 91	식품가공·생산직	8,813	2,132	6,681	485	2,954	2,874	1,598	692	210
농림어업직 278 211 67 - 39 21 45 89 84		4,739	418	4,321	41	1,861	1,634	755	357	91
	농림어업직	278	211	67	-	39	21	45	89	84

<sup>※</sup> 훈련분야 구분 KECO 중분류(2018 직종)로 적용,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단위 : 명, %)

훈 련	실시	성	별			연탕	egie		
는 - 분 야	인원	남	여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71,450	48,715	22,735	8,026	43,597	9,641	4,393	3,486	2,307
(비율)	100.0	68.2	31.8	11.2	61.0	13.5	6.1	4.9	3.2
관리직(임원·부서장)	45	37	8	1	32	7	4	1	-
경영·행정·사무직	4,023	2,343	1,680	236	2,839	678	193	56	21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85	64	21	-	56	18	6	5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022	9,002	5,020	1,363	10,562	1,645	348	89	15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082	2,921	1,161	385	1,482	397	387	630	801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454	5,258	3,196	631	5,873	1,182	464	198	106
보건·의료직	21	0	21	5	13	2	1	-	-
예술·디자인·방송직	10,722	3,418	7,304	1,250	7,027	1,401	648	296	100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432	105	327	76	205	73	46	21	11
영업·판매직	13	5	8	13	-	-	-	-	-
건설·채굴직	1,776	1,714	62	84	339	330	356	447	220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614	8,135	479	2,455	3,960	1,115	509	379	196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3,032	3,009	23	347	1,215	555	421	348	146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5,682	5,607	75	641	2,572	935	551	645	338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595	5,935	2,660	381	6,949	1,013	194	46	12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3	40	3	-	1	1	3	21	17
섬유·의복 생산직	123	20	103	21	28	21	25	24	4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078	581	497	133	402	238	168	89	48
농림어업직	608	521	87	4	42	30	69	191	272

<sup>※</sup> 훈련분야 구분 KECO 중분류(2018 직종)로 적용,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라. 공공훈련

## 1) 한국폴리텍대학

#### ○ 훈련별 현황

				양성.	훈련				향상훈련	
구 분	총 계	소계	다기능 기술자	전문기술	기능장	학위전공 심화	베이비부머, 여성재취업	소계	영세사업장 훈련	재직자 훈련
계	71,400	22,018	14,332	4,916	223	380	2,167	49,382	4,417	44,965
서울정수	4,747	1,472	1,119	106	20	82	145	3,275	190	3,085
서울강서	1,136	716	431	204	-	-	81	420	137	283
성남	2,020	914	795	51	-	-	68	1,106	154	952
제주	1,109	248	21	189	-	-	38	861	33	828
융합기술	47	47	-	47	-	-	-	-	-	-
인천	7,656	2,302	1,854	24	65	185	174	5,354	184	5,170
안성	1,378	540	459	-	-	-	81	838	86	752
남인천	1,775	441	-	406	-	-	35	1,334	127	1,207
화성	1,794	328	-	287	-	-	41	1,466	95	1,371
춘천	2,375	566	325	183	-	-	58	1,809	933	876
원주	1,964	331	44	249	-	-	38	1,633	118	1,515
강릉	2,524	393	109	243	-	-	41	2,131	202	1,929
대전	2,882	1,113	875	114	-	-	124	1,769	176	1,593
청주	1,627	822	730	27	-	-	65	805	108	697
아산	1,596	538	477	-	-	-	61	1,058	124	934
홍성	960	290	232	40	-	-	18	670	-	670
충주	521	214	-	201	-	-	13	307	57	250
광주	2,124	1,062	714	221	-	-	127	1,062	116	946
김제	2,205	546	463	40	-	-	43	1,659	82	1,577
목포	824	281	213	14	-	-	54	543	92	451
익산	1,460	331	97	193	-	-	41	1,129	126	1,003
순천	1,009	324	-	309	-	-	15	685	78	607
대구	2,922	1,069	929	65	-	-	75	1,853	84	1,769
구미	2,377	620	466	95	-	-	59	1,757	86	1,671
달성	1,004	296	-	252	-	-	44	708	109	599
포항	1,501	277	-	215	-	-	62	1,224	85	1,139
영주	1,234	236	48	147	-	-	41	998	108	890
창원	6,624	1,809	1,216	287	82	113	111	4,815	131	4,684
부산	1,740	1,004	851	25	56	-	72	736	84	652
울산	3,935	866	763	23		-	80	3,069	107	2,962
동부산	1,362	303		257		-	46	1,059	63	996
진주	1,319	349		295		-	54	970	81	889
바이오	800	457	348	54	-	-	55	343	80	263
섬유패션	541	349	283	29		-	37	192	85	107
항공	1,151	513	470			-	43	638	96	542
신기술교육원	1,157	51		24	_	-	27	1,106	-	1,106

※ 다기능기술자 : 2018. 2월 기준(1학년 현원 + 2학년 졸업, 졸업유보인원)

전문기술: 2018. 2월 기준(주,야 포함) 기능장: 2018. 2월 기준(단, 창원 1년과정 수료 + 2년과정 현원+수료) 학위전공심화: 2018. 2월 기준(1학년 현원 + 2학년 졸업, 졸업유보인원)



# ○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 학과별 현황

(2018. 2월 졸업자기준, 단위 : 명)

학과명캠퍼스	3 D 띄 린 팅 융합디 자 인 과	CAD&모델리라	├ 융 햅 제 저 과	├ % % 제 거 과	S G 전기 전자 제 어 과	건 축 설 계 과	그 린 건 축 과	그린에너지설비과	급 쪙 디 자 인 과	기 계 시 스템 과	나 노 응 용 기 계 과	나 노 측 정 과	<u> </u>	데이터분석과	디지텔바송라	디지털콘텐츠과	로 봇 자 동 화 과	메카트로닉스과
계	46	87	44	82	101	45	57	209	806	520	78	80	105	31	106	180	161	919
서울정수								168										106
서울강서														31		119		
성남									77									
제주																		
인천						45			211	219					106			170
안성		87										80						
춘천																		
강릉																		
원주																		
대전					101					201			105			61	161	
청주																		100
아산																		52
홍성																		
광주							57	41	116									
김제									43									39
목포																		
익산											78							
대구									99									114
구미				82														
영주																		
창원									112	100								201
부산			44						148									137
울산	46																	
바이오																		
섬유패션																		
항공																		



학과명캠퍼스	모	미디어쾬텐츠과	바이어나시서팭라	<b>하이 어 패 층                                 </b>	하 이 성 평 정 퍼 과	바이오식품분석과	바이오품질관리과	반도체CAD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반도체시스템과	발 전 설 비 과	방 성 영 상 과	산업디자인과	산업설비과	산업설비자동화과	산업융합디자인과	산업잠수과	생 명 이 약 반 석 과
계	112	41	63	59	58	59	57	77	60	142	58	47	259	50	858	40	51	52
서울정수	112												105					
서울강서																		
성남																		
제주																		
인천													110		197			
안성								77										
춘천		41											44	50				
강릉											58						51	
원주																		
대전																		
청주										142								
아산									60			47			69			
홍성															55			
광주																		
김제															122			
목포															68			
익산																		
대구															117			
구미																		
영주																		
창원															113			
부산																		
울산															117	40		
바이오			63	59	58	59	57											52
섬유패션																		
항공																		



학과명캠퍼스	시	스마트시스템제어과	스마트 융합제 어과	스마 트전기과	스마 트전기전자 과	스마 트전자과	스마 트정보 통진과	스마트팩토리과	시 각 디 자 인 과	신소재응용과	에 너 지 환 경 과	영상 그래 픽 과	영상디자 인과	용합디자 인과	의 료 정 보 과	자 동 차 과	자 동 차 기 계 과	자동화시스템과
계	102	94	53	525	181	322	23	26	155	467	60	47	27	21	48	576	112	525
서울정수									105							142		
서울강서															48			
성남		94		204						100								108
제주														21				
인천										100						163		
안성	78											47						
춘천																		
강릉																		
원주																		
대전	24												27					
청주																		
아산									50								112	
홍성																		48
광주										48						47		132
김제				106														
목포							23											
익산																		
대구				215		142				107								
구미						65												112
영주						48												
창원					181			26		57	60					112		
부산						67										112		
울산			53							55								125
바이오																		
섬유패션																		
항공																		



학과명캠퍼스	전 기 과	전기에 너지과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전 기 전 자 제 어 과	전 자 과	전 자 정 보 통 신 과	정 보 통 긴 과	정보 통신지 스템과	주 엘리 디 大 인 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컴퓨터정보과	텍스타일컬러디자인과	통 신 전 자 과	패 션 디 자 인 과	패 션 마 케 팅 과	패 션 메 이 킹 과	패션 산업 과
계	909	255	136	110	164	106	201	503	94	1,179	365	196	43	31	164	52	52	48
서울정수	126							58		96	101							
서울강서									94						91			48
성남						106				106								
제주																		
인천			136				201					196						
안성	59													31				
춘천	99				22					42								
강릉																		
원주										44								
대전				110				85										
청주		255						116		117								
아산								87										
홍성	63									66								
광주	126				91						56							
김제								51		102								
목포	49									28	45							
익산										19								
대구										135								
구미	108									99								
영주																		
창원										91	163							
부산	126				51			52		114								
울산	153							54		120								
바이오																		
섬유패션													43		73	52	52	
항공																		



학과명캠퍼스	패 션 소 재 과	하 이 테 크 소 재 과	항 공 기 계 과	항공메카트로닉스과	항 冯 전 자 과	항 70 정 丗 과	항공제	헬 스 케 어 전 자 과
계	35	28	126	103	68	60	113	27
서울정수								
서울강서								
성남								
제주								
인천								
안성								
춘천								27
강릉								
원주								
대전								
청주								
아산								
홍성								
광주								
김제								
목포								
익산								
대구								
구미								
영주								
창원								
부산								
울산								
바이오								
섬유패션	35	28						
항공			126	103	68	60	113	



# ○ 전문기술 양성훈련 특성별 현황

(단위 : 명,%)

- J	A.I. 4.I.	성	별	Ġ	학 력 별				연 링	병 별		
훈 련 분 야	실 시 인 원	남	여	고졸 이하	2년 대졸	4년 대졸 이상	19세 이하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총계	4,916	4,549	367	2,669	1,263	984	1,410	2,665	501	169	131	40
비율	100.0	92.5	7.5	54.3	25.7	20.0	28.7	54.2	10.2	3.4	2.7	0.8
건축	61	54	7	31	12	18	12	26	3	6	13	1
금형	64	64	-	46	13	5	43	17	4	-	-	-
기계설계	105	95	10	464	257	158	246	513	96	10	12	2
기계	879	850	29	18	18	17	9	41	3	-	1	-
디자인	279	162	117	155	60	64	84	146	34	7	6	2
미디어	40	27	13	15	16	9	7	26	3	2	1	1
바이오	86	55	31	-	57	29	3	77	4	2	1	-
보건의료	54	52	2	26	20	8	15	32	7	-	1	-
산업설비	870	862	8	509	234	127	227	467	80	44	34	18
섬유패션	29	15	14	19	-	10	18	9	2	-	-	-
수자원관리	28	26	2	28	-	-	13	15	-	-	-	-
신소재	112	111	1	72	22	18	43	54	12	1	1	1
인쇄	44	8	36	10	15	19	-	35	7	2	-	-
자동차	462	457	5	281	119	62	135	270	33	12	7	5
자동화	344	340	4	228	48	68	178	141	22	1	2	-
전기	938	927	11	411	272	255	161	539	127	62	41	8
전자	261	247	14	161	60	40	91	134	28	4	4	-
정보통신IT	163	145	18	94	18	51	78	56	19	4	5	1
조리	46	38	8	29	7	10	12	14	6	8	5	1
주얼리	46	18	28	28	8	10	11	27	4	4	-	
통신	30	30	-	20	5	5	5	19	6	-	-	-
호텔운영	27	13	14	24	2	1	19	7	1	ı	I	-

 <sup>\*</sup>  한국폴리텍대학 전문기술과정 실시인원 : '17년  $3월\sim$ '18년 2월 수료생 기준



# 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가.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11~'17)

(단위 : 천명, 억원)

										_			: 산		
	훈 련 명	201	1년	201	2년	201	3년	201	4년	201	5년	201	6년 	201	7년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총 계	3,789	10,593	3,848	10,145	4,102	11,817	3,774	11,527	3,205.4	13,120	3,539.4	15,978	4,044.4	16,445
	재직자훈련	3,362	5,800	3,477	5,479	3,616	6,385	3,453	6,426	2,895	6,681	3,228	8,693	3,720	9,035
	h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급휴가훈련제외)	3,004	2,849	3,180	3,126	3,284	3,213	3,102	3,498	2,496	3,242	2,867	4,940	3,439	5,623
ㅇ유	-급휴가훈련	11	115	11	100	10	95	10	98	10	93	9	100	19	149
ㅇ근	·로자 능력개발지원	-	-	-	-	-	-	287	818	330	880	292	795	262	820
	o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수강지원금)	163	286	165	305	212	542	209	577	25	70	-	_	-	-
	O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129	311	65	188	51	180	34	124	3	11	-	_	_	-
	O근로자 개인지원	-	-	-	_	-	-	44	117	302	799	_	_	-	-
	동소기업핵심직무능력 당지원	33	142	38	153	43	206	54	244	59	233	60	227	-	-
o 코 컨	¦가인적자원개발  소시엄	-	1,229	_	865	_	1,462	_	1,656	-	2,111	-	2,520	-	2,312
o호	<b> </b> 자금대부	22	798	18	692	16	624	-	-	-	_	_	_	-	-
07	설·장비대부	-	70	_	50	_	63	_	112	_	122	_	111	_	131
	실업자훈련	394	4,195	338	4,018	451	4,710	284	4,302	272.4	5,579	272.4	6,395	291.4	6,538
ㅇ전	!직실업자 <del>훈</del> 련	280	2,002	227	1,683	313	2,351	191	1,899	158	1,694	177	1,992	182	1,796
ㅇ신	l규실업자훈련	88	676	81	647	99	806	51	509	40	546	36	624	38	640
0.7	역실업자 <del>훈</del> 련	1	12	1	11	1	11	1	11	0.4	2	0.4	3	0.4	2
ㅇ=	가기간전략신업직종훈련	25	1,505	29	1,677	38	1,542	41	1,883	74	3,337	59	3,776	71	4,100
	공공훈련	33	598	33	648	35	722	37	799	38	860	39	890	33	872
OL	기능기술자 등 훈련	23	222	23	239	24	285	26	332	27	382	28	389	23	355
07	능사양성 훈련	6	263	6	279	7	296	7	325	7	323	7	336	6	301
	업훈련교원 및 HRD 당자 양성	4	113	4	130	4	141	4	142	4	155	4	165	4	216

- ※ '11년부터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훈련은 내일배움카드제실적
- ※ '11년도 9월 이후,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재직자내일 배움카드제로 명칭 변경됨
- ※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은 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14.4.15) 한 사업임. 따라서 근로자능력개발지원의 수치는 기존 직무능력향상지원금+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의 수치와 신규 근로자능력개발지원의합임
- ※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다기능기술자, 기능장, 전공심화과정'12), 베이비부머('13), 여성특별과정 ('14) 합계), 기능사양성 훈련,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훈련의 예산은 순수 훈련비임
- ※ '16년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은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사업으로 통합(사업폐지)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유급휴가훈련에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전략분야 제외), 지역산업맞춤형 포함(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에 일학습병행, 고용 디딤돌 현황 포함)
- ※ 실업자훈련인원은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집행액은 일부 기타 운영비 예산 제외임



## 나. 재직자훈련

## 1) 총 괄

(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사 업 주		근로자 능력	력개발지원	중소기업			
	구 분	후 련 (유급휴가 제 외)	유급휴가 훈 련	근 로 자 직무능력 항상지원금	재 직 자 내일배움 카 드 제	당도기급 핵심직무 능력향상 지 원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근 로 자 학 자 금 대 부	시설 · 장 비 대 부
	사 업 장	207,738	3,607	_	-	_	134	_	13
'11	훈련건수	3,004,691	11,257	162,992	129,451	32,727	251,895	21,507	_
	지 원 금	284,890	11,505	28,635	31,144	14,242	122,861	79,786	7,045
	사 업 장	218,977	4,308	_	ı	_	158	_	8
'12	훈련건수	3,179,609	10,791	164,963	64,535	37,833	271,673	17,720	-
	지 원 금	312,552	9,974	30,486	18,785	15,261	86,510	69,166	5,000
	사 업 장	299,275	4,517	_	-	_	168	_	11
'13	훈련건수	3,284,401	10,463	212,119	50,576	43,362	223,186	15,562	_
	지 원 금	321,304	9,472	54,188	17,959	20,556	146,183	62,375	6,262
	사 업 장	286,580	5,007		_	_	180		12
'14	훈련건수	3,101,972	10,340		287,596	54,402	209,117	종료사업	_
	지 원 금	349,786	9,768		81,821	24,445	165,633		11,196
	사 업 장	217,427	4,039		_	_	212		29
'15	훈련건수	2,495,792	10,057		330,293	58,939	210,338	종료사업	-
	지 원 금	324,156	9,345		87,976	23,276	211,085		12,201
	사 업 장	125,922	3,215		-	_	213		14
'16	훈련건수	2,866,904	9,499		291,723	60,310	251,090	종료사업	_
	지 원 금	494,026	9,998		79,457	22,688	252,038		11,062
	사 업 장	153,654	5,451				214		20
'17	훈련건수	3,439,373	18,861		261,934	종료사업	261,730	종료사업	_
	지 원 금	562,345	14,891		82,015		231,174		13,075

<sup>※</sup> 사업주훈련, 유급휴가훈련에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전략분야 제외), 지역산업맞춤형 포함 ('16년부터 일학습병행제 포함)

<sup>※ &#</sup>x27;16년 사업주훈련, 유급휴가훈련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 기준임

<sup>※ &#</sup>x27;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서 '사업장'은 운영기관, '훈련건수'는 수료훈련생수를의미

<sup>※ &#</sup>x27;근로학자금대부에서 '훈련건수'는 '대부확정인원', '지원금'은 대부금액을 의미

<sup>※ &#</sup>x27;시설 장비대부'에서 '사업장'은 대부기관 '지원금'은 대부금액을 의미



## 2)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 규모별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사업장 구성비

(단위: 개소, 건, 백만원)

				훈	련 건	수	
연 도	사업장	지원금액	الد	150인미만	150인 이상	1,000인	해당없음
			계	150인미만	1,000인미만	이상	애당ᆹ금
'11	207,738	284,890	3,004,691	1,066,604	803,895	1,134,192	1
''	207,730	204,090	(100.0)	(35.5)	(26.8)	(37.2)	_
'12	010 077	212 552	3,179,609	942,095	818,133	1,419,381	_
12	218,977	312,552	(100.0)	(29.6)	(25.7)	(44.6)	_
'13	299,275	321,304	3,284,401	1,257,587	756,360	1,270,454	-
13	299,275	321,304	(100.0)	(38.3)	(23.0)	(38.7)	-
'14	206 500	349,786	3,101,972	1,219,177	720,373	1,162,419	3
14	286,580	349,700	(100.0)	(39.3)	(23.2)	(37.5)	(0.0)
'15	017 407	324,156	2,495,792	855,882	722,609	917,108	193
15	217,427	324,130	(100.0)	(34.3)	(29.0)	(36.7)	(0.0)
'16	125,922	494,026	2,866,904	957,467	820,815	1,088,621	1
	125,922	494,020	(100.0)	(33.4)	(28.6)	(38.0)	(0.0)
'17	153,654	562,345	3,439,373	1,342,260	1,042,525	1,054,578	10
17	155,654	502,545	(100.0)	(39.0)	(30.3)	(30.7)	(0.0)

<sup>※ &#</sup>x27;16년부터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임

○ 업종별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사업장 구성비

(단위 : 개소, 건, 백만원)

													, –,	
연도	사업장	지원금액	계	· · · 정의 사 이 궁 관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창고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 보험 · 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 예술, 여가 관련 · 기타	재 거대 이广 크린
'11	207,738	284,890	3,004,691	3,386	1,087,631	51,707	149,133	305,503	196,282	429,956	225,592	42,661	512,770	70
''	201,736	204,090	(100.0)	(0.1)	(36.2)	(1.7)	(5.0)	(10.2)	(6.5)	(14.3)	(7.5)	(1.4)	(17.1)	(0.0)
'12	010.077	312,552	3,179,609	3,333	1,155,841	53,130	118,880	290,478	325,943	397,330	216,542	37,915	580,217	-
12	218,977	312,332	(100.0)	(0.1)	(36.4)	(1.7)	(3.7)	(9.1)	(10.3)	(12.5)	(6.8)	(1.2)	(18.2)	-
'13	299,275	321,304	3,284,401	3,212	1,059,712	37,212	95,395	262,006	240,353	351,326	222,012	40,627	972,546	-
10	299,273	321,304	(100.0)	(0.1)	(32.3)	(1.1)	(2.9)	(8.0)	(7.3)	(10.7)	(6.8)	(1.2)	(29.6)	-
'14	286,580	349,786	3,101,972	3,097	962,162	29,845	84,792	251,785	174,377	347,319	227,197	36,022	985,371	5
14	200,300	349,700	(100.0)	(0.1)	(31.0)	(1.0)	(2.7)	(8.1)	(5.6)	(11.2)	(7.3)	(1.2)	(31.8)	(0.0)
'15	217,427	324,156	2,495,792	3,174	820,771	48,931	85,041	248,463	148,816	342,536	241,073	9,091	547,703	193
13	217,427	324,130	(100.0)	(0.1)	(32.9)	(2.0)	(3.4)	(10.0)	(6.0)	(13.7)	(9.7)	(0.4)	(21.9)	(0.0)
'16	125,922	494,026	2,866,904	3,052	975,098	41,592	94,106	265,016	131,619	403,876	292,053	14,100	646,391	1
10	123,922	454,020	(100.0)	(0.1)	(34.0)	(1.5)	(3.3)	(9.2)	(4.6)	(14.1)	(10.2)	(0.5)	(22.5)	(0.0)
,17	153,654	562,345	3,439,373	3,076	974,965	54,562	141,890	331,525	194,691	524,777	452,144	10,775	750,958	10
	155,054	502,345	(100.0)	(0.1)	(28.3)	(1.6)	(4.1)	(9.6)	(5.7)	(15.3)	(13.1)	(0.3)	(21.8)	(0.0)

<sup>※ &#</sup>x27;16년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임

<sup>※</sup> 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16년부터 일학습병행제 현황 포함

<sup>※</sup> 주 : ( )안은 구성비(%)임

<sup>※</sup> 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16년부터 일학습병행제 현황 포함

<sup>※</sup> 주:() ) 아은 구성비(%)임. '177.1일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0차로 개정됨에 따라 10차 업종코드 적용



#### 3) 유급휴가훈련지원

#### ○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장 구성비

(단위: 개소, 건, 백만원)

				훈 련	건 수	
연 도	사업장	지원금액	계	150인 미만	150인 이상 1,000인미만	1,000인 이상
'11	3,607	11,505	11,257	6,117	2,699	2,441
11	3,007	11,303	(100)	(54.3)	(24.0)	(21.7)
'12	4,308	9,974	10,791	7,085	2,409	1,297
12	4,300	9,974	(100)	(65.7)	(22.3)	(12.0)
'13	4,516	9,472	10,463	7,347	2,133	983
	4,510	9,472	(100)	(70.2)	(20.4)	(9.4)
'14	5,007	9,768	10,340	6,550	2,860	930
14	3,007	9,700	(100.0)	(63.3)	(27.7)	(9.0)
'15	4,039	9,345	10,057	6,316	3,112	629
	4,039	9,343	(100.0)	(62.8)	(30.9)	(6.3)
'16	3,215	9,998	9,499	6,569	1,970	960
10	3,213	9,990	(100.0)	(69.2)	(20.7)	(10.1)
'17	5,451	14,891	18,861	14,353	3,643	865
	3,431	14,091	(100.0)	(76.1)	(19.3)	(4.6)

※ '16년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임

※ 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일부 데이터 변동 있음

**※** 주 : ( )안은 구성비(%)임

#### ○ 업종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장 구성비

(단위: 개소, 건, 백만원)

연도	사업장	지원금액	Й	이 · 어 · 어 라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기 급합, 수수, 후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 · 운수,창고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 · 부동산	전문,과학 및기술ㆍ 사업시설 관리, 원,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국회보장 사회정 행정	교육 서비스 예술, 여가 관련 기타	라 라 방
74.4	0.007	11 505	11,257	10	4,290	45	2,351	806	35	2,837	822	37	24	-
'11	3,607	11,505	(100.0)	(0.1)	(38.1)	(0.4)	(20.9)	(7.2)	(0.3)	(25.2)	(7.3)	(0.3)	(0.2)	-
,10	4 000	0.074	10,791	23	4,812	21	3,246	300	137	1,736	479	13	24	-
'12	4,308	9,974	(100.0)	(0.2)	(44.6)	(0.2)	(30.1)	(2.8)	(1.3)	(16.1)	(4.4)	(0.1)	(0.2)	-
,10	4.510	0.470	10,463	29	3,907	48	2,772	1,003	200	1,985	437	18	64	-
'13	4,516	9,472	(100.0)	(0.3)	(37.3)	(0.5)	(26.5)	(9.6)	(1.9)	(19.0)	(4.2)	(0.2)	(0.6)	-
'14	5,007	9,768	10,340	1	4,495	37	2,204	835	225	1,951	501	3	88	-
14	5,007	9,700	(100.0)	(0.0)	(43.5)	(0.4)	(21.3)	(8.1)	(2.2)	(18.9)	(4.8)	(0.0)	(0.9)	
'15	4,039	9,345	10,057	1	4,447	26	2,417	993	81	1,706	336	-	50	-
15	4,039	9,343	(100.0)	(0.0)	(44.2)	(0.3)	(24.0)	(9.9)	(0.8)	(17.0)	(3.3)	-	(0.5)	_
'16	3,215	9,998	9,499	-	3,108	71	2,714	764	162	1,828	762	24	66	-
10	3,213	9,990	(100.0)	-	(32.7)	(0.7)	(28.6)	(8.0)	(1.7)	(19.2)	(8.0)	(0.3)	(0.7)	_
'17	5,451	14,891	18,861	1	5,301	90	6,868	996	160	4,061	1,003	26	355	-
17	5,451	14,091	(100.0)	(0.0)	(28.1)	(0.5)	(36.4)	(5.3)	(0.8)	(21.5)	(5.3)	(0.1)	(1.9)	-

※ '16년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임

※ 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일부 데이터 변동 있음

※ 주:( )안은 구성비(~)임,'177.1일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0차로 개정됨에 따라 10차 업종코드 적용



#### 4)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훈	련	건 수	162,992	164,963	212,119	209,361	24,806
지	원	액	28,635	30,486	54,188	57,746	7,034

<sup>※ &#</sup>x27;14.4.15에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으로 통합

# 5)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훈	련	건 :	수	129,451	64,535	50,576	34,111	3,069
지	원		액	31,144	18,785	17,959	12,373	1,080

<sup>※ &#</sup>x27;07년부터 사업시행, '14.4.15에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으로 통합

## 6)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분 '14		'15	'16	'17
훈	련 건	수	44,124	302,418	291,723	261,934
지	원	액	11,702	79,862	79,457	82,015

<sup>※</sup>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은 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한 사업임(14.4.15)

# 7)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지	원 자	수	32,727	37,833	43,362	54,402	58,939	60,310
지	원	액	14,242	15,261	20,556	24,445	23,276	22,688

<sup>※ &#</sup>x27;06년부터 사업시행, '16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사업으로 통합(사업폐지)



## 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공동훈련센터	134	158	168	180	212	213	214
훈련인원	251,895	271,673	223,186	209,117	210,338	251,090	261,730
참여중소기업	120,950	114,771	99,040	105,318	109,544	126,395	127,850
지원금액	122,861	86,510	146,183	165,633	211,085	252,038	231,174

- ※ 컨소시엄 사업주·근로자 만족도 : 91.2% ('04. 직능원)
- ※ 해외성공시례소개 ('04 Employment Outlook, '05.3 OECD 평생학습국제회의 스웨덴)
- ※ 공동훈련센터(舊 운영기관)는 선정연도 기준('12년말 2차 신규 선정 13개 공동훈련센터 포함), 참여 중소기업은 훈련과정별 누적기준임, 일학습병행은 제외.

## 9) 근로자학자금 대부

(단위 : 개소, 건, 백만원)

									( [		<u> </u>	1 – – /
			40151				확정	인원유형	병별			
연도	대부	확정	1인당 평균	개인	l 별	기입	<b>법</b>	성	별 학교별			
	금액	인원	대부비	이공계	기타	중소 기업	대규모 기업	남	여	2년제	4년제	기타
'08	87,755	25,507	3,440	9,500 (37.2)	16,007 (62.8)	14,557 (57.1)	10,950 (42.9)	14,377 (56.4)	11,130 (43.6)	19,274 (75.6)	6,232 (34.4)	(0.0)
'09	99,076	29,424	3,367	11,198 (38.1)	18,226 (61.9)	18,797 (63.9)	10,627 (36.1)	16,714 (56.8)	12,710 (43.2)	22,118 (75.2)	7,305 (24.8)	(0.0)
'10	90,769	25,394	3,574	9,995 (39.4)	15,399 (60.6)	14,696 (57.9)	10,698 (42.1)	14,683 (57.8)	10,711 (42.2)	19,665 (77.4)	5,729 (22.6)	-
'11	79,786	21,507	3,710	9,104 (42.3)	12,403 (57.7)	7,899 (74.3)	2,729 (25.7)	12,365 (57.5)	9,142 (42.5)	16,843 (78.3)	4,664 (21.7)	_
'12	69,166	17,720	3,903	7,214 (40.7)	10,506 (59.3)	6,977 (39.4)	10,743 (60.6)	10,289 (58.1)	7,431 (41.9)	14,488 (81.8)	3,232 (18.2)	-
'13	62,375	15,562	4,008	6,141 (39.5)	9,421 (60.5)	11,549 (74.2)	4,013 (25.8)	8,883 (57.1)	6,679 (42.9)	13,197 (84.8)	2,365 (15.2)	_

<sup>※ &#</sup>x27;13년 종료사업

# 10)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단위: 개소, 백만원)

연 도	계	획	실	적
也 工	기관수	대부금액	기관수	대부금액
'11	14	8,000	13	7,045
'12	10	6,600	8	5,000
'13	8	6,270	11	6,262
'14	10	11,643	12	11,196
'15	83	25,000	29	12,201
'16	81	23,750	14	11,062
'17	34	15,260	20	13,075



# 다. 실업자훈련

# 1) 총 괄

(단위 : 명)

훈 련 종 류	'11	'12	'13	'14	'15	'16	'17
총 계	393,568	336,858	450,352	284,438	272,295	272,793	291,066
○ 신규실업자훈련	87,923	80,669	98,729	51,477	39,793	36,133	37,589
○ 전직실업자훈련	279,733	226,617	312,793	191,043	157,847	177,276	181,655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5,199	28,879	38,069	41,142	74,207	58,947	71,450
○ 지역실업자훈련	713	693	761	776	448	437	372

<sup>※</sup> 각 해당연도말기준으로 산정

<sup>※ &#</sup>x27;11년부터 우선선정직종훈련이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사업명칭 변경

<sup>※ &#</sup>x27;11년부터 전직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은내일배움카드제실적

<sup>※ &#</sup>x27;14년까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sup>※</sup> 자료산출기준 :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2) 신규실업자훈련

(단위 : 명)

구 분	계 획 인 원	실 시 인 원	훈련중 인 원	수 료 인 원	취 업 인 원	순중도탈락 인 원 (조기취업인원)
'11	44,480	87,923	10,766	63,879	10,233	12,376 (902)
'12	70,000	80,669	7,968	62,050	9,864	9,840 (811)
'13	69,495	98,729	13,206	75,298	12,947	9,263 (962)
'14	51,595	51,477	8,059	38,344	8,469	4,463 (611)
'15	43,576	39,793	6,245	29,467	7,415	3,575 (506)
'16	50,713	36,133	5,449	27,122	7,679	3,059 (503)
'17	36,408	37,589	6,160	28,112	7,764	2,784 (533)

- ※ ( )의 조기취업인원은 훈련 중 취업으로 중도탈락한 인원임
- ※ 각연도말 기준으로 산정
- ※ '10년도 신규실업자 훈련(신규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미적용, 새터민 합계)
- ※ '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실적
- ※ 자료산출기준 :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3) 전직실업자훈련

(단위 : 명)

구 분	계 획 인 원	실 시 인 원	훈련중 인 원	수 료 인 원	취 업 인 원	순중도탈락 인 원 (조기취업인원)
'11	104,426	279,733	26,863	212,279	57,784	34,954 (5,637)
'12	151,131	226,617	20,936	179,073	44,336	22,361 (4,247)
'13	147,380	312,793	43,396	238,606	63,851	24,754 (6,037)
'14	165,685	191,043	31,500	142,716	45,496	13,162 (3,665)
'15	180,270	157,847	26,389	116,983	40,638	10,977 (3,498)
'16	154,733	177,276	28,450	132,066	51,050	12,341 (4,419)
'17	129,021	181,655	31,549	134,208	50,905	11,334 (4,564)

- ※ ( )의 조기취업인원은 훈련 중 취업으로 중도탈락한 인원임
- ※ 각 연도말 기준으로 산정
- ※ '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실적
- ※ 자료산출기준 :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단위 : 명)

						(11 . 0)
구 분	계 획 인 원	실 시 인 원	훈련중 인 원	수 료 인 원	취 업 인 원	순중도탈락 인 원 (조기취업인원)
'11	18,940	25,199	11,235	8,338	7,654	2,635 (2,991)
'12	22,470	28,879	6,566	15,964	9,612	3,123 (3,226)
'13	25,000	38,069	12,635	17,975	9,752	4,139 (3,320)
'14	35,220	41,142	13,283	20,018	11,784	4,191 (3,650)
'15	69,000	74,207	19,084	42,730	25,558	7,168 (5,225)
'16	85,312	58,947	19,487	31,141	17,785	4,851 (3,468)
'17	78,825	71,450	23,906	36,674	19,341	6,550 (4,320)

※ ( )의 조기취업인원은 훈련 중 취업으로 중도탈락한 인원임

※ 각 연도말 기준으로 산정

※ 자료산출기준 :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5) 지역실업자훈련

(단위 : 명)

				(211 0)
연도별	목 표	위탁(입소)	수 료	취 업
'11	566	713	426	227
	(414)	(376)	(183)	(67)
'12	523	693	477	253
	(385)	(249)	(135)	(46)
'13	504	761	493	211
	(366)	(305)	(135)	(59)
'14	504	776	492	235
	(366)	(307)	(136)	(43)
'15	225	448	345	164
'16	241	437	350	160
'17	217	372	284	140

※ 목표의 ()는 농특회계, 취업의 ()는 훈련 중 취업인원으로취업에 합산되었음

※ 연도별 실적은 해당 연도에 훈련이 시작되어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어 실시된 실적을 종합하고 있음

※ 10년부터 각 연도말 기준으로 산정

※ '14년까지는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농특+광특), '15년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지특)

※ 자료산출기준 :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6)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및 훈련참여현황

('17.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카드(계좌)발급인원	훈련참여인원	훈련미참여인원
2011. 1. 1~2011.12.31	237,719	186,625 (78.5%)	51,094 (21.5%)
2012. 1. 1~2012.12.31	189,419	171,804 (90.7%)	17,615 (9.3%)
2013. 1. 1~2013.12.31	214,973	200,949 (93.5%)	14,024 (6.5%)
2014. 1. 1~2014.12.31	149,533	140,439 (93.9%)	9,094 (6.1%)
2015. 1. 1~2015.12.31	162,928	141,062 (86.6%)	21,866 (13.4%)
2016. 1. 1~2016.12.31	177,718	155,684 (87.6%)	22,034 (12.4%)
2017. 1. 1~2017.12.31	183,485	170,875 ( 93.1%)	12,610 ( 6.9%)

<sup>※ &#</sup>x27;08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10년 내일배움카드제로명칭 변경

<sup>※</sup> 발급인원 중 훈련참여인원: 해당시기의 계좌발급자 중 훈련참여지(순인원)

<sup>※</sup>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대상자 중 카드발급신청시 관리되는 국기훈련여부가'Y' 가 아닌 대상자에 한해 산정함

<sup>※</sup> 신청인원산정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정보 입력된 경우에 한해 산정



# 라. 공공훈련

# 1) 한국폴리텍대학

## ○ 전문기술과정 양성실적

연 도	'1	1	'1	12	'1	3	'1	14	'1	15	'1	16	,,	17
훈련기관	입학	수료												
합 계	7,205	6,175	7,181	5,951	7,205	6,145	7,729	6,675	7,733	6,566	8,223	6,807	5,858	4,916
서울정수	33	30	87	67	92	74	217	153	210	145	230	166	169	106
서울강서	896	716	868	644	711	550	707	548	731	571	718	568	270	204
성남	-	_	-	-	28	23	81	55	135	93	152	110	59	51
제주	223	189	218	177	221	176	217	197	218	196	231	195	208	189
융합기술	-	-	-	-	-	-	_	_	-	_	86	67	120	47
인천	33	27	92	59	66	52	117	92	117	86	84	64	29	24
안성	-	_	-	-	-	-	-	_	-	-	18	4	-	-
남인천	561	505	581	488	594	524	690	616	634	552	622	516	475	406
화성	379	323	391	345	380	341	446	405	428	374	435	370	319	287
춘천	250	222	249	206	248	207	253	221	251	219	252	211	221	183
원주	404	338	365	325	403	350	436	389	410	356	404	361	297	249
강릉	412	353	410	350	441	382	406	355	414	372	419	368	281	243
대전	87	71	60	45	65	51	93	85	93	81	125	107	134	114
청주	-	-	-	ı	21	16	24	19	27	25	51	50	28	27
홍성	33	30	47	30	33	29	60	49	85	65	125	84	49	40
충주	375	306	369	295	357	286	343	290	336	290	332	278	241	201
아산		-	-	-	-	ı	19	7	25	20	37	21	-	-
광주	323	284	329	270	311	269	316	282	318	282	412	320	252	221
김제	33	32	30	29	32	32	20	20	54	41	78	60	43	40
목포	-	_	_	_	1	1	_	_	-	_	24	23	14	14
익산	391	327	375	308	360	308	340	295	332	295	341	290	223	193
순천	427	388	444	389	454	401	476	418	455	395	455	376	363	309
대구	62	44	82	66	83	72	93	78	92	72	110	96	79	65
구미	126	104	145	99	152	118	148	128	148	122	172	134	115	95
달성	301	245	304	263	310	266	285	253	288	244	286	252	280	252
포항	372	331	358	311	388	327	422	361	414	349	373	315	253	215
영주	296	232	267	213	250	217	185	163	229	187	189	164	171	147
동부산	353	320	336	298	332	293	368	331	369	318	336	296	302	257
진주	396	361	385	328	408	362	378	333	354	307	416	356	353	295
창원	439	397	389	346	423	384	545	493	499	454	471	400	332	287
부산	-	_	_		ı	ı	_	-	ı	ı	22	17	26	25
울산	-	_	_	_	-		_	_	27	22	60	47	25	23
바이오	-	_	_	-	ı	1	_	_	ı	-	48	46	58	54
섬유패션	-	-	-	-	-	-	-	_	-	-	47	27	42	29
신기술	-	_	-	_	42	35	44	39	40	33	62	48	27	24



(단위 : 명)

구 분	계 획 인 원	실 시 인 원	수 료 인 원	취 업 인 원	중도탈락 인 원
'11	6,718	7,205	6,175	3,838	1,030
'12	6,770	7,181	5,951	3,701	1,230
'13	6,770	7,205	6,145	4,061	1,060
'14	7,270	7,729	6,675	3,889	1,054
'15	7,280	7,734	6,566	3,418	1,167
'16	8,400	8,223	6,807	3,239	1,416
'17	6,205	5,858	4,916	2,457	896

- ※ '05년도 현황산정부터 익년도 2월 기준(훈련생 수료시점)으로 집계
- ※ '14년도 이후부터 취업인원은 기능사 1년 과정 기준 실적임(1년 미만 제외)
- ※ '16년도 이후부터 고교위탁생, 단기과정훈련생 포함

### ○ 다기능기술자 양성실적

연 도 캠퍼스	'11	'12	'13	'14	'15	'16	'17
합 계	12,800	13,347	14,344	14,847	14,759	14,566	14,332
서울정수	1,120	1,182	1,127	1,210	1,216	1,152	1,119
서울강서	460	539	553	540	598	512	431
성남	698	777	834	914	925	921	795
제주	-	-	-	-	-	-	21
인천	1,533	1,588	1,756	1,763	1,765	1,796	1,854
안성	-	-	-	-	-	406	459
춘천	384	359	351	345	338	305	325
원주	-	-	-	-	-	22	44
강릉	50	46	46	68	61	82	109
대전	653	686	722	847	881	945	875
청주	506	564	680	697	687	794	730
아산	358	357	397	422	429	419	477
홍성	205	190	209	209	229	231	232
광주	590	599	633	735	710	690	714
김제	554	502	497	542	513	502	463
목포	252	242	243	232	246	229	213
익산	56	59	50	46	52	79	97
대구	802	863	976	1,003	956	916	929
구미	481	514	601	538	535	470	466
영주	-	-	-	24	41	33	48
창원	1,086	1,138	1,263	1241	1,220	1,250	1,216
부산	667	716	878	871	881	879	851
울산	634	687	813	843	811	796	763
안성	642	647	607	600	531	-	-
섬유패션	350	338	332	340	356	317	283
항공	411	440	477	484	447	471	470
바이오	308	314	299	333	331	349	348



### ○ 기능장 양성실적

(단위 : 명)

연도 학과	'11	'12	'13	'14	'15	'16	'17
계	263	242	250	235	235	280	223
컴 퓨 터 응 용 기 계 (기 계 공 작)	49	46	38	43	44	56	39
전 기	50	45	45	44	41	43	37
전 기 에 너 지 시 스 템	-	-	-	-	-	23	22
자 동 차	123	106	122	110	110	133	81
기 계 시 스 템	20	22	25	21	22	25	44
전 기 에 너 지 시 스 템	21	23	20	17	18	-	-

<sup>※</sup> 한국폴리텍대학 수료인원 기준임

##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과			연도	'11	'12	'13	'14	'15	'16	'17
	7	#		4,552	4,766	4,899	5,088	5,132	5,451	5,870
정	규	과	정	3,964	4,211	4,322	4,537	4,560	4,390	4,432
훈 련	교사	교 직	과 정	500	448	455	461	474	953	1,490
훈 련	교사	향 상	과 정	88	107	122	90	98	108	217



# 마. 국제협력사업

# 1) 개 요

사업명	내용	규 모	사업기간
사업명	내 용  ○ 한・수단직업훈련원 설립 ○ 한・인니직업훈련원 설립 ○ 인니 M.T.U. 수석자문관 지원사업 ○ 한・가봉 기술지원 ○ 한・이집트 직업훈련지원 ○ 개도국 기술연수생 초청훈련 ○ 중국 취업훈련기술지도센터 설립지원 ○ 남아공 국립직업기능검정원 지원사업 ○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지원사업 ○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지원사업 ○ 하는SICA(중남미통합체제) 협력사업 ○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 참보디아 국가지결확인검정 시스템 구축사업 ○ 캄보디아 국가지술자격시스템 구축사업 ○ 캄보디아 국가지술자격시스템 구축사업 ○ 리비아 건설직업훈련원 지원 용역사업 ○ 멕시코・사할린(연해주) 한인후손초청 연수사업 ○ 한-인니 기술문화협력센터 지원사업 ○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 가라과 직업훈련원 건립 EDCF 용역사업 ○ 이라크 안바르 직훈역량강화 사업 ○ 나카라과 직업훈련원 건립 FDCF 용역사업 ○ 아프간 바그램PRT 직업훈련건립 사업 ○ 우간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PMC 용역 ○ 베트남 국가기술자격검정 역량강화사업 ○ 니카라과 직훈 EDCF 컨설팅 사업 ○ 이집트 ITEC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아제르바이잔 직업훈련센터 건립 컨설팅 사업 ○ 어제르바이잔 직업훈련센터 건립 컨설팅 사업	3,840,000\$ 5,200,000\$ 1,000,000\$ 1,000,000\$ 600,000\$ 6,182,269\$ 10,000,000\$ 3,000,000\$ 2,427,000\$ 717,000\$ 194,000\$ 1,190,000\$ 2,330,000\$ 2,240,000\$ 846,000\$ 856,000\$ 301,000\$ 408,000\$ 2,278,000\$ 70,000\$ 594,000\$ 1,212,000\$ 146,000\$ 1,212,000\$ 14,996,426\$ 933,096\$ 1,232,054\$ 1,267,039\$ 915,755\$ 870,118\$ 943,586\$	'92~'97 '86~'94 '95~'97 '84~'90 '93~'95 '75~'99 '97~'01 '99~'01 '92~'09 '04~'05 '04~'07 '04~'07 '07~'09 '06~'09 '06~'09 '06~'09 '08~'09 '08~'11 '08~'09 '08~'11 '09~'15 '11~'18 '11~'13 '12~'15 '14~'16 '15~'18 '16
	○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	1,232,394\$	'16~'18
	○ 라오스 한라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423,874\$	'17~'20
수	○ 한·독기술협력	64,120,000DM	'70~'96
	- 한·독부산직업훈련원 설립	16,000,000DM	'70~'75
	- 직업훈련 자문	34,000,000DM	'76~'93
원	- 창원기능대학	13,000,000DM	'79~'90
	- 신규 한·독협력사업	1,120,000DM	'94~'96
사	○ UNDP중앙직업훈련원	2,620,000\$	'68~'81
	○ UNDP서울국제직업훈련원	570,000\$	'90~'97
업	○ 정수직업훈련원(미국)	250,000\$	'76
	○ 한·일대전직업훈련원 설립	2,000,000\$	'76~'88
	○ 한·백창원직업훈련원 설립	5,460,706\$	'76~'90



#### 2) 개도국 기술연수생 초청훈련1)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190	338	215	274	372	351	335	451	339	351	389	365	480	523	451	492	596	108
베	E	남	22	33	22	12	11	51	83	108	7	25	11	14	144	26	43	35	100	14
인 시	도	네 아	21	20	20	12	4	25	7	30	6	24	14	8	_	7	4	_	35	2
  필	리	핀	20	13	26	11	34	8	9	11	6	10	_	3	_	5	2	_	_	2
말 시	레	이 아	10	3	5	7	5	7	5	2	4	16	9	6	34	2	3	15	_	7
태		국	7	13	10	10	5	14	7	8	102	84	66	71	47	44	_	27	-	6
중		국	51	12	13	5	5	12	17	20	4	4	12	4	_	2	2	_	_	_
파 뉴 :		아   아	2	7	2	1	5	_	_	_	_	_	_	3	_	_	1	_	_	_
기		E <b> </b> 2)	57	237	117	216	303	234	207	272	210	188	277	256	255	437	396	415	461	77

<sup>※ 1.</sup>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중심

<sup>2.</sup> 기타국(81개국): 가봉, 가나, 스리랑카, 몽고, 코스타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세네갈, 자이르, 레소토, 우간다, 빈센트, 투발로, 수단, 방글라데쉬, 네팔, 브리키나파쇼, 자메이카, 이집트, 오만, 모리타니아, 기네비소, 인디아, 미얀마, 요르단, 시에라네온, 몰디브, 파키스탄, 이란, 피지, 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네, 보츠와나, 나미비아, 에쿠아도르, 아디티, 이디오피아, 모리셔스, 트리니다드로바코, 카메룬, 차드, 이라크, 말라위, 스와질랜드, 도미니카, 상토메프린시페, 소말리아, 코모르, 시리아, 예멘, 파나마, 잠비아, 리비아, 엘살바도르, 헝가리, 통가, 키리바티, 콩고, 파라과이, 리비아, 모로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에트리아타, 브루나이, 칠레,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과테말라, 탄자니아, 앙골라, 일본, 라오스, 팔레스타인

# 3.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공공훈	련기관			민간훈련기관				
연도	계	소계	한국 폴리텍 대학	대한 상공 회의소	한국 기술 대학	한국 장애인 공단	관계 부처 등	소계	지정직업 훈련시설 (훈련법인 포함)	사업주 단체등 시설	기타	
′07	4,975	93	40	8	1	5	39	4,882	823	1,411	2,648	
'08	5,198	93	40	8	1	5	39	5,105	943	1,006	3,156	
'09	6,656	92	38	8	1	5	40	6,564	1,027	1,545	3,992	
'10	6,977	81	35	_	1	5	40	6,896	959	1,610	4,327	
'11	7,094	80	34	-	1	5	40	7,014	929	1,769	4,316	
'12	6,471	81	34	_	1	5	41	6,390	851	1,888	3,651	
'13	7,813	82	34	_	1	5	42	7,731	861	2,349	4,521	
'14	8,304	82	34	-	1	5	42	8,222	852	2,830	4,540	
'15	7,812	82	34	_	1	5	42	7,730	813	3,277	3,640	
'16	6,885	85	37	_	1	5	42	6,800	789	3,123	2,888	
'17	7,673	85	37	-	1	5	42	7,588	761	3,438	3,389	

<sup>※</sup> 대한상공회의소는 '10. 9. 1일자로 민간훈련시설로 변경(고용부 지정시설에 포함)

<sup>※ &#</sup>x27;17년 12월 기준 관계부처 현황: 법무부(35), 환경부(1), 서울특별시(4), 경기도(1), 부산광역시(1)

<sup>※</sup> 자료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 4. 자격제도

### 가. 우리나라 자격 현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현황

(2017. 12월 시행기준)

구 분	종목수	직무분야	검 정 수 탁 기 관	비	고
현 황	525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

#### ○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현황

(2017. 12월 기준)

구 분	종목수	검 정 수 탁 기 관	비고
현 황	174(직종)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등 (부처·청·위원회에서 위탁)	-

#### ○ 민간자격 현황

(2017. 12월 기준)

구 분	종목수	검 정 시 행 기 관	비	고
등록민간자격	28,077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외국어능력 평가원 등 민간기관		
공인민간자격	99 (직종)	대한상공회의소, 삼성SDS, 한국생산성본부 등 58개 민간기관		

### ○ 사내자격 현황(고용노동부인정)

(2017. 12월 기준)

구	분	기관수	자격수	비	고
현	황	LG전자㈜ 등 77개 기업	Digital Consultant 등 165종목		



#### 나. 주무부처별 자격종목 현황

(2017.12월 시행종목 기준)

						(20	기7.12월 시행공목 기 <b>서비스분야</b>			
등	총계	기스시	ᄁᅜᅑᄔ	기사	산업 기사	71 - 41	•	서비스	느분이	<b>=</b>
부 처	공세	기팔사	기능장	71^1	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
총계	<b>525</b> (10)	84(2)	27	109(2)	114(2)	159(2)	10	10	3	9(2)
1. 경찰청	6	1	_	2	2	1	_	_	_	_
2. 고용노동부	109	6	11	13	22	41	5	5	3	3
3. 공정거래위원회	2	_	_	_	_	_	1	1	_	_
4. 행정안전부	3	-	-	1	1	1	-	_	_	_
5. 소방청	10	1	1	3	4	1				
6. 국방부	3	_	_	1	1	1	-	_	_	_
7. 국토교통부	117	25	5	20	23	44	-	_	_	_
8. 기상청	3	1	_	2	_	_	-	_	_	_
9. 농림축산식품부	13	2	_	4	3	4	-	_	_	_
10. 농촌진흥청	15	3	_	4	3	5	-	_	_	_
11. 문화체육관광부	9(2)	_	_	_	1	2	1	1	_	4(2)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4	22	1	15	13	12	-	_	_	1
13. 보건복지부	14	_	2	1	1	7	1	1	_	1
14. 산림청	10	1	_	3	2	4	_	_	_	_
15. 산업통상자원부	85(2)	11	5	24	21(2)	22	1	1	_	_
16 식품의약품안전처	20(2)	2	2	<b>1</b> (1)	6	9(1)	_	_	_	_
17. 통계청	2	_	_	_	_	_	1	1	_	_
18. 해양수산부	20(2)	4(1)	_	7	5	4(1)	_	_	_	_
19. 환경부	20(2)	5(1)	_	8(1)	6	1	_	_	_	_

- \* ( )는 공동소관 종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미래창조과학부, <u>문화체육관광부</u>
- **토양환경기술사·기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미래창조과학부, <u>산업통상자원부</u>
- **수산제조기술사·기사**: 해양수산부, <u>식품의약품안전처</u>
- **식육처리기능사**: 농림축산식품부, <u>식품의약품안전처</u>
-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국토교통부(항만구역 외), 해양수산부(항만구역 내)



### 다. 직무분야별 자격종목 현황

(2017.12월 시행종목 기준)

등급별					사언			서ㅂ	l  스	
직무 분야별	총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
총 계	525	84	27	109	114	159	10	10	3	9
1. 사업관리	-	-	-	-	-	-	-	-	-	-
2. 경영·회계· 사무	25	3	-	2	2	-	7	7	3	1
3. 금융·보험	-	-	-	-	-	-	-	-	-	-
4. 교육·자연과학· 사회과학	-	-	-	-	-	-	-	-	-	_
5.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	-	-	-	-	-	-	-	-	-
6. 보건・의료	3	_	-	-	_	-	1	1	-	1
7. 사회복지·종교	2	_	-	-	_	_	1	1	-	_
8.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12	1	-	3	4	4	-	_	_	_
9. 운전・운송	2	-	-	-	1	1	-	-	-	-
10. 영업·판매	4	-	-	-	-	-	1	1	-	2
11. 경비·청소	1	-	-	-	-	1	-	-	-	-
12.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	8	-	2	-	-	5	-	_	-	1
13. 음식서비스	12	-	1	-	5	6	-	-	-	-
14. 건 설	98	21	3	17	18	39	-	-	-	-
15. 광업자원	11	3	-	3	2	3	-	-	-	-
16. 기 계	81	10	5	17	20	29	-	-	-	-
17. 재 료	38	6	8	2	6	16	-	-	-	-
18. 화 학	10	1	1	4	2	2	-	-	-	-
19. 섬유ㆍ의복	15	2	-	2	5	6	-	-	-	-
20. 전기 • 전자	35	7	2	10	9	7	-	-	-	-
21. 정보통신	30	3	1	7	8	7	-	-	-	4
22. 식품가공	9	2	1	2	1	3	-	-	-	-
23. 인쇄·목재· 가구·공예	16	-	1	1	3	11	-	-	-	-
24. 농림어업	37	7	-	11	8	11	-	-	-	_
25. 안전관리	40	9	1	14	11	5	-	-	-	-
26. 환경・에너지	36	9	1	14	9	3	-	-	-	-

<sup>※ &#</sup>x27;26.환경·에너지' 3종목(원자력안전기술원), '8.문화·예술·디자인·방송' 2종목(영화진흥위원회), '2.경영·회계·사무(12), 10.영업·판매(3)' 15종목(상공회의소), '21.정보통신' 3종목(한국콘텐츠진흥원), '21.정보통신' 16종목(한국전파진흥원), 2종목(한국인터넷진흥원), '15.광업자원' 7종목(한국광해관리공단), 나머지 477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현황

○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구분	로	응시자	합격자								
	는 계	3,272,090	573,473	3,287,804	566,302	3,376,556	624,184	3,378,603	647,641	3,419,994	653,028
기	기 술 사	22,705	1,358	21,079	1,084	18,986	1,079	20,051	1,350	21,271	1,624
술   	기 능 장	30,914	3,837	36,632	3,654	35,919	3,677	40,682	6,589	42,208	6,336
기	기 사	413,611	57,331	418,710	54,060	471,530	73,627	514,235	82,070	541,670	83,274
능 분	산업기사	290,217	40,378	294,053	45,474	311,477	47,800	311,730	47,488	315,696	47,739
O‡	기능사	1,677,447	337,345	1,658,797	319,848	1,678,766	352,921	1,716,445	372,375	1,706,929	381,031
	서비스 분야	837,196	133,224	858,533	142,182	859,878	145,080	775,460	137,769	793,771	133,024

- ※ 응시자는 필기응시자와 실기응시자를 합친 인원수임 서비스분야는 '10년이전 기초사무 전문사무로 분류, '11년이후 1 2 3급, 단일종목으로 분류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평가 및 합격자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내부평가	외부	평가	내부평가	외부	평가	내부평가	외부	평가
구분		네구하기	응시자	합격자	네구하기	응시자	합격자	네구청기	응시자	합격자
소	계	315	173	51	2,019	1,180	671	3,624	2,412	1,640
기	사	ı	-	-	-	-	-	11	3	1
산업	기사	50	36	10	631	394	179	1,380	797	478
기능	등사	265	137	41	1,369	767	476	2,194	1,583	1,135
서비	비스	ı	-	-	19	19	16	39	2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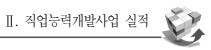
# 마. 민간자격 공인 현황

(2017. 12월 기준)

A 71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유효기간	기공인기간		
	신용관리사	-	(사)신용정보협회	13.02.15~18.02.14	06.02.15~13.02.14		
	신용위험분석사(CRA)	-		13.02.15~18.02.14	06.02.15~13.02.14		
	신용분석사		] - (사)한국금융연수원 -	15.01.20~20.01.19	01.01.20~15.01.19		
	여신심사역		ੵੑੑੑੑੑੑੑੑੑੑੑੑੑੑੑੑੑੑੵੑੑੑੑੑਖ਼ਜ਼ਫ਼ਖ਼ਜ਼ਖ਼ ਫ਼	15.01.20~20.01.19	01.01.20~15.01.19		
	자산관리사(FP)			16.01.05~21.01.04	05.01.05~16.01.04		
금융 위원회 _	재경관리사	-	· 삼일회계법인 ·	15.04.01~20.03.31	07.04.01~15.03.31		
(11)	회계관리	1, 2급	급골외계립인	15.04.01~20.03.31	07.04.01~15.03.31		
	AT(Accounting Technician)	TAT1급, TAT급, FAT1급, FAT2급	한국공인회계사회	15.12.01~17.11.30	_		
	개인보험심사역	-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16.01.01~20.12.31	_		
	기업보험심사역	-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16.01.01~20.12.31	-		
	신용상담사	-	신용회복위원회	17.01.01~21.12.31	_		
	국제금융역	-	(사)한국금융연수원	15.01.20~18.01.19	01.01.20~15.01.19		
	외환전문역	1~2종	(시)한국급융한구현	15.12.01~20.11.30	10.12.01~15.11.30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S급, 1~3급	한국경제신문사	16.11.10~18.11.09	10.11.10~16.11.09		
	매경TEST	최우수, 우수	매일경제신문사	16.12.22~18.12.21	10.12.22~16.12.21		
기획 재정부	세무회계	1~3급	한국세무사회	13.01.01~17.12.31	_		
(8)	청소년경제이해력검증시험 주니어TESAT(테샛) (J-TESAT)	S, 1, 2, 3	한국경제신문사	16.12.13~18.12.12	13.12.13~16.12.12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TEST」	A+, A, B	매일경제신문사	16.12.13~18.12.12	13.12.13~16.12.12		
	원가분석사	-	(사)한국원가관리협회	17.01.01~19.12.31	14.01.01~16.12.31		
	e-Test Professionals	1, 2, 3, 4급	(사)한국창의 인성교육연구원	15.02.17~19.02.16	01.01.12~15.02.16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A, B급	(주)피씨티	15.02.17~19.02.16	01.01.12~15.02.16		
_     과학기 _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 1 • 2급		15.02.17~19.02.16	01.01.12~15.02.16		
술정보	리눅스마스터	1, 2급	(사)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5.01.15~19.01.14	05.01.15~15.01.14		
통신부 (20)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초, 중, 고급		17.02.17~21.02.16	03.02.17~17.02.16		
	네트워크관리사	2급	(사)한국정보통신	16.01.20~20.01.19	12.01.20~16.01.19		
	PC정비사 1, 2급	자격협회	15.01.15~19.01.14	05.01.15~15.01.14			
	정보기술자격(ITQ)시험	A, B, C급	한국생산성본부	16.01.20~21.01.19	9 02.01.11~16.01.19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유효기간	기공인기간
	PC Master(정비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16.02.23~20.02.22	06.02.23~16.02.22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재)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16.01.01 ~ 19.12.31	08.01.01~15.12.31
	SQL	전문가, 개발자	(재)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13.01.01 ~ 17.12.31	_
	ERP물류정보관리사				
	ERP생산정보관리사	1 27	ᅙᆚᄀᄊᄊᅜᄇᄇ	13.09.30~17.09.29	11.09.30~13.09.29
	ERP인사정보관리사	1, 2급	한국생산성본부	13.09.30~17.09.29	11.09.50~15.09.29
	ERP회계정보관리사				
	정보기술프로젝트 관리전문가(IT-PMP)	-	대한정보통신기술(합)	13.09.30~17.09.29	11.09.30~13.09.29
	RFID기술자격검정	RFID-GL, RFID-SL	(사)한국사물인터넷협회	15.01.01 ~ 18.12.31	13.01.01 ~ 14.12.31
	IEQ(인터넷윤리자격)	지도사	한국생산성본부	16.01.01~20.12.31	14.01.01~15.12.31
	상공회의소 IT +	레벨 1~5	대한상공회의소	17.01.01~18.12.31	15.01.01~16.12.31
	데이터분석	전문가, 준전문가	(재)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16.01.01~17.12.31	-
	한자능력급수	특급, 특급	(사)한국어문회	16.11.17~19.11.16	11.11.17~16.11.16
	간사이기티 1	1, 2, 3, 3Ⅱ급	(시)한국이군되	17.02.10~20.02.09	01.01.01~17.02.09
	TEPS(영어능력검정)	1+, 1, 2, 2+급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17.02.10~20.02.09	03.02.10~17.02.09
	한자실력급수	사범, 1급, 2급, 3급		16.02.10~18.02.09	04.01.27~16.02.09
	한자·한문지도사	한자 · 한문특급, 한자 · 한문1급, 한자 · 한문2급, 한자 · 한문3급	(사)한자교육진흥회	16.11.24~18.11.23	10.11.24~16.11.23
교육부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지도사2급,1급. 훈장2급,1급,특급	· (사)대한민국한자	17.01.07~19.01.06	09.01.07~17.01.06
(25)	한자급수자격검정	사범, 1급, 준1급, 2급, 준2급	교육연구회	16.10.01 ~ 18.09.30	15.02.10~16.02.09
	한자급수인증	장원	한국교육문화회	16.11.24~18.11.23	10.11.24~16.11.23
	241126	1, 2, 3 급	2424244	17.01.07~19.01.06	09.01.07~17.01.06
	영어회화평가시험	general 1급, general 2급	㈜이에스피평가 아카데미	17.02.10~19.02.09	04.01.27~17.02.09
	한국영어검정	1, 2, 2A급	(사)한국평생	16.02.10~18.02.09	06.02.10~16.02.09
	한국한자검정	1, 2, 3, 준3급	교육평가원		
	한자능력자격	1, 2, 준2, 3급	(사)한국한자한문 능력개발원	17.02.10~20.02.09	06.02.10~17.02.09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유효기간	기공인기간
	Mate Speaking	Expert expert ~ Moderate Mid (8개 등급)	숙명여자대학교	16.02.10~19.02.09	06.02.10~16.02.09
	Mate Writing	Expert ~ Moderat e Mid(5개 등급)			
	FLEX 중국어			17.04.02~19.04.01	07.04.13~17.04.01
	FLEX 일본어			17,04,02 19,04,01	07.04.13 17.04.01
	FLEX 독일어(듣기/읽기)	l(A~C)급,			
	FLEX 스페인어(듣기/읽기)	2(A~C)급, 3(A~C)급		17.01.07~19.01.06	09.01.07~17.01.06
	FLEX 프랑스어(듣기/읽기)	(9개 등 <del>급</del> )	대한상공회의소		
	FLEX 영어(듣기/읽기)			16.09.21~18.09.20	09.09.21~16.09.20
	FLEX러시아어(듣기/읽기)			16.11.24~18.11.23	10.11.24~16.11.23
	상공회의소 한자	1, 2, 3급		15.11.24~18.11.23	07.11.14~12.11.13 12.11.24~15.11.23
	YBM商務漢檢	1, 2, 3급 (주)와이비엠시사		16.09.21~18.09.20	09.09.21~16.09.20
	한자어능력	1, 2, 3급	(사)한국정보관리협회	15.09.21~17.09.20	09.09.21~15.09.20
	브레인트레이너	1, 각 3급 (사)연곡영도된다합의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16.09.21 ~ 18.09.20	09.09.21~16.09.20
	실용수학	1, 2, 3급	(사)한국창의인성 교육연구원	15.11.17~17.11.16	11.11.17~15.11.16
법무부 (1)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사)한국포렌식학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12.12.17~17.12.16	-
행정	옥외광고사	2급	한국옥외광고협회	16.02.06~18.02.05	03.02.06~16.02.05
안전부	행정관리사	1, 2, 3급	(사)한국행정관리협회	15.02.01~18.01.31	04.02.01~15.01.31
(3)	정보시스템감리사	_	(사)한국정보화진흥원	16.02.17~21.02.16	03.02.17~16.02.16
	실천예절지도사	-	(사)범국민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	15.02.17~18.02.16	06.02.17~15.02.16
	종이접기	마스터	(사)한국종이접기협회	16.02.27~19.12.31	06.02.27~16.02.26
문화 체육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 2, 준2, 3, 준3급	(사)한국국어능력 평가협회	15.12.21 ~17.12.31	07.12.21~15.12.20
관광부	국어능력인증시험	1, 2, 3, 4, 5급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15.10.08~17.12.31	09.10.08~15.10.07
(6)	KBS한국어능력시험	1 2+ 2- 3+	17.01.23~19.01.22	09.01.23~17.01.22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2급	(사)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17.01.13~20.01.12	15.01.13~17.01.12
농림 축산 식품부 (1)	농어촌개발컨설턴트	-	한국농어촌공사	14.01.07~18.12.31	-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유효기간	기공인기간
	무역영어	1, 2, 3급	대한상공회의소	16.11.17~18.12.31	00.12.22~16.11.16
	샵마스터	3급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16.01.17~18.01.16	04.01.17~16.01.16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사)한국에너지 기술인협회	16.09.30~21.09.29	05.02.01 ~ 16.09.29
산업	CS Leaders(관리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16.01.07~18.01.06	09.01.07~16.01.06
통상 자원부	GTQ(그래픽기술자격)	1, 2급	한국생산성본부	15.09.30~17.12.31	09.09.30~15.09.29
(9)	빌딩경영관리사	-	(재)한국산업교육원	16.11.17~18.12.31	10.11.17~16.11.16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15.11.29~20.11.28	11.11.29~15.11.28
	SMAT(서비스경영자격)	1급, 2급, 3급	한국생산성본부	17.01.01~18.12.31	15.01.01 ~ 16.12.31
	산업보안관리사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17.01.01~18.12.31	-
보건	점역 교정사	1, 2, 3급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17.04.01.~22.03.31	02.04.01 ~ 17.03.31
보지부 (3)	병원행정사	-	(사)대한병원행정 관리자협회	17.02.01 ~22.01.31	02.02.01~17.01.31
	수화통역사	-	(사)한국농아인협회	16.02.20~21.02.19	06.02.20~16.02.19
고용	문서실무사	1, 2, 3, 4급	(사)한국정보관리협회	17.02.09~18.02.08	00.12.22~17.02.08
노동부 (2)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 1, 2급, 전산회계 1, 2급	한국세무사회	17.03.16~21.12.31	02.01.17~17.03.15
국토	자동차진단평가사	1~2급	(사)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	16.11.24~19.11.23	10.11.24~16.11.23
교통부 (3)	주거복지사	-	한국주거학회	16.01.01~18.12.31	-
	실내디자이너	_	한국실내건축가협회	17.01.01~19.12.31	-
관세청 (1)	원산지관리사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6.01.01 ~ 18.12.31	13.01.01 ~ 15.12.31
	열쇠관리사	1급, 2급	(사)한국열쇠협회	17.01.03~20.01.02	05.01.03~17.01.02
경찰청 (3)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도로교통공단	15.04.06~18.04.05	07.04.06~15.04.05
	신변보호사	-	(사)한국경비협회	16.01.01~20.12.31	13.01.01~15.12.31
	수목보호기술자격	기술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15.01.15~20.01.14	02.04.01~15.01.14
산림청 (3)	분재 관리 사	전문관리사, 1급, 2급	(사)한국분재조합	13.02.01 ~ 18.01.31	02.02.01 ~ 13.01.31
	조경수조성관리사	2~3급	(사)한국조경수협회	15.11.16~20.11.15	10.11.16~15.11.15
15개 부처청	99개 종목		61개 기관		



# 5. 국가직무능력표준

#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현황

### 1) 국가직무능력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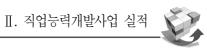
(2017년말 기준)

	'13년 개발	'14년 개발	'14년 보완개발	'15년 개발	'15년 개선	'16년 개발	'16년 개선	'16년 개선+ 능력단위 (중복3)	'17년 개발	'17년 개선	
--	------------	------------	--------------	------------	------------	------------	------------	------------------------------	------------	------------	--

				<b>′13년</b>	<b>'1</b> 4	년	<b>′1</b> 5	5년	′16	5년	'1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24개	<b>7</b> 87H	241개	948개	240	288	269	50	<b>7</b> 9	50	403	50	191
	1	2	5	0	0	0	5	0	0	1	0	2
			공적개발원조사업관리 (구. 공적자원개발)									
01. 사업관리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관리									
	사업관리		산학협력관리									
		기시키키	해외법인설립관리									
		해외관리	해외취업관리									
	4	11	27	11	6	8	2	7	0	11	0	4
		거서귀칭	경영기획									
		경영기획	경영평가									
		홍보·광고	기업홍보									
	기획사무	   옹모·성고	PR/광고									
		마케팅	마케팅전략기획									
			고객관리									
			통계조사									
			총무									
		총무	자산관리									
			비상기획									
02. 경영·회계 ·사무	총무·인사	인사·조직	인사									
		[ 현사 조석	노무관리									
		일반사무	비서									
		크 전시 T	사무행정									
		   재무	예산									
		<b>개</b> ㅜ 	자금									
	재무·회계	~3 n	회계·감사									
		회계	세무									
			구매조달									
	제치 포키키키	וו או או או	자재관리									
	생산·품질관리	생산산디	공정관리									
			S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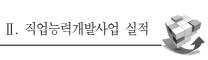
	<u>ス</u> 日己					'14년		년	'16년		<b>'17</b>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품질관리	QM/QC관리									
			물류관리 (구. 유통관리)									
		무역 · 유통관리	수출입관리									
		14 11054	원산지관리									
			유통관리									
	2	9	36	0	35	0	0	6	0	19	1	0
			창구사무									
			기업영업									
		금융영업	PB영업									
			카드영업									
			여신전문금융영업									
			여수신상품개발									
		- 4 3 - 3 - 3	투자상품개발									
		금융상품개발	연금상품개발									
			카드상품개발									
			개인신용분석									
		10011	기업신용분석									
	선용군식   	여신심사										
		(구. 교환어음처리)										
		2	펀드운용									
	금융		주식·채권운용 (구. 채권·증권운용)									
		자산운용	파생상품운용									
03. 금융·보험			대체투자									
05. 급평·모임			신탁자산관리									
			결제									
		금융영업지원	채권추심									
			리스크관리									
			증권거래업무									
			외환·파생업무									
			인수업무									
		증권·외환	증권상장업무 (구. 유가증권상장·등록 폐지업무)									
	( <u>(</u> <u>(</u> <u>1</u> 보험상품개발 <u>1</u>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구. 외자조달·외환대출업무)									
		무역금융업무										
		보험동향분석										
		보험상품개발										
		보험계리										
	보험		보험모집									
			(구. 보험청약)									
		보험영업·계약	보험계약심사 (구. 보험심사)									
			보험계약·보전									



				<b>13년</b>	<b>'1</b> 4		<b>′1</b> 5	i년	<b>'1</b> 0	5년	'1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위험관리									
			재물손해사정 (구. 화재·특정보험손해사정)									
		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 (구. 해상보험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 (구. 자동차보험손해사정)									
	2	3	8	0	6	2	0	0	0	8	0	0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									
	るるが正年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상담·교수									
04. 교육·자연			경력지도									
·사회과학		직업교육	기업교육									
	직업교육		직무분석									
	7 11 22 4		이러닝시스템개발									
		이러닝	이러닝콘텐츠개발									
			이러닝과정(process)운영									
	2	4	16	7	5	0	0	0	1	7	3	2
			지식재산관리 (구. 지식재산법무)									
	법률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평가·거래									
	日世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구. 지식재산정보분석)									
			특허엔지니어링									
			소방시설설계·감리									
			소방시설공사									
05. 법률·경찰· 소방·교도·국방			구조구급									
20 22 70		소방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운송·운반관리									
	소방방재		위험물안전관리									
			화재감식평가									
			방재시설									
		방재	기업재난관리									
			방재안전대책관리									
		스마트재난관리	스마트재난위험예측									
		_	스마트재난관리설계	_	_	_	_	_	_	_		_
	1	2	11	9	2	0	0	1	0	2	0	5
			의료기관리									
			요양지원									
06. 보건·의료	, , <del>, ,</del>	A) = -1 -2 -2 A)	의지보조기									
	보건	의료기술지원	청각관리									
			임상심리									
			의료정보관리 (구.의무기록)									



				<i>'</i> 13년	년 선 발 개발 보인 개발		<b>1</b> 5	5년	′16	5년	<b>′</b> 17	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병원행정									
			병원안내									
		보건지원	보건교육									
			의료시설위생관리									
			지역사회위생관리									
	3	6	17	5	5	3	3	0	0	6	1	5
			지역사회복지개발 (구. 사회복지개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조직운영 (구. 사회복지기관운영)									
			공공복지 (구.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프로그램운영 (구.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									
		기취범기기미 2	일상생활기능지원 (구. 사회복지기관운영)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면담 (구. 사회복지상담)									
07. 사회복지 ·종교			사회복지사례관리 (구. 사례관리)									
			직업상담									
		직업상담서비스	취업알선									
		1800110	전직지원 (구. 퇴직지원)									
	상담		청소년활동 (구. 청소년지도)									
		청소년지도	청소년상담복지									
			진로지원									
		심리상담	심리상담									
			보육									
	보육	보육	산후육아지원									
			아이돌봄									
	3	9	59	20	22	2	10	9	2	25	3	13
			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경영									
			문헌정보관리									
		실용예술	실용음악									
08. 문화·예술			실용사진									
·디자인·방송	문화·예술		무대연출									
			무대조명									
			무대기계									
		공연예술	무대음향									
			무대미술									
			무대감독									
			무대기술감독									



				(1013	<b>'1</b> 4	[년	15	5년	′16	5년	′1′	7년
대분류 -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무대장치・소품									
			무대의상									
			무대영상									
			하우스매니징									
			학예									
		문화재관리	문화재보수									
			문화재보존									_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실내디자인									
			색채디자인									
			전시디자인									
			3D프린팅디자인									
			패키지디자인									
			VR콘텐츠디자인									
		문화콘텐츠기획	문화콘텐츠기획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츠제작									
			음악콘텐츠제작									
			광고콘텐츠제작									
			게임콘텐츠제작									
		문화콘텐츠제작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캐릭터제작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영사									
	문화콘텐츠		방송콘텐츠유통·서비스									
			영화콘텐츠유통·서비스									
			음악콘텐츠유통·서비스									
			광고콘텐츠유통·서비스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게임콘텐츠유통·서비스									
		문화콘텐츠 유통서비스	애니메이션콘텐츠 유통·서비스									
			만화콘텐츠유통·서비스									
			캐릭터유통·서비스									
			스마트문화앱콘텐츠 유통·서비스									



				(1013	<b>'14</b>		<b>′1</b> 5	5년	′16	5년	<b>'17</b>	′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영상연출									
			영상촬영									
			영상조명									
		영상제작	영상음향제작									
			영상그래픽									
			영상편집									
			영상미술									
	4	7	30	8	16	0	2	0	4	14	0	2
			여객운송									
	자동차운전· 운송	자동차운전·운송	화물운송									
	L 0		수송포장									
			철도관제									
		3 F 0 7 0 M	열차운용DIA									
		철도운전운영	철도운전									
			기지내차량운전									
	철도운전·운송		철도선로시설물유지보수									
		7-11	정비기지시설물유지보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역시설물유지보수									
		,,,,,,,,,,,,,,,,,,,,,,,,,,,,,,,,,,,,,,,	철도정보통신시설물 유지보수									
			항해									
			선박기관운전									
			선박통신									
09. 운전·운송		선박운항	수면비행선박조종									
07. 22.20	선박운전·운송		수상레저기구조종									
			해상관제									
			선박갑판관리									
			검수·검정									
		검수·검량	(구. 감정·검량·검수)									
			경량항공기조종									
			자가용항공기조종									
		항공기조종운송	 사업용항공기조종									
			소형무인기운용·조종									
	항공운전·운송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항공안전									
		항공운항	항공보안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항공화물운송서비스									
	3	8	18	1	16	0	0	0	1	9	0	2
10. 영업판매			일반영업									
	영업	일반·해외영업	해외영업									
			" 1 0 11									ш



				(40) d	<b>'1</b> 4	년	<b>'1</b> 5	i년	′16	5년	′17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									
			부동산경·공매									
			주택관리									
		부동산관리	상업용건물관리									
	부동산		부동산자산관리 (구.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									
		구중산중계	부동산정보제공									
			부동산·동산감정평가									
		감정평가	기업가치평가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e-비지니스	통신판매									
		E-11/14/2	전자상거래									
	판매	일반판매	매장판매									
		크인인 M	방문판매									
		상품중개·경매	농축수산물경매									
	2	3	6	0	4	0	2	0	0	4	0	0
	건비	거비 거호	보안 (구. 경비)									
11. 경비·청소	경비	경비·경호	경호 (구. 신변보호)									
11. % 미 % 조		-1 ,	환경미화									
	-1 \ .11-1	청소	가사지원									
	청소·세탁	ا ا ا	세탁									
		세탁	수선									
	4	12	42	17	21	4	0	3	0	32	0	8
			헤어미용									
			피부미용									
	이·미용	이·미용서비스	메이크업									
			네일미용									
			이용									
			결혼상담									
12. 이용·숙박· 여행·오락	결혼·장례	결혼서비스	결혼예식장관리 (구.결혼식장관리)									
·스포츠	교단 6세		웨딩이벤트									
			장례지원									
		장례서비스	장례지도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관광·레저	여행서비스	국내여행안내									
		, , , , ,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									
			007277									<u>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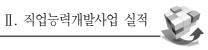
				'13년	<b>'1</b> 4	[년	<b>'1</b> 5	년	'16	5년	<b>′17</b>	'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숙박서비스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회의기획									
		컨벤션	전시기획									
			이벤트기획									
			카지노기획개발									
		관광레저서비스	카지노운영관리									
		[ 현장에서시티드	크루즈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스포츠용품	스포츠용품제작									
		스포츠시설	스포츠시설개발									
			스포츠시설운영관리									
			선수스포츠지도									
			일반인스포츠지도									
		스포츠경기·지도	건강운동관리									
		  스포스경기·시도	경기기록분석									
			경기심판									
	스포츠		경기지원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라이선싱 (구. 스포츠라이센싱)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에이전트 (구.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정보관리 (구. 스포츠정보)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지도 (구. 레크레이션지도)									
	1	3	10	3	0	5	1	3	1	8	0	1
			한식조리 (구. 한식·복어조리)									
		0 21 -7 -71	양식조리									
		음식조리	중식조리									
12 으시셔비스	110 = ==1		일식·복어조리 (구. 일식조리)									
13. 음식서비스	식음료조리· 서비스		식음료접객									
			소믈리에									
		식음료서비스	바리스타									
			바텐더									
			식공간연출									
		외식경영	외식운영관리									
44 2) 2)	8	26	117	25	23	54	7	4	4	28	4	14
14. 건설	건설공사관리	건설시공전관리	설계기획관리									



	중분류 소 <del>분류</del> 세분류		(1013	<b>'1</b> 4		<b>'1</b> !	5년	′16	5년	′17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건설공사공정관리									
		건설시공관리	건설공사품질관리									
		신설시중한다	건설공사환경관리									
			건설공사공무관리									
		건설시공후관리	유지관리									
			도로설계									
			공항설계									
			터널설계									
			교량설계									
			항만(해양)설계									
		토목설계·감리	상하수도설계									
			하천(댐)설계									
			지반설계									
			단지설계									
			철도설계									
			토목건설사업관리 (구. 토목감리)									
			토공									
	E D		지반개량									
	토목		포장									
			수중구조물시공									
			삭도시공									
		토목시공	궤도시공									
			상하수도시공									
			보링그라우팅									
			철강재시공									
			준설									
			석축									
			지적									
			측량									
		측량 지리정보개빌	공간정보구축									
			공간정보융합서비스 (구.공간정보융합기술개발)									
			건축설계									
			건축구조설계									
		건축설계·감리	건축공사감리 (구.건축감리)									
			실내건축설계									
	건축		건축목공시공									
	12.7		조적미장시공									
			방수시공									
		건축시공	타일석공시공									
			건축도장시공									
			철근콘크리트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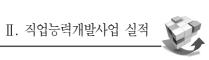
				(1013	<b>'1</b> 4	!년	<b>′1</b> 5	5년	′16	5년	<b>′1</b> 7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창호시공									
			가설시공									
			수장시공									
			단열시공									
			지붕시공									
			구조물해체									
			강구조시공									
			경량철골시공									
			건설공사판넬시공									
			건축설비설계									
			건축설비시공									
		건축설비설계·시공	건축설비감리									
			건축설비유지관리									
			배관시공									
			발전설비설계									
			석유·화학설비설계									
		프레드 서레기리	에너지설비설계									
		플랜트설계감리 (구. 산업·환경설비	제조공장설비설계									
		설계·감리)	환경설비설계									
	플랜트		플랜트설비감리 (구. 산업·환경설비감리)									
	(구. 신업환경설비)		해수담수화플랜트설비설계									
			플랜트기계설비시공 (구. 산업·환경기계설비시공)									
		플랜트시공 (구. 산업·환경 설비시공)	플랜트전기설비시공 (구. 산업·환경전기설비시공)									
		[ 2 11 10)	플랜트계측설비시공 (구. 산업·환경전기설비시공)									
		플랜트사업관리	플랜트사업관리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	조경	조경관리									
			조경사업관리 (구.조경감리)									
			국토·지역계획									
			도시계획									
		그는 트시케칭	도시설계									
		국토·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교통		도시개발									
			도시경관									
			교통계획									
		교통계획·설계	교통설계									
			교통운영·감리									
	건설기계 운전 · 정비	토공기계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				



				/101J	<b>'1</b> 4	1년	15	5년	′16	5년	′17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아스팔트피니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로더운전									
			굴삭기운전									
			준설선운전									
		기초공건설	락드릴항타항발기운전									
		기계운전	지열시추기운전									
		콘크리트 공기계운전	콘크리트공기계운전									
		적재기계운전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구. 이동식크레인조종)									
			양화장치운전 (구. 선박크레인조종)									
		양중기계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구. 타워크레인조종)									
			천장크레인운전 (구. 천장크레인조종)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구. 컨테이너크레인조종)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해양관측									
		해양환경조사	해양측량									
		에 6 단 6 도 기	해양생태환경조사 (구.해양조사)									
			해양환경보전·복원									
		해양환경관리	해양환경영향 평가									
			해양오염관리·방재									
			원유시추설비설치 · 운용 (구. 원유시추생산설비설치·운용)									
			원유생산설비설치·운용 (구. 일반해양구조물설치·운용)									
			해양터미널구조물설치									
	해양자원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프로세스설계									
		설치·운용	해양플랜트시운전설계									
			해양플랜트안전설계									
			해양플랜트종합설계									
			해양플랜트구조설계									
			해양플랜트기계설계									
			해양자원탐사									
		해양자원 개발·관리	해양자원개발									
		/개년 전니	해양자원관리									
		7) 5	일반잠수									
		잠수	산업잠수									



				13년	<b>'1</b> 4	1년	<b>'1</b> 5	5년	′16	5년	′17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10	31	128	17	29	67	2	16	10	38	3	19
			기계설계기획									
		보 레 리 취	기계개발기획									
		설계기획	기계조달									
	그리 그리 사 그리		기계마케팅									
	기계설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설계	기계시스템설계									
		[기계결계 	구조해석설계									
			기계제어설계									
			선반가공									
			밀링가공									
		절삭가공	연삭가공									
		27/10	CAM									
	기계가공 기계가공		측정									
	7 1711/10		성형가공									
			방전가공									
		특수가공	레이저가공									
		7 1/10	워터젯가공									
			플라즈마가공									
			기계수동조립									
		기계조립	기계소프트웨어개발									
15. 기계		/   /   1   1	기계하드웨어개발									
			기계펌웨어개발									
	기계조립·관리		기계생산관리계획									
			기계자재관리									
		기계생산관리	기계공정관리									
			기계생산성관리									
			기계작업감독									
			기계품질계획									
	기계품질관리	기계품질관리	기계품질관리									
			기계품질평가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건설광산기계설치·정비									
		기계장비설치.	섬유기계설치·정비									
		정비 정비	공작기계설치·정비									
			고무프라스틱기계설치·정비									
	기계장치설치		농업용기계설치·정비									
	1211 0 : 1 = 21		승강기설치·정비									
			냉동공조설계									
			냉동공조설치									
		냉동공조설비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보일러설치·정비									
			보일러운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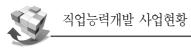
				/101 d	<b>'1</b> 4	1년	15	5년	′16	5년	′1′	7년
대 <del>분류</del>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이륜차정비	오토바이정비									
		1571 0.11	자전거정비									
			자동차설계									
		자동차설계	자동차시험·평가									
			자동차공정설계									
		   자동차제작	자동차조립									
		. 10.1 11	자동차성능검사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기도키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 (구자동차제조)	   자돗차젓비	자동차섀시정비									
	,	7 1 0 7 1 0 1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도장									
			자동차정비검사									
		   자동차정비관리	자동차정비경영관리									
		사중시장비한다	자동차정비현장관리									
		자동차관리	자동차영업									
		사동사단니	자동차튜닝									
		7)) -) .) n	철도차량설계									
		철도차량설계· 제작	철도차량제작									
		'	철도차량시운전									
	키 ㅡ 리 라 레 키		고속차량유지보수									
	철도차량제작		디젤차량유지보수									
		철도차량유지보수	전기차량유지보수									
			객화차량유지보수									
			특수차량유지보수									
			선박기본설계									
			선체설계									
			선박배관설계									
		선박설계	철의장설계									
			기장설계									
			전장설계									
			선실설계									
			선체가공									
			선체조립									
	조선		선박도장									
		선체건조	(구. 선체도장)									
			심출(철목)									
			조선비계(족장, 발판, scaffolding) (구. 족장)									
			기장생산									
		선박의장생산	전장생산									
		(구. 선체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박품질관리	선체품질관리	L						L	L	



		/101 d	<b>'1</b> 4	[년	<b>'1</b> !	5년	′16	5년	<b>17</b>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의장품질관리									
			도장품질관리									
			선박생산계획									
		선박생산관리	선체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기장시운전									
		시운전	선장시운전									
			전장시운전									
			선체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정비	선박배관정비									
			전장정비									
			의장정비									
			항공기기체설계									
			항공기엔진·프로펠러설계									
		항공기설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항공기기체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구. 항공기가스터빈기관정비)									
	항공기제작		항공기왕복엔진정비 (구. 항공기왕복기관정비)									
		취 구기기기기	항공기프로펠러정비									
		항공기정비	항공기계통정비 (구. 항공기기계부품·장비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헬리콥터정비 (구. 헬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구관리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	사출금형제작									
		│ <u> </u>	사출금형품질관리									
	그처		사출금형조립									
	금형		프레스금형설계									
		교계 시그처	프레스금형제작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조립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b>′1</b> 5	5년	′16	5년	<b>'17</b>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다이캐스팅금형설계									
		다이캐스팅금형 다이캐스팅금형	다이캐스팅금형제작									
		다이게스팅ᆸ팅 	다이캐스팅금형조립									
			다이캐스팅금형품질관리									
	2	7	36	2	10	22	0	1	1	23	1	4
			재료설계									
		금속엔지니어링	재료시험									
			재료조직평가									
			제선									
			제강									
			열간압연									
		- 1 1 - 1 -	냉간압연									
		금속재료제조	비철금속건식제련 (구. 건식비철금속제련)									
			비철금속습식제련 (구. 습식비철금속제련)									
			금속재료제조설비정비									
			주조									
			단조·압출·인발									
	금속재료		열처리									
			선재가공									
		금속가공	판금제관 (구. 판금)									
16. 재료			강관제조 (구. 제·조관)									
10. 小豆			분말야금									
		표면처리	도금									
		표현사니	금속도장									
			피복아크용접									
			CO2용접									
		Q 74	가스텅스텐아크용접 (구. 티그용접)									
		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구. 미그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로봇용접									
			전기전자재료제조 (구. 전기재료제조)									
			광학재료제조									
		파인세라믹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구. 내열재료제조)									
	요업재료		생체세라믹제료제조 (구. 생체재료제조)									
			유리·법랑제조									
		전통세라믹제조	내화물제조									
			연삭재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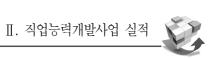
대부류			/1312	'13년	'14년		'15년		'16년		′17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도자기제조									
			시멘트제조									
			탄소제품제조									
			축로									
	4	12	38	22	8	1	1	0	2	21	4	11
			화학물질분석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검사·평가									
			화학물질취급관리									
			화학공정설계									
	화학물질	화학공정관리	화학반응공정개발운전									
	·화학공정관리		화학공정유지운영									
			화학제품연구개발									
		화학제품연구개발	화학신소재개발									
			화학제품기술사업화관리 (구. 화학제품시제품개발)									
		석유·천연가스 제조	석유제품제조									
		기초유기화학물 제조	석유화학제품제조									
			합성수지제조									
	석유ㆍ기초		합섬원료제조 (구.합성원료제조)									
	화학물제조		합성고무제조									
			고분자복합재료제조									
			기능성고분자제조									
17. 화학		기초무기화학물 제조	무기질비료제조									
			산·알카리제조									
		생리활성화 제품제조	의약품제조									
			농약제조									
			화장품제조									
			계면활성제제조									
			첨가제제조									
		기능성정밀화학 제품제조	색소(염·안료)제조									
	정밀화학	게 곱세고	도료제조									
	제품제조		접착제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약품개발									
		의약품제조	바이오진단제품 개발·서비스									
			범용바이오화학소재제조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바이오플라스틱제조									
		커크게곱세요	특수바이오화학제품제조									
			압출성형									
	플라스틱·고무 제품제조	플라스틱 제품제조	코팅성형									
	게 휴 세 조	세월세요	중공·진공성형									



대부류	243		A	<i>'</i> 13년	'14년		15년		'16년		<b>'17</b>	/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컴파운딩									
			사출성형									
		고무제품제조	고무배합									
	2	7	고무제품제조 <b>24</b>	8	0	14	1	5	1	16	0	3
		,	방사				-		-	10	·	
			방적									
		섬유생산	제직									
		21102	<u>"</u> ' 편직									
	섬유제조 섬유제조		부직포									
			사가공									
		섬유가공	염색가공									
		섬유생산관리	구매생산관리									
			생산현장관리									
		패션제품기획	패션기획									
			패션디자인									
18 섬유·의복			패턴									
10 11 914			비주얼머천다이징									
		패션제품생산	제직의류생산									
	패션		편직의류생산									
			가죽·모피생산									
			패션소품생산									
			한복생산									
		패션제품유통	의류유통관리									
			가죽·모피유통관리									
			신발유통관리									
			패션소품유통관리									
			세선도품 # 중된다 신발생산									
		신발개발 · 생산	신발개발									
	3	28	선물개월 93	14	25	24	9	17	12	34	9	23
	3	20	수력발전설비설계	14	25	24	9	1/	12	34	9	23
		발전설비설계	화력발전설비설계									
			원자력발전설비설계									
19. 전기·전자	2] 2]		수력발전설비운영									
	전기		화력발전설비운영									
		발전설비운영	원자력발전설비운영									
			원자력발전전기설비정비 (구. 원자력발전설비전기유지보수)									



		소분류	세분류	<b>13년</b>	<b>'1</b> 4	년	<b>'</b> 15	5년	'16년		'17년		
대분류	중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원자력발전기계설비정비 (구. 원자력발전설비 기계유지보수)										
			원자력발전계측제어설비정비 (구. 원자력발전설비 계측제어장비)										
			송변전배전설비설계 (구. 송배전변전설비설계)										
			송변전배전설비운영 (구. 송배전변전설비운용)										
		송배전 설비	송변전배전설비공사감리 (구. 전기설비공사감리)										
			직류송배전 전력변환설비제작										
			직류송배전제어·보호시스템 설비제작										
			직류송배전시험평가										
		지능형	지능형전력망설비										
		전력망설비	지능형전력망설비소프트웨어 (구. 지능형전략망설비소프트웨어)										
			전기기기설계										
		전기기기제작	전기기기제작										
			전기기기유지보수										
			전기전선제조										
		지기서비	전기설비설계										
		전기설비 설계·감리		전기설비감리									
			전기설비운영										
			내선공사										
		전기공사	외선공사										
			변전설비공사										
			자동제어시스템설계 (구. 자동제어기기설계)										
			자동제어기기제작										
		전기자동제어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 (구. 자동제어기기유지보수)										
			자동제어시스템운영 (구. 자동제어장치제어운영)										
			전기철도설계·감리										
		전기철도	전기철도시공										
			전기철도시설물유지보수										
			철도신호제어설계·감리										
		철도신호제어	철도신호제어시공										
		로그 단조계기	철도신호제어시설물 유지보수										
		초임계CO2발전	초임계CO2발전열원 설계·제작										
		그 6/11002 현산	초임계CO2열교환기 설계·제작										



				'13년	<b>'1</b> 4	'14년 ㅂ 와		5년	'16년		<b>'17</b>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초임계CO <sub>2</sub> 회전기기 설계·제작									
			전기저장장치개발									
		전기저장장치	전기저장장치설치									
		전자제품개발	전자제품기획									
		기획·생산	전자제품생산									
	키 키 키 키 이 네	전자부품	전자부품기획									
	전자기기일반	기획·생산	전자부품생산									
		전자제품	전자제품설치·정비									
		고객지원	전자제품영업									
			가전기기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가전기기 개발	가전기기응용 소프트웨어개발									
			가전기기하드웨어개발									
			가전기기기구개발									
			산업용전자기기 하드웨어개발									
		산업용 산업용전자기기 기구개발 산업용전자기기 소프트웨어개발										
			산업용전자기기 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기기개빌	정보통신기기 하드웨어개발									
			정보통신기기 기구개발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개발									
	전자기기개발		전자응용기기 하드웨어개발									
			전자응용기기기구개발									
			전자응용기기 소프트웨어개발									
			전자부품하드웨어개발									
		전자부품개발	전자부품기구개발									
			전자부품소프트웨어개발									
			반도체개발									
		반도체개발	반도체제조 (구. 반도체생산)									
			반도체장비									
			반도체재료									
			디스플레이개발									
		디스플레이개발	디스플레이생산									
			디스플레이장비부품개발									
		그님게바	로봇하드웨어설계									
		로봇개발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노굿소=트웨역개발									



		소분류	세분류	<i>'</i> 13년	<b>'1</b> 4	1년	<b>'1</b> 5	i년	<b>'1</b> 6	5년	'17년	
대분류	중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로봇지능개발									
			로봇유지보수									
			의료기기품질관리									
		의료장비제조	의료기기인·허가									
			의료기기생산									
			의료기기연구개발									
			광부품개발									
		-1 -1 & -1 vi	레이저개발									
		광기술개발	LED기술개발									
			광학시스템제조 (구. 광학기기제조)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용 제품제작 (구. 3D프린터용 모델링·제작)									
			가상훈련시스템 설계·검증									
		가상훈련	가상훈련구동엔지니어링									
		시스템개발	가상훈련콘텐츠개발									
			실감형콘텐츠하드웨어 (디바이스)개발									
			착용형스마트기기설계 (구. 착용형스마트기기 기획·설계)									
		착용형스마트기기	착용형스마트기기서비스 (구. 착용형스마트기기 고객서비스·인증)									
			착용형스마트기기개발 (구. 착용형스마트기기 개발·엔지니어링)									
	3	13	76	25	4	27	2	4	6	28	12	27
			정보기술전략									
			정보기술컨설팅 (구. 비지니스IT컨설팅)									
			정보기술기획 (구. 비니지스IT기획)									
		정보기술	SW제품기획									
		전략·계획	빅데이터 분석 (구. 빅데이터기획·분석)									
20. 정보통신	지니키스		IoT융합서비스기획									
	정보기술		빅데이터기획									
			SW아키텍처									
			응용SW엔지니어링									
		정보기술개발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구. 시스템엔지니어링)									
			DB엔지니어링									
			NW엔지니어링									<del>                                     </del>



				(12) 3	<b>'1</b> 4	[년	<b>'1</b> 5	5년	'16년		'1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보안엔지니어링									
			UI/UX엔지니어링									
			시스템SW엔지니어링									
			빅데이터플랫폼구축 (구. 빅데이터플랫폼개발)									
			핀테크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정보기술운영	IT기술교육									
			IT기술지원									
			빅데이터운영·관리									
			IT프로젝트관리									
		정보기술관리	IT품질보증									
		/ 정보기절한다	IT테스트									
			IT감리									
		정보기술영업	IT기술영업									
		(8·포기 현 6 日	IT마케팅									
			정보보호관리·운영									
			정보보호진단·분석									
		7) 1) 1) =	보안사고분석대응									
		정보보호	정보보호암호·인증 (구. 정보보호암호인증)									
			지능형영상정보처리 (구. 지능형영상정보처리기기)									
		유선통신구축	교환시스템구축									
			구내통신구축									
			네트워크구축									
			구내통신설비공사									
			실감형플랫폼구축									
			무선통신시스템구축									
			전송시스템구축									
		무선통신구축	무선통신망구축									
			위성통신망구축									
			IoT통신망구축									
	통신기술		유선설비접속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부가네트워크서비스									
			전신서비스									
		통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콘텐츠사용자서비스									
			콘텐츠네트워크서비스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									
			무선호출메시징서비스									



		소분류	/101.1	(1013	'14년		'15년		16년		<b>′1</b> 7	′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위성통신서비스									
			특수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지원서비스									
			부가통신응용중계서비스									
			특수부가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디지털비즈니스지원서비스									
			실감형통신서비스									
		실감형콘텐츠제작	가상현실콘텐츠제작									
		208000	실감콘텐츠촬영									
		방송제작기술	중계방송 (구. 방송중계)									
		00 11 12	방송품질관리									
			라디오방송									
			지상파TV방송									
	방송기술	방송플랫폼기술	지상파DMB									
			케이블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유무선통합서비스									
			방송시스템운영									
		방송서비스	정보시스템운영									
			방송기술지원서비스									
			방송장비설치유지보수									
	2	4	21	14	4	2	0	0	0	11	1	6
		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두류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유제품가공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김치·반찬가공									
			면류식품가공									
			곡류·서류·견과류가공 (구. 곡물가공)									
21. 식품가공	식품가공		음료주류가공									
			식품가공연구개발									
			식품품질관리									
			수산식품저장									
		식품저장	농산식품저장									
			축산식품저장									
			수산식품유통									
		식품유통	농산식품유통									
			축산식품유통									
	제과·제빵·떡	제과.제빠.떠지고	제과									
	제조	제과·제빵·떡제조	제빵									



			134	'13년	4 '14년		'15년		'16년		<b>'1</b> 7	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떡제조									
			한과제조									
	2	4	25	0	4	19	0	1	1	19	1	2
			출판기획									
		출판	편집디자인									
			편집									
			제작·공정관리									
	인쇄·출판		프리프레스									
			평판인쇄									
		인쇄	특수인쇄									
			후가공									
			간판디자인·제작·설치									
			칠공예									
			도자공예 (구. 도자기공예)									
			석공예									
22. 인쇄·목재		공예	목공예									
·가구·공예			금속공예									
			가구제작									
			(구. 수가구제작)									
			섬유공예									
	공예		나전칠기									
			단위화훼장식 (구. 화훼장식공예)									
			공간화훼장식									
			귀금속가공									
			귀금속품위감정									
			보석가공									
		귀금속·보석	보석감정									
			보석디자인									
			주얼리마케팅									
			(구. 보석판매)									
	6	18	54	10	33	5	1	2	3	20	2	14
			수질오염분석									
		스 키 키 ㅋl	수질공정관리									
		수질관리	수질환경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									
23. 환경·에너지 ·안전			대기환경관리									
	산업환경		온실가스관리									
		대기관리	기상기술관리									
			(구. 기상관측관리)								<u> </u>	
			기후변화적응								<u> </u>	
		폐기물관리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 (구. 폐기물처리)									



				(1013	<b>'1</b> 4	'14년		15년 '16년		'17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폐기물관리									
		소음진동관리	소음진동관리									
		2000	소음진동측정·분석평가									
		토양관리	지하수관리									
		- 0 2 1	토양관리									
	중 기 1 기	왕 및 U 기 기 기	산업환경보건 (구. 산업환경관리)									
	환경보건	환경보건관리	실내공기질관리									
			위해성관리									
	자연환경	생태복원·관리	생태복원									
	7 11178	78 네 득 현 1인 너	생태관리									
			환경컨설팅									
		환경경영	환경시설운영									
	환경서비스		환경관리									
		환경평가 <b>혼</b> (-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분석 (구. 환경분석)									
			광산지질조사									
		-	지구물리·화학탐사									
		광산조사·탐사	석유시추 (구. 시추·광산평가)									
			광물시추									
			광물자원개발·생산									
		광물·석유자원 개발·생산	석유자원개발·생산									
		기열~~~건	자원관리 자원관리									
		기 시청 거기 기	광해조사									
		광산환경관리	광해복원									
		-2 -2 -2 -2	광산보안관리									
	에너지·자원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태양광에너지생산 (구. 태양에너지생산)									
			대양열에너지생산 (구. 수소에너지생산)									
			연료전지에너지생산									
		   신재생에너지생신										
			해양에너지생산									
			풍력에너지생산									
			폐자원에너지생산									
			지열에너지생산·활용									
		  에너지관리	에너지절약서비스									
		4 1 1 6 9	기계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산업안전	산업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화공안전관리									



				<b>13년</b>	<b>'1</b> 4	년	'15년		'16년		<b>'17</b>	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가스안전관리									
			방사선측정평가									
			원자력발전소해체방사성폐기								1	
			물관리 (구. 방사성폐기물해체)								1	
		2422	산업보건관리									
		산업보건관리	근로자작업환경관리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4	12	50	22	10	10	2	0	1	19	5	13
			수도작재배									
			전작재배 (구. 전특작재배)									
			채소재배									
			과수재배									
		작물재배	화훼재배									
			버섯재배									
			특용작물재배 (구. 특작재배)									
			시설원예									
	농업		유기재배 (구. 유기농업)									
			종자계획									
		7.3.01.0.6.5	육종									
		종자생산·유통	종자생산									
			종자유통보급									
		농촌개발	농촌체험상품개발									
04 1.714161			농촌체험시설운영									
24. 농림어업			농업환경개선									
			농산물품질관리									
			사료생산									
			종축									
			동물용의약품제조 (구.동물약품제조)									
		축산자원개발	수의서비스									
			수의보조									
			애완동물미용									
	축산		말이용									
			젖소사육									
			돼지사육									
		사육관리	가금사육									
		11박단년 	한우사육									
			말사육									
			곤충사육									
	임업	산림자원조성	임업종묘									
	급 급	한 남작전소성	산림조성									



				лы = '13년 -		[년	<b>′1</b> 5	년	′16	년	<b>'1</b> 7	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발	개발	보완 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산림관리	산림개발									
		[신답한다	산림보호									
			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가공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구. 펄프제조)									
		어엉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내수면어업									
			해면양식									
		양식	수산종묘생산									
	수산		내수면양식									
	1 6	2	수산자원조성 (구.어업자원관리)									
		수산자원관리	수산질병관리									
	Ç	염생산										
			어촌체험상품개발									
		어촌개발	어촌체험시설운영									
			어업환경개선									

## 2) 직업기초능력

개발영역		하위영역
/기르징딕 	34	명칭
의사소통능력	5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수리능력	4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2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3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4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5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정보능력	2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3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4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2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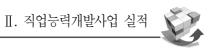
## 나. 직업훈련기준 현황('18.1.1. 시행)

## 1) 훈련 직종(총 897개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24개	80개	242개	897개	
	1	2	5	
			공적개발원조사업관리	
사업관리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관리	
1 1 1 1 1 1 1	사업관리		산학협력관리	
		해외관리	해외법인설립관리	
		에이만디	해외취업관리	
	4	11	27	
		경영기획	경영기획	
		70 0/19	경영평가	
		홍보·광고	기업홍보	
	기획사무	82 82	PR/광고	
			마케팅전략기획	
		마케팅	고객관리	
			통계조사	
			총무	
		총무	자산관리	
			비상기획	
	총무・인사	인사・조직	인사	
		인사・소식	노무관리	
거선 취계 기묘		이비기묘	비서	
경영·회계·사무		일반사무	사무행정	조정
		-ı) □	예산	
	재무·회계	재무	자금	
		호] 기	회계・감사	
		회계	세무	
		생산관리	구매조달	
			자재관리	
			공정관리	
			SCM	
	생산·품질관 리	품질관리	QM/QC관리	
	4		물류관리	
		무역 · 유통관리	수출입관리	
		नेव किस्मिन	원산지관리	
			유통관리	
	2	9	35	
			창구사무	
		금융영업	기업영업	
		च है । व	PB영업	
			카드영업	
			여수신상품개발	
금융·보험		금융상품개발	투자상품개발	
		급 6 2 도개발	연금상품개발	
	금융		카드상품개발	
			개인신용분석	
		신용분석	기업신용분석	
			여신심사	
			펀드운용	
		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	
		ਾਹਦਨ		
			파생상품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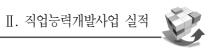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대체투자	
			신탁자산관리	
			결제	
		금융영업지원	채권추심	
			리스크관리	
			증권거래업무	
			외환 · 파생업무	
			인수업무	
		증권 · 외환	증권상장업무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무역금융업무	
			구역급등업구 보험동향분석	
		고 된 기 표 제 HJ.		
		보험상품개발	보험상품개발	
			보험계리	
			보험모집	
	보험	보험영업·계약	보험계약심사	
	_		보험계약·보전	
			위험관리	
			재물손해사정	
		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	
	2	3	8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기획·개발·평가	조정
	8824	9.0TH 4.7 0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상담·교수	조정
-0-14-15	직업교육		경력지도	
교육·자연·사회 과학		직업교육	기업교육	
77			직무분석	
			이러닝시스템개발	
		이러닝	이러닝콘텐츠개발	
		. , ,	이러닝과정(process)운영	
	2	3	13	
			지식재산관리	
	_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평가·거래	
	법률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특허엔지니어링	추가
			소방시설설계·감리	171
비르 거친 샤비			소방시설공사	
법률·경찰·소방· 교도·국방			구조구급	
322   0		소방	소방안전관리	
	소방방재		의 성당인 선택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위험물안전관리	
		ചിചി	방재시설	
		방재	기업재난관리	
		2	방재안전대책관리	
	1	2	11	
			의료기관리	
			요양지원	
		이근키스키이	의지보조기	
		의료기술지원	청각관리	
보건·의료	ᇦ거		임상심리	
立行 一年	보건			
			의로정보과리 !	
	<u> </u>		의료정보관리	
			병원행정	
	<i></i>	보건지원	· · · · · ·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의료시설위생관리	조정
			지역사회위생관리	
	3	6	16	
			지역사회복지개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기관운영	조정
			공공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프로그램운영	
		사회복지서비스	일상생활기능지원	
			사회복지면담	
			사회복지사례관리	
사회복지·종교		7141 11-11 11-11	직업상담	조정
		직업상담서비스	취업알선	
	וויי		전직지원	
	상담	=1 , , 1 =1 =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	청소년상담복지	
		11 -1 11 -1	진로지원	
		심리상담	<u>심리상담</u> 보육	
	보육	보육		
	3	9	<u> </u>	
	3	9	 문화·예술기획	
		-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경영	
		_	 문헌정보관리	
			실용음악	
		실용예술	실용사진	
			무대연출	
			무대조명	
			무대기계	
			무대음향	
	문화·예술		무대미술	
		공연예술	무대감독	
			무대기술감독	
			무대장치・소품	
			무대의상	
			무대영상	
문화·예술·디자			하우스매니징	
인·방송			학예	
		문화재관리	문화재보수	
			문화재보존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조정
			디지털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실내디자인	조정
			색채디자인	٠,
		D20222	전시디자인	추가
		문화콘텐츠기획	문화콘텐츠기획	추가
			방송콘텐츠제작	
	문화콘텐츠		영화콘텐츠제작	
	E-1 L E-	문화콘텐츠제작	음악콘텐츠제작	
			광고콘텐츠제작	
	ı		게임콘텐츠제작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만화콘텐츠제작	
			캐릭터제작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영사	
			방송콘텐츠유통ㆍ서비스	
			영화콘텐츠유통·서비스	
			음악콘텐츠유통ㆍ서비스	
			광고콘텐츠유통ㆍ서비스	
		문화콘텐츠유통・	게임콘텐츠유통ㆍ서비스	
		서비스	애니메이션콘텐츠유통ㆍ서비스	
			만화콘텐츠유통ㆍ서비스	
			캐릭터유통ㆍ서비스	
			스마트문화앱콘텐츠유통ㆍ서비스	
			영상연출	조정
			영상촬영	조경 조정
			영상조명	22.8
		영상제작	영상음향제작	
		g 경세약 	영상음양세작 영상그래픽	
			= = , ,	
			영상편집	
		-	영상미술	
	4	7	30	
	자동차운전·운	-1 -1 0 -1 0 &	여객운송	
	***	자동차운전·운송	화물운송	<b>3</b> .3
			수송포장	추가
			철도관제	
		철도운전운영	열차운용DIA	
			철도운전	
	철도		기지내차량운전	
	운전·운송		철도선로시설물유지보수	
		철도시설유지보수	정비기지시설물유지보수	
		[ [ [ [ [ [ [ [ [ [ [ [ [ [ [ [ [ [ [ [	역시설물유지보수	
			철도정보통신시설물유지보수	
			항해	
			선박기관운전	
			선박통신	
07105	선박운전·운송	선박운항	수면비행선박조종	
운전·운송			수상레저기구조종	조정
			해상관제	
			선박갑판관리	
		검수·검량	검수·검정	
			경량항공기조종	
			자가용항공기조종	
		항공기조종운송	사업용항공기조종	
		00/1-060	운송용항공기조종	
				えっ
	=170-101		소형무인기운용 조종	추가
	항공운전·운송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항공운항	항공안전	
		でる正で	항공보안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추가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추가
	3	7	18	1 * 1
영업판매	영업	일반·해외영업	일반영업	
	ő H	글판 에서 경엽	큰딘 ö ㅂ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해외영업	
		,, e, , , , , , ,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	
			부동산경·공매	
		H = 11 = 1 = 1	주택관리	
	н⊏л	부동산관리	상업용건물관리	
	부동산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 부동산정보제공	
			부동산·동산감정평가	
		 감정평가	기업가치평가	
		10.001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통신판매	
		e-비지니스	전자상거래	
	판매		매장판매	
	C 11	일반판매	방문판매	
			농축수산물경매	추가
	2	3	6	1 - 1
			보안	조정
	경비	경비·경호	경호	
경비·청소	청소·세탁	-1.	환경미화	
0 1 022		청소	가사지원	
		vi ei	세탁	
		세탁	수선	
	4	12	42	
			헤어미용	조정
			피부미용	조정
	이·미용	이·미용서비스	메이크업	조정
			네일미용	조정
			이용	조정
			결혼상담	
		결혼서비스 -	웨딩플래너	
	결혼·장례		결혼예식장관리	
	EC 0-11		웨딩이벤트	
		장례서비스	장례지원	
			장례지도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조정
이용·숙박·여행		여행서비스	국내여행안내	
·오락·스포츠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	조정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숙박서비스	부대시설관리	
	관광·레저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회의기획	조정
		컨벤션	전시기획	
		진벤선	이벤트기획	
		신벤선		
			이벤트기획 카지노기획개발	조정
		진벤선 - 관광레저서비스	이벤트기획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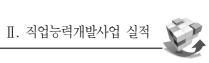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스포츠용품	스포츠용품제작	
		111	스포츠시설개발	
		스포츠시설	스포츠시설운영관리	
			선수스포츠지도	
			일반인스포츠지도	
		   스포츠경기·지도	건강운동관리	조정
	스포츠	-125/0/1 /12	경기기록분석	
			경기심판	
			경기지원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라이선싱	
		스포츠마케팅	스포스다이신경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스웨이션드 스포츠정보관리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지도	
	1	3	10	
			한식조리	조정
		음식조리	양식조리	조정
0.21.21.21.2		금식소디	중식조리	조정
			일식·복어조리	조정
음식서비스	식음료조리 •		식음료접객	
	서비스	22.0	소믈리에	
		식음료서비스	바리스타	조정
		-	바텐더  식공간연출	추가
		외식경영	의식운영관리 의식운영관리	十/7
	8	26	113	
	0	건설시공전관리	설계기획관리	
		건설시공관리 -	건설공사공정관리	
	건설공사관리		건설공사품질관리	조정
			건설공사환경관리	
			건설공사공무관리	
		건설시공후관리	유지관리	
			도로설계	
			공항설계	
			<u></u> 터널설계 교량설계	
			 항만(해양)설계	
		토목설계·감리	 상하수도설계	
		216/1101	하천(댐)설계	
건설			지반설계	
			단지설계	
			철도설계	
	드모		토목건설사업관리	
	토목		토공	조정
			지반개량	
			포장	
			수중구조물시공	
		= F 기 코	삭도시공	
		토목시공	궤도시공	
			상하수도시공	
			보링그라우팅	
			철강재시공	
			준설	
			순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석축	
			지적	
		* * * * * * * * * * * * * * * * * * *	측량	
		측량·지리정보개발	공간정보구축	
			공간정보융합서비스	
			건축설계	
			건축구조설계	
		건축설계·감리	건축감리	
			실내건축설계	
			건축목공시공	 조정
			조적미장시공	
			방수시공	
			타일석공시공	조정
			건축도장시공	
			철근콘크리트시공	조정
		건축시공	창호시공	
	건축	신축기 6	가설시공	
			수장시공	조정
			단열시공	
			지붕시공	
			구조물해체	
			강구조시공	
			경량철골시공	추가
		건축설비설계 · 시공	건축설비설계	
			건축설비시공	
			건축설비감리	
			건축설비유지관리	
			배관시공	조정
			발전설비설계	
			석유·화학설비설계	
		플랜트 설계감리	에너지설비설계 제조공장설비설계	
		글덴드 결계됩디   	제소등성설비설계 환경설비설계	
	플랜트	-	플랜트설비감리	
	= 엔프	-	해수담수화플랜트설비설계	
			플랜트기계설비시공	
		플랜트시공	플랜트전기설비시공	
		2 2 7 0	플랜드겐스 달리자 6	
		플랜트사업관리	플랜트사업관리	
		, , , , ,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	조경	조경관리	
			조경감리	
			국토·지역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국토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교통		도시개발	
	1 1 11 0		도시경관	
			교통계획	
		그토게하 서괴		
		교통계획·설계	교통설계	
			교통운영·감리	
	건설기계운전 · 정비	토공기계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0.,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아스팔트피니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로더운전	
			굴삭기운전	조정
			준설선운전	
		기초공건설기계운	락드릴항타항발기운전	
		전	지열시추기운전	
		콘크리트공기계운전	콘크리트공기계운전	
		적재기계운전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이동식크레인조종)	
			양화장치운전(선박크레인조종)	
		· 양중기계운전	타워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조종)	
		0 0 / 1/11 년 년	천장크레인운전(천장크레인조종)	
			컨테이너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 인조종)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해양관측	
		해양환경조사	해양측량	
			해양생태환경조사	
			해양환경보전·복원	
		해양환경관리	해양환경영향 평가	
			해양오염관리·방재	
			원유시추설비설치·운용	
		해양플랜트설치·운	원유생산설비설치 · 운용	
	해양자원		해양터미널구조물설치	
		용	해양플랜트프로세스설계	추가
		해양자원개발·관 리	해양플랜트시운전설계	추가
			해양플랜트안전설계	추가
			해양자원탐사	
			해양자원개발	
		·	해양자원관리	
		잠수	일반잠수	
			산업잠수	
	10	31	125	
			기계설계기획	
		설계기획	기계개발기획	
			기계조달	
	기계설계		기계마케팅	
	7 1/11 (2/11		기계요소설계	
		-1 -11 x-1 -11	기계시스템설계	
		기계설계	구조해석설계	
기계 -			기계제어설계	
			선반가공	
			밀링가공	
		ZJ x] →] ¬	연삭가공	
		절삭가공	CAM	
	리케리 고		측정	
	기계가공	해양환경관리 해양플랜트설치·운 용 해양자원개발·관 리 잠수 31 설계기획	성형가공	
			방전가공	
		트스키고	레이저가공	
		サイプ サイプ サイプ サイン・サイン・サイン・サイン・サイン・サイン・サイン・サイン・サイン・サイン・	워터젯가공	
			플라즈마가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기계수동조립	조정
			기계소프트웨어개발	 조정
		기계조립		<del>-</del>
	기계조립·관리			
		기계생산관리		
			1 1 2	
			The state of the s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기계품질계획	
	기계품질관리	기계품질관리	기계품질관리	
			기계품질평가	
			운반하역기계설치 · 정비	
			건설광산기계설치·정비	
			섬유기계설치・정비	
		기계장비설치·정비	2 1 1 1 1 1	
				조정
			11 1 1 1 1	
	기계장치설치	(청) 중 (청)		
				조정
		냉동공조설비		
		-		
		이륜차정비		
				十/「
		기도키서계		
		자동차설계		えっ
				ナバ
				1
	) <del>-</del> - )			
	자동차	자동차정비		
		대한 기계조립 기계소프트웨어개발 기계하드웨어개발 기계정웨어개발 기계정웨어개발 기계생산관리계획 기계자재관리 기계장관리 기계장관리 기계장관리 기계장관리 기계장원인 기계장인간독 기계품질관리 기계를 기계설치 · 정비 전설광산기계설치 · 정비 공작기계설치 · 정비 당동·조설계 냉동·공조설계 냉동·공조설계 냉동·공조설계 냉동·공조설계 냉동·공조설계 당동·공조설계 가동·자스보수관리 보인러설치 정비 자동자시험·평가 자동자시험 · 평가 자동자시험 · 제 · 자동자신기·전자장치정비 자동자시집비 자동자세집비 자동자에 기 · 자동자 생 비전장관리 자동자에 비전 · 자동자 생 비전장관리 자동자를 시 보수 교육자 당유지보수 건가 당유지보수 전기자 당유지보수 전기자 당유지보수 선박기본설계 선배설계		
			조정	
		자동차정비관리		
		, , , , , , , ,		
		   자돗차과리		조정
		, 0 - 1 - 2 - 1		
		   첨도차랴선게 . 제 ·		
		작 작		
	철도차량제작			
		치다키라 6 키 니 스		
		世上小 は 市 八 上 十		
		-		
	조선	서바선계		
	그- 인	· 그 교기	선탁매판설계	
			철의장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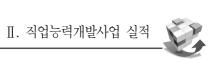
기장실계 선원설계 선실설계 선실설계 선실설계 선실설계 선실설계 선보도장 기장생산 선박도장 기장생산 선택도장 기장생산 선택도장 기장생산 선택등질반디 선박등질반디 보통질반디 보통질반디 보충등질반디 보충등질반디 보충등질반디 보충등질반디 선박정산관리 기장시문건 선택시원전 선택시원전 선택시원전 선택시원전 선택시원전  전박기관절비 선박기관점비 선박기관점비 선박기관점비 선박기관점비 전박기관점비 전박기관점비 환경기계전계 환경기시작원기의자장비설계 환경기시작원기시작자장비설계 환경기시작장비설계 환경기시작장비계작 환경기시작장비설계 환경기시작장비원기 소청 환경기자전자장비계작 환경기자전자장비계작 환경기자전자장비계학 환경기자전상비계학 환경기자전자장비원비 조정 환경기상전자장비원에 조정 환경기상전자장비관리 환경기원리 소청 사용급원전비 조정 사용급원조건 조정 사용급원조건 조정 내용급원조건 조정 프레스급형조건 조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선실설계 선체가공 선체조급 선배도함 기장생산 선박되장생산 선착생산 선착생산 선착생산 선착생산 선착생산 선착생산 선착생산 선착				기장설계	
선체건조 선제조임 선제조임 선택도장 기상생산 선착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리 의장품질환리 도착음질환리 도착음질환리 (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전장설계	
선체건조 선제조임 선제조임 선택도장 기상생산 선착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리 의장품질환리 도착음질환리 도착음질환리 (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선실설계	
선체건조 선배되장생산 선박의장생산 선박의장생산 선택의장생산 선물의장생산 선물의장생산 선내품질관리 의장품질관리 도장품질관리 도장품질관리 도장품질관리 (설박생산과리 성박생산관리 의장품질관리 (설박생산관리 기장시윤전 서우한 선택경비 선박경비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연박기관정비 형장기계점계 황공기기계절계 황공기기계절계 황공기기계절계 황공기기계관가 항공기계적 항공기계기관자의원계 항공기시스판원원계 항공기시스판원원계 항공기시스판원원계 호공기시스판원원계 항공기시스판원원계 항공기시조판원 프로펠리점과 항공기계정기 항공기계정기 항공기계정기 항공기계정기 항공기계정기 조정 항공기계정기 장공기기제원계 항공기계정기 조정 항공기계정기 조정 항공기계정기 조정 항공기계정기 항공기계정기 조정 항공기계당비 한공장비관리 항공장나관리 항공장나관리 항공장나관리 항공장나관리 한공장보급관리 항공장구관리 사출급형품계 조정 사출급형품원리 조정 보대스급형체계 프레스급형체계 프레스급형체계 프레스급형체계 프레스급형체계 프레스급형체계 프레스급형병품원리리 프레스급형성계 프레스급형성관리 프레스급형성관리 프레스급형성계 프레스급형성관리 프레스급형성계 프레스급형성관리 프레스급형성관리 프레스급형성계 프레스급형성관리 프레스급환경					
선박의장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 선장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생산 선정			서체거조		
선박의장생산 전강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생배종질관리 도창품질관리 보안생산계획 선박생산계획 선박생산과의 의창생산관리 의창생산관리 의창생산관리 의창생산관리 의창생산관리 의창생산관리 의창생산관리 의창생산관리 선택장시원전 선택장시원전 선택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제공병비 현충기계설계 항공기전기·전자상비전계 항공기시스레설계 소형무인기비행제개발 추가 항공기전기·전자상비제계 항공기시스레설계 소형무인기비행제개발 추가 항공기전기·전자상비제계 항공기시크에 조정 항공기자제와 항공기전기·전자상비제의 장공기기체계의 조정 항공기가제원비 조정 항공기가 전기에 조정 항공기 전기			2/1/22		
선박의장생산 선보의장생산 선보의장생산 선보의장생산 선내품질관리 모장품질관리 모장품질관리 보작생산관리 의장품질관리 선박생산관리 기상시원전 선택생산관리 기상시원전 선택장비 선박장비 선박장비 선박장비 선박장비 선박자원비 선박대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대관정비 청장기선기전자상비석계 항공기선기전자상비석계 항공기선기전자상비선계 항공기선기전자상비적계 항공기선기전자상비적기 항공기선기전자상비적기 항공기선기전사원자원비적 항공기전기전자상비적기 장공기대원비전 조정 항공기대용전비 조정 항공기대용전비 조정 항공기관리전비한 항공장라면급한리 항공장구면리 사출급형설계 조정 사출급형생계 조정 사출급형생계 조정 사출급형생계 조정 사출급형생계 조정 사출급형생계 조정 사출급형생건대 프레스급형생계 프레스급형생대 프레스급형생대 프레스급형생대 프레스급형생대 프레스급형생대 프레스급형생대 프레스급형생건리 프레스급형생대 프레스급험				-	
선박생산한 선실의공생산 선실의공생산 선실의공생산 선실의공생산 선계품집관리 의상품집관리 모공품질관리 모공품질관리 선박생산관리 의상생산관리 의상생산관리 의상생산관리 의상생산관리 기장시온전 선제정나관전 선제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제관정비 선택기관정비 선택제공회비 의공정비 왕공기기계설계 항공기기계설계 항공기기계설계 항공기기계설계 항공기기계설계 항공기기계설계 항공기기계설계 항공기기계생기 학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항공기전가 전자장비계적 항공기건가 전자장비계적 항공기기계정비 조정 항공기기자는타반엔건정비 조정 항공기의 등 전체 항공기전기 전자장비계 조정 항공기 등 전체 기관 기관 등 전체 기관 기관 기관 등 전체 기관				*	
선박공결관리 선박공결관리 선박생산관리 의장품결관리 도장품결관리 선박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생반이 선박기관경비 선박기관경비 선박기관경비 청공기전비 청공기계계 항공기건가·신자장비선계 항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계개발 추가 항공기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계 항공기전기·전자장비계 항공기전기·전자장비계 항공기전기·전자장비계 항공기전기·전자장비계 항공기전기·전자장비계 호공기기제생 항공기기제생 항공기전기·전자장비계 조정 기상기·전자장비계 조정 항공기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계 조정 항공기본급원계 조정 항공기를원비 조정 항공기를원비 조정 항공기를원비 조정 항공기정비 한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구관리 사출금형제기 조정 사출금형제기 조정 사출금형제대 사출금형제대 사출금형제대 조정 내출금형제기 조정 내출급형제기 조정 내출급형제기 조정 내출급형점계 조정 사출금형제대 사출급형점계 조정 내출급형점계 조정 내출급형점계 조정 사출급형제대 사출급형점계 조정 사출급형제대 사출급형점계 조정 내출급형점계 조정			선박의장생산		
한공기제작  한공기제작  한공기제작  한공기제작  한공기제작  한공기제작  한공기제작  한공기정비  한공기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제학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학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전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전비  한공기전비관리  한공장비관리  한공장비보급권리  안공장무관리  사출급형세각  사출급형세각  사출급형세각  조정  사출급형세각  프레스급형설계  프레스급형설계  프레스급형설계  프레스급형설계  프레스급형설계  프레스급형설계  프레스급형설계  프레스급형설계  프레스급형성관리  조정  프레스급형성관리   전쟁 전			-		
선박정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기장사인조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원전 선택배관정비 선박기관성비 선박배관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학공기기체설계 항공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선자전가선계 항공기선가 전자장비설계 항공기선가 전자장비설계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설계 항공기계자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설계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전계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전에 항공기자를 받아 교육에 대한 의공에 의용 등 기계정비 조정 항공기가스터반엔진정비 조정 항공기자스터반엔진정비 조정 항공기본 에인전에 조정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정비 조정 항공기를 하는 이 학공기 교육에 의료 등 대전 의 학공기계 등 전 이 학공기전기 전자장비전비 소청 학공기를 하는 기계 등 전 이 학공기계 등 전 이 학공기계 등 전 이 학공기전기 된 주가 항공기전기 된 구간 이 학공기전기 보다고 이 학공장기관리 학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학공장 관리 조정 사출급형 교육 전 사출급형 관리 조정 사출급형 관리 조정 프레스급형 전계 프레스급형 전계 프레스급형 전계 프레스급형 전기 조정 프레스급형 전기 프레스급형 전기 프레스급형 전기 프레스급형 전기 프레스급형 조정 프레스급형 전기 프레스급형 조정 프레스급형 조립 조정 프레스급형 조점 프레스급형 조립 조정 프레스급형 조점 프레스 프리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프레					
선박생산관리 선박생산관리 선박생산계획 선박생산관리 기장시윤전 선장시윤전 건장시윤전 건장시윤전 선체정비원 선박기관기비 선박기관기비 선박기관기비 선박기관기비 설박배관경비 학공기계설계 항공기선가 전자장비설계 학공기선가 전자장비설계 학공기세조 학공기세조 학공기계세조 학공기세조 학공기계세조 학공기계세조 학공기계세조 학공기계시조 학공기계세조 학공기계시조 학공기계전비 조정 학목기원기 전자장비제 조정 학목기원 전자장비전에 조정 학목기원 전자 학공기계정비 조정 학목기원 전자장비전비 조정 학목기원 전자장비전비 조정 학목기원 전자장비전비 학공기계등전비 학공기계등전비 학공기계등전비 학공기계등전비 학공기계등전비 학공기계등전비 학공기계등전비 학공기계등전비 학공기계반리 학공기계반리 학공장 바라리 학공장 바라리 학공장 바라리 학공장 대한 교육 전 사출급형세계 조정 사출급형제 조정 사출급형제 조정 사출급형제 조정 사출급형제 조정 사출급형제 조정 프레스급형 전관리 프레스급형 전관리 프레스급형 조점 조정 프레스급형 조집 조정			기미보기기기	1 1	
선박생산관리 선택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기장시운선 건장시운전 건장시운전 건장시운전 건장시운전 전쟁시원 선박대본정비 선박대본정비 선박대본정비 전망정비 항공기계설계 항공기계설계 항공기계설계 항공기계설계 항공기계설계 항공기계설계 항공기기체설계 항공기기체계자 항공기기체계자 항공기기체계자 항공기기체계자 항공기기체계자 항공기기체계자 항공기전가전사장비설계 항공기건가전사장비원계 학공기신스택설계 소형무인기비행제개발 추가 항공기전가전사와비제자 항공기전가전사와비제자 항공기전가전사와비제자 항공기전가전사와비제 조정 항국기기체정비 조정 항국기기를 정비 항공기건가전사장비정비 항공기전가전사장비정비 항공기전가전사장비정비 항공기전가전사장비전비 항공기전가전사장비전비 한공건한기전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기보급한리 학공장기관리 수급형조립 조정 사출급형조립 조정 사출급형조립 조정 프레스급형전계 조정 프레스급형전계 조정 프레스급형전기 조정			선막품실판리		
선박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기장시요전 시윤전 선장시요전 전장시요전 전장시요전 전장시요전 전장시요전 전쟁시요전 전환기원비 선박대관정비 선박대관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설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설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설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설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전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전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전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전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전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전계 학공기전시조사와비전기 조정 학공기소비전인전정비 조정 학공기과목엔진정비 조정 학공기계동병비 학공기전기·전시장비전기 조정 학공기계동병비 학공기전기·전시장비전기 조정 학공기전기·전시장비전기 조정 학공기절기·전시장비전기 조정 학공기전기·전시장비전기 조정 학공기절기관기 전기장비전비 학공장비관리 학공장기전기·전시장비전기 조정 학공기절기관리 학공장기전기·전시장비전기 조정 학공기절기관리 학공장기전기·전시장비전기 조정 학공기절기관리 학공장기전기·전시장비전기 조정 학공장기전기·전시장비전비 조정 학공장기전기·전시장비전비 조정 학공장기전기·전시장비전비 조정 학공장기전기 전기장비전기 조정 사출급형조립 조정 사출급형조립 조정 사출급형조립 조정 사출급형조립 조정 프레스급형 조립 조정 프레스급형 조립 조정 프레스급형 조립 조정 프레스급형 조립 조정				* * * * * * * * * * * * * * * * * * * *	
의장생산관리 기장시윤전 선장시윤전 전장시윤전 전장시윤전 선택기관정비 선택기관정비 선택기관정비 원망정비 의장정비 항공기선제 항공기선제로 프로펠라실제 항공기선제를 한공기스타텔선제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항공기제자적 항공기전가조사장비제자 항공기전가조사장비제자 항공기전가조사장비제자 항공기전가조사장비제자 항공기전가경사장비제자 항공기전가경사장비제자 항공기전가경사장비제자 항공기전가경사장비제자 항공기자전체 현황기가조타텐면전정비 조정 항공기자드테인전정비 조정 항공기자를정비 항공기자를정비 항공기자를정비 항공기자를정비 항공기자를정비 항공기자를 경비 한공기자를 경비 한공기전기 전자장비원비 환공장기관리 사출급형전기 사출급형전기 소청 사출급형전기 조정 사출급형전기 조정 사출급형전기 조정 사출급형전기 조정 내급급현건지 프레스급형선계 프레스급형선계 프레스급형선계 프레스급형선계 프레스급형선계 프레스급형선계 프레스급형선계 프레스급형선계 프레스급형선계 프레스급형원계			N .		
지용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선채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배관정비 선박배관정비 전박배관정비 전막기관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			선막생산관리	*	
사운전 선장시운전 건장시용전 건장시용전 선체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항공기기체설계 항공기인산·프로펜터설계 항공기신다.현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항공기시스택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항공기시스택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항공기기체제작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전계 호망기건가 전자장비전계 소형무인기비행체제학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작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자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보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조를 발려 보고 생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정비 조정 항공기 교육 변리 문제 한공 기 교육 비 전체 한공 기 교육 비 전체 한공 기 교육 비 전체 한공 기 전 비 관리 한공장 비보급 관리 항공장 비보급 관리 항공장 비보급 관리 학공장 비보급 관리 사출급형설계 조정 사출급형 전계 조정 사출급형 전계 조정 사출급형 전기 조정 내 한공장 비보급 관리 조정 사출급형 전기 조정 사출급형 전기 조정 교비스급형 제작 조정 프레스급형 제작 프레스급형 제작 프레스급형 제작 프레스급형 제작 프레스급형 제작 조정 프레스 프레스급형 제작 조정 프레스 피어 프레스 프레스 제국 제작					
선박정비 선박지원비 선박기관정비 선박제관정비 전상경비 의장정비 형공기계선계 항공기기제설계 항공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계발 추가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점계 항공기기체제자 항공기기체제자 항공기기체제자 항공기기제제자 항공기기제제자 항공기기제정비 조정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의를정비 항공기를정비 항공기의제정비 호공기의제정비 조정 항공기의를정비 항공기의로 빨리집비 소형무인기정비 학공장기관리 항공장기관리 항공장기관리 항공장기관리 항공장비보급한리 항공장기관리 항공장비보급한리 항공장무관리 사출급형설계 조정 사출급형조립 프레스급형세자 조정 프레스급형세자 조정 프레스급형세자 조정 프레스급형세자 조정 프레스급형세계 조정 프레스급형세계 조정 프레스급형세계 프로정 프레스급형제관 프레스급형제작 프레스급형제관 프레스급형제작 프레스급환대 프레스급환			) 0 =1		
선박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대관정비 원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항공기설계 항공기선가 전자장비설계 항공기선가 전자장비설계 항공기선가 전자장비설계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설계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전계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자 등 경비 한국기자 등 경비 한국기자 등 경비 한국기자 등 경비 항공기자 등 경비 항공기자 등 경비 항공기자 등 경비 항공기자 등 경비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조정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조정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학공기전비관리 항공장기관리 사출금형선계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조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			시운전		
선박정비 선박제관정비 선박제관정비 전상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의장정비 항공기선계 항공기에진 프로펠러설계 항공기선기 전자장비설계 항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항공기제작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가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자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제자 항공기기체정비 조정 항공기기체정비 조정 항공기기사업비 조정 항공기기사업비 조정 항공기의를 정비 항공기를 정비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결리 등 기계통 전비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교정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학공장비보급원 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보급원 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보급원 기관리 한공장비보급원 조정 사출급형제 조정 사출급형제작 조정 사출급형제작 조정 프레스급형 존집 조정 프레스급형 존집만리 표에 스급형 품집관리 조정 프레스급형 품집관리 조정					
선박정비 선박배관정비 전상정비 의장정비 항공기기체설계 항공기선계 항공기전관·프로웰러설계 항공기전가전자장비설계 항공기시스[변설계 소형무인기 비행제개발 추가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제작 항공기가스타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관로뷀러정비 조정 항공기관로뷀러정비 조정 항공기관로뷀러정비 조정 항공기프로뷀러정비 조정 항공기프로뷀러정비 조정 항공기프로뷀러정비 조정 항공기관로 벨러경비 조정 항공기관로 벨러경비 조정 항공기관로 벨러경비 조정 한공기를 정비 항공기전가 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 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타리 비 수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구반리 사출금형점비 주가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구반리 사출금형제작 조정 사출금형점로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품질관리 조정				_ ,	
환공기계설계 항공기계설계 항공기계설계 항공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기체제작 항공기기체제대 항공기기체제대 항공기기체제대 항공기기체제대 항공기기체제대 항공기기체제대 조정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가스터킨엔진정비 조정 항공기제통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현리급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기관리 사출급형설계 조정			N. 20 - 20	_ , ,	
항공기선계 항공기연진·프로랜러설계 항공기신구·현고자장비설계 항공기선기·현실계 항공기선구·현실계 소형무인기비행계개발 추가 항공기전기·전자장비설계 소형무인기비행계개발 추가 항공기전기·전자상비제작 항공기전기·전자상비제작 항공기기체정비 조정 항공기가스터덴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의확인전 보건 한목기의확인전 비 조정 항목기적 등정비 항공기계통정비 항공기전기·전자상비정비 조정 항공기계통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기관리 한공장기점비 조정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적인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선계 프레스금형선계 프레스금형선계 프레스금형선계 프레스금형선계 프레스금형선계 프레스금형관리 조정 프레스금형관리 조정 프레스금형관리 조정			선박정비		
항공기설계 한공기선계 한공기선계 한공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한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한공기제작 한공기제제자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한공기기체정비 조정 한국기와복엔진정비 조정 한복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한국기로펠러정비 조정 한국기관플레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한국기정비관리 한공장비관리 한공장비관리 한공장나관리 사출급형설계 조정 사출급형 플립판리 조정 사출급형 폴립판리 조정 보급급병계자 조정 프레스급형 제작 조정 프레스급형 전략리 조정 프레스급형 제작 조정 프레스급형 전략리 조정 프레스급형 제작 조정 프레스급형 전략리 조정 프레스급형 전략리 조정 프레스급형 전략리 조정 프레스급형 전략리 조정 프레스급형 조립 조정 프레스급형 조립					
항공기설계 항공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제개발 추가 항공기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건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스터틴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공기프로펠러정비 조정 항공기프로펠러정비 조정 항공기프로펜러정비 조정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호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호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호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보급단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장공장무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 조립 조정 프레스금형 제작 조정 프레스금형 조립 조정					
항공기설계 항공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전·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전자장비제작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공기교로펠러정비 조정 항공기교로펠러정비 조정 항공기교로펠러정비 소형무인기정비 학공기전·전자장비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라보급관리 장공장구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프레스금형설계 표레스금형점에 조정 프레스금형선계 프레스금형점로립 조정 프레스금형점로립 조정			선체건조 선체조립 선박도장 기장생산 선박의장생산 선상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계품결관리 도작품질관리 도작품질관리 보박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의장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배관정비 청공기에진·프로펠러설계 항공기에서 행공기에서 현광기선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에진·프로펠러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거·전자장비제작 항공기가·드터빈엔진정비 항공기가·드터빈엔진정비 항공기저그·전자장비정비 행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가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가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가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장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장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한공기전기·전자장비전비 한공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기전		
항공기시스템설계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의제통정비 항공기제통정비 항공기전가·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기보급관리 항공장기보급관리 항공장기보급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세자 조정 프레스금형세자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항공기전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제작 항공기기체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기체정비 조정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복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공기프로펠러정비 조정 항공기프로펠러정비 조정 항공기계통정비 항공기제통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가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 조립 표레스금형 제작 조정 프레스금형 조립 조정					
항공기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공기프로펠러정비 조정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무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전계 조정 프레스금형 플질관리 조정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추가
항공기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공기프로펠러정비 조정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무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전계 조정 프레스금형 플질관리 조정				항공기기체제작	
항공기전가·전자장비제작 항공기기체정비 조정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목기왕복엔진정비 조정 항공기제통정비 항공기전가·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가정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무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나출금형점계작 조정 나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항공기제작					고저
항공기정비  항공기정비  항공기전기상보엔진정비 장공기교로펠러정비 장공기계통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무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제작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교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취고리케키			
항공기절비 항공기프로펠러정비 조정 항공기계통정비 항공기계통정비 항공기계통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세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설계 조정 프레스금형성계 조정 프레스금형 중립 조정		양동기세작			
항공기정비				- / / - / /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구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세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선박정비 항공기설계 항공기제작 항공기정비 항공장비관리		조정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기전비관리   항공장구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제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성계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구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제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선계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조정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구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제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정리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선박의장생산 선박생산관리 시운전 선박정비 항공기설계 항공기정비 항공기정비	헬리콥터정비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구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제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정리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소형무인기정비	추가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구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제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 페스금형설계 = 패스금형설계 = 패스금형세작 조정 = 패스금형제작 조정 = 패스금형제작 조정					
항공장구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세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 대권스금형설계 - 프레스금형설계 - 프레스금형세작 조정 -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 프레스금형중립 조정			항공장비관리		
사출금형설계 조정 사출금형제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사출금형 사출금형제작 조정 사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 '	
사출금형 시출금형품질관리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사출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항공기설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항공기기체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항공기라르르펠러정비 항공기프로펠러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자 이 병공기 전비관리 항공가 전비로 관리 항공장 가관리 사출금형설계 사후 그형제자	
- 구형			사출금형		
금형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세작 조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제작 조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지용전 선장· 전장· 선박기 선박기 선박기 선박기 선박기 전쟁 전쟁· 선박기 선박비 전쟁 의장 의장 의장 항공기센진· 항공기선기· 항공기세작 항공기전기· 항공기전기· 항공기가스 항복기왕· 항공기작기· 항공기가스 항복기왕· 항공기조기· 항공기전기· 행공기 전기· 행공기 전기· 행공기 전기· 행공기 전기· 행공기 전기· 행공기 전기· 합의 기 항공기 전기· 합의 기 항공기 전기· 합의 기 항공기 전기· 합의 기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항공장비관리 한공장 작품들 사출들 사출들 사출들 기 등 대비스는 프레스는 프레스는 프레스는 프레스는 프레스는 프레스는 프레스는 프레		٥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금형		, , , , , , , , , , , , , , , , , , , ,	ج ح)
프레스금형품실판리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프레스금형		소성
다이캐스팅금형 다이캐스팅금형설계 추가				프레스금형조립	조정
			다이캐스팅금형	다이캐스팅금형설계	추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다이캐스팅금형제작	추가
			다이캐스팅금형조립	추가
			다이캐스팅금형품질관리	추가
	2	7	35	
			재료설계	
		금속엔지니어링		
			The state of the s	
			열간압연	
		금속재료제조	냉간압연	
			비철금속건식제련	
				추가
			주조	조정
	그스레크		단조·압출·인발	조정
	금속재료	그수기고	열처리	
		금속가공	선재가공	
			조정	
			강관제조	
재료		표면처리 :	<u>-</u>	
",—		용접	1 1	
			로봇용접	조정
			전기전자재료제조	
		   파인세라믹제조		
		-  -  -  -  -  -  -  -  -  -  -  -  -	다이캐스팅금형품질관리 추가 35 재료설계 재료시험 재료조직평가 제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면 비월금속건식제련 비월금속급식제련 금속재료제조설비정비 주조 조정 단조·압출·인발 조정 열처리 선재가공 판금제관 조정 강관제조 도금 조정 금속도장 지보에고용접 조정 기스테아크용접 조정 가스테탈아크용접 조정 가스테탈아크용접 조정 지나더 1 한 가 그용점 로봇용접 조정 보기전자재료제조 광학재료제조 병체대라디제료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내명구조재료제조 내명구조재료제조 생체세라디제료제조 유리・법랑제조 내회물제조 연삭재제조 도자기제조 시멘트제조 본소제품제조 축로 34 화학물질검사·평가	
			다이캐스팅금형품질관리 추가 35  재료설계 재료시험 재료조직평가 제선 제상 열간압연 비칠금속건식제런 비칠금속습시제런 금속재료제조설비정비 추가 주조 조정 단조: 압출·인발 조정 열차리 선재가공 판금제관 조정 당관제조 도금 조정 금속도장 조정 지막이크용접 조정 기스팅스텐아크용접 조정 기스팅스텐아크용접 조정 기스팅스텐아크용접 조정 기스팅스텐아크용접 조정 기스타이크용접 조정 기스타이크용접 조정 지나스메달아크용접 조정 지나스메달아크용접 조정 지나스메달아크용접 조정 지나는데지드아크용접 조정 지나는데지르아크용접 조정 지는에 발한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생체세라믹제료제조 우리・법랑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생체세라믹제로제조 우리・법랑제조 나의로제조 연삭재제조 도도자기제조 시멘트제조 탄소제품제조 축모 의학과정실계 화학반응공정개발운전 화학공정유지운영 발 화학제품연구개발 선유제품제조 합성수지제조	
	441.71-			
	요업재료			
		크 두 제 크 티 레 크		
		전통세라믹제조		
			· · · · · · · · · · · · · · · · · · ·	
	4	11	·	
	1	11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		
		772207		
화학	화학물질 • 화			
	화학물질·화 학공정관리	22222		
		화학공정관리		
		화학제품연구개발	화학제품연구개발	
		석유·천연가스 제조	석유제품제조	
	석유・기초화			
	학물 제조	기초유기화학물	합성수지제조	
		제조	합섬원료제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합성고무제조		
			고분자복합재료제조		
		기초무기화학물 제조 생리활성화제품제조 기능성정밀화학제 품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 조	기능성고분자제조		
		기초무기화학물	무기질비료제조		
		제조	산·알카리제조		
				 조정	
		기초무기화학물 제조 생리활성화제품제조 기능성정밀화학제 품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 주 설유생산 섬유가공 섬유생산관리			
				변고 조점 추가 추가 추가	
		기능성정밀화학제			
	기미취하.케포	품제조 _			
	정밀화학제품 제조				
	,,				
		-3 -1 - 0 - 0 - 0 - 0 - 0 - 0			
		바이오의약품제소			
			합성고무제조 고분자복합재료제조 기능성고분자제조 무기질비료제조 산·알카리제조 의약품제조 중약제조 화장품제조 제면활성제제조 철가제제조 보조제조 접착제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전단제품개발 서비스 추가 범용바이오화학제품제조 약사출성형 고명성형 중공·진공성형 컴파운딩  24 방사 방착 사가공 성식기획 패턴 전의 내수일저관리 패턴 정산현장관리 패선기획 패선디자인 패턴 조정 비주일머원다이징 제적의류생산 판직의류생산 학생산 의류유통관리 자숙ㆍ모피생장 대선소품생산 한복생산 의류유통관리 지선소품등관리 신발생산 신발개발 추가 84 수리발전설비설계 환격발전설비설계 환력발전설비설계 환격발전설비설계		
		바이 0 히하게프게 -			
			***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제조 -			
	제조				
			컴파운딩		
	2	7	24		
			*		
		섬유생산			
			*		
	섬유제조		* *		
		선유가곳 -	1 1 7		
		H 11/10			
		 섬유생산관리			
		1110221	· ·		
		-			
서 이 이 범		패션제품기획 -		)	
섬유·의복				소성	
		레서게프셔시	_ , , , ,		
	패션	페겐세품/8/건   			
	게 건				
		패션제품유통			
		│ 신발개발·생산 ├		 추가	
	3	27		, ,	
고나 그 그 그 그		바궈서비서계			
전기·전자	전기	물선설비설계			
		발전설비운영	수력발전설비운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화력발전설비운영	
			원자력발전설비운영	
			원자력발전전기설비정비	
			원자력발전기계설비정비	
			원자력발전계측제어설비정비	
			송변전배전설비설계	
			송변전배전설비운영	
		송배전 설비	·	
		0 112 2 1	송변전배전설비공사감리	 えっl
			직류송배전전력변환설비제작	추가
			직류송배전제어 보호시스템설비제작	추가
		   지능형전력망설비	지능형전력망설비	
		기 6 중선 극 6 필리	지능형전력망설비소프트웨어	
			전기기기설계	
		전기기기제작	전기기기제작	
			전기기기유지보수	
			전기설비설계	
		전기설비설계 · 감리	전기설비감리	
			전기설비운영	추가
			내선공사	
		전기공사	외선공사	
			변전설비공사	추가
			자동제어시스템설계	
		 전기자동제어	자동제어기기제작	
		선기자 6 세 기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	
			자동제어시스템운영	
			전기철도설계·감리	
		전기철도	전기철도시공	
			전기철도시설물유지보수	
		71 - 11 - 11 .1	철도신호제어설계·감리	
		철도신호제어	철도신호제어시공	
			철도신호제어시설물유지보수	
		초임계CO2발전	초임계CO2발전열원설계 제작	추가
			초임계CO <sub>2</sub> 열교환기설계 제작	추가
		전기저장장치	전기저장장치개발 전기저장장치설치	<u>추가</u> 추가
		거기계포케HL기체	전기적상상지절시 전자제품기획	ナ/「
		전자제품개발기획 · 생산	전자제품기속 전자제품생산	
			전자사람이면	
	전자기기일반	전자부품기획 · 생산	전자부품생산	
			전자제품설치·정비	
		전자제품고객지원	전자제품영업	
			가전기기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가전기기 개발	가전기기응용소프트웨어개발	
		가센기기 개발 	가전기기하드웨어개발	
	전자기기개발		가전기기기구개발	
			산업용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	
		산업용전자기기개발	산업용전자기기기구개발	
			산업용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기기하드웨어개발	
		정보통신기기 개발	정보통신기기기구개발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	
		전자응용기기개발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l	I.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전자응용기기기구개발		
			전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		
			전자부품하드웨어개발 		
		지자브픈개반 전자브픈개반			
		선사 무섭계 할			
				조저	
				37.0	
		반도체개발			
		디스플레이개발			
		전자부품하드웨어개발 전자부품기구개발 전자부품소프트웨어개발 반도체개발 조정			
		로봇개발			
			2 1 1 1 1	주가	
		의료장비제조			
		012001/112			
		광기술개발			
			* * * * * * * * * * * * * * * * * * * *		
		3D프린터개발			
	2			수가	
	3	13			
		-			
		-			
		정보기술전략·계획			
		개발 가상훈련구동엔지니어링  13 64 정보기술전략 정보기술전략 정보기술건설팅 정보기술기획 SW제품기획 빅데이터 분석 IoT융합서비스기획 SW아키텍처 응용SW엔지니어링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츠기.	
				-1 / 1	
		정보기술개발			
3) N E 1)					
정보통신	정보기술				
			,		
		정보기술운영 정보기술운영	IT기술교육		
		03-1220	IT기술지원		
			IT프로젝트관리		
		정보기술관리	IT품질보증		
			IT테스트		
			IT감리		
			IT기술영업		
		정보기술영업	, , , , , ,		
		· · · · · ·	IT마케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정보보호관리 운영	추가
		정보보호	정보보호진단 분석	
			보안사고분석대응	
			1 1 1	
		유서통시구축		
		1160619		
				7.9
		무선동신구숙     (이돗토시 포하)		
		(1886 28)		
				· ·
			*	
	통신기술			
		-		
		정보보호진단 분석 보안사고분석대응 교환시스템구축 유선통신구축 (이동통신 포함)  R선통신구축 (이동통신 포함)  무선통신지스템구축 무선통신망구축 위선통신망구축 위선용신망구축 위선용시망구축 유선설비접속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부가네트워크서비스 전상비스 이동통신제비스 로텐츠사용자서비스 콘텐츠내트워크서비스 구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무선호교속인터넷서비스 무선호교속인터넷서비스 무선호교육인터넷서비스 무선호교육인터넷서비스 무선호를메시정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특수마동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다지털비지니스지원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다지털비지니스지원서비스 무선대의 당송 경제방송 방송플랫폼기술  방송품질관리 라디오방송 지상과TV방송 지상과TV방송 지상과TV방송 지상과TV방송 기상의 DMB 케이블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유무선통합서비스 방송장시스템운영 방송기술지원서비스 방송장시스템운영 항송기술지원서비스 방송장시스템운영 항송기술지원서비스 방송장시스템운영 항송기술지원서비스 방송장시스템운영 항송기술지원서비스 방송장비설치유지보수 4 20 수산식품가공 국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1 1 2	
		-		
		정보보호 전단 분석 보안사고분석대용 교환시스템구축 구내통신구축 네트워크구축 무선통신구축 (이동통신 포함)  무선통신구축 (이동통신 포함)  무선통신구축 (이동통신 포함)  무선통신가축 위성통신망구축 유선설비접속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부가네트워크서비스 구산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무선초고속망서비스 콘텐츠사용자서비스 콘텐츠나용자서비스 무선호플메시정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무선호플메시정서비스 무선화를메시정서비스 무수한 등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무너데이터통신서비스 무너데이터통신서비스 무너의하를 등 자상화T/방송 지상화T/방송 지상화T/방송 기상화T/방송 기상화자제B 기어불방송 인터넷립티미디어방송 유무선통합서비스 방송장비설치유지보수 4 20 수산식품가공 투구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유제품가공 국산식품가공 유제품가공 기장 반찬가공 면류식품가공 유제품가공 기장 반찬가공 면류식품가공 무대식품가공 무대식품가공 기장 반찬가공 면류식품가공 무대용가공 기장 반찬가공 면류식품가공 구상 기상하거공		
				 추가
		실감형콘텐츠제작		
		교환시스탠구축 구내통신구축 네트워크구축 무선통신지스테구축 무선통신지스테구축 인동통신 포함) 무선통신망구축 위성통신망구축 위성통신망구축 유선설비접속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추가네트워크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코덴츠서비스 콘텐츠나용자서비스 콘텐츠나용자서비스 콘텐츠내트워크서비스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우다소공용통신 무선호를메시장서비스 의터넷지원서비스 의터넷지원서비스 부가통신용용중계서비스 특수마동통신서비스 교리에터통신서비스 그리텔비지니스지원서비스 모덴레스제작 가장현실콘텐츠제작 방송제작기술 방송품질관리 라디오방송 지상파TV방송 장과TV방송 양송품질관리 라디오방송 지상파TV방송 기상파TV방송 경보시스템운영 방송기술지원서비스 방송시스템운영 장송기술지원서비스 방송시스템운영 장송기술지원서비스 항송장비설치유지보수 4 20 수산식품가공 유제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유제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유제품가공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김치·반찬가공 면류식품가공 무유제품가공 기상하는 생류 건과류가공		
			1 1	 ~~~
				<u> </u>
	방송기술			조저
			_ ,,, _ , , , , , , , ,	٥ ٥
		망송서비스		
			방송장비설치유지보수	
	2	4		
,,_,				
식품가공	식품가공	식품가곳		
			곡류・서류・견과류가공	
			음료주류가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식품가공연구개발	
			식품품질관리	
			수산식품저장	
		식품저장	농산식품저장	
		, , , ,	축산식품저장	
			수산식품유통	
		시포스트	농산식품유통	
		9 B 11 8		
			축산식품유통	
	_1] _1] _1] _1] _2] _3	_1  _1  _1  _1  _1 1 1	제과	조정
	제과·제빵·떡제소	제과·제빵·떡제소	제빵	조정
	_		역제조 -	조정
	2	4	24	
			출판기획	
		축파 -	편집디자인	
		20	편집	
			제작・공정관리	
	인쇄·출판		프리프레스	
			평판인쇄	
		인쇄	특수인쇄	
			후가공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추가
			칠공예	
			도자공예	조정
인쇄·목재·가구·		곳예	석공예	
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0 "	가구제작	조정
			섬유공예	<u> </u>
	공예		나전칠기	
	8 91		 단위화훼장식	
			귀금속가공	조정
			귀금속품위감정	
		귀금속・보석	보석가공	
			보석감정	
			보석디자인	
			주얼리마케팅	
	6	18	52	
			수질오염분석	
		ار ال	수질공정관리	
		수실관리	수질환경관리	
		식품저장 식품유통 제과·제빵·떡제조 4 출판 인쇄 공예	정수시설운영관리	
			대기환경관리	
			 온실가스관리	
		대기관리		
중 가 시 기 기 기	산업환경		기상기술관리	
환경·에너지· 안전			기후변화적응	
<u>የ</u> የብ		폐기문과리	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	
		-11/12 27	폐기물관리	
		人のコにココ	소음진동관리	
		公古신古世디	소음진동측정·분석평가	
			지하수관리	
		토양관리	토양관리	
			 산업환경보건	
	환경보건	화겨부거과리		
	1.0±4.	10-111	실내공기질관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위해성관리	
	. 1 . 1 . 21 . 21	31 31 41 - 1 - 1	생태복원	
	자연환경	생태복원 · 관리 -	생태관리	
			<u> </u>	
		환경경영		
	환경서비스	2000		
	1/3/1915			
		환경평가		
		광산조사·탐사	– – .	
		광물 • 석유자원개발 -		추가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생산 -		
		0.6	위해성관리 생태복원 생태관리 환경컨설팅 환경시설운영 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분석 광산지질조사 지구물리·화학탐사 석유시추 광물자원개발·생산 석유자원개발·생산 자원관리 광해로사 광해복원 광산보안관리 화약류관리 태양광에너지생산 태양열에너지생산 배양열에너지생산 병려전지에너지생산 하이오에너지생산 최양에너지생산 최양에너지생산 지열에너지생산 지원에너지생산 지원양저비스 기계안전관리 조정 전건안전관리 조정 전건안전관리 조정 전보안전관리 조정 자스안전관리 수가 방사선측정평가 수가 산업보건관리 근로자작업환경관리 비파괴검사 조정 45 수도작재배 제소재배 과수재배 최취재배 내섯재배 증자계획 육종 중자생산 종자유통보급 농존체험시절운영 농업환경개선	
		광산환경관리 -		
		광산보안 -		
	에너지·자원			
			관안 광산보안관리 화약류관리 대양광에너지생산 대양열에너지생산 연료전지에너지생산 바이오에너지생산 해양에너지생산 풍력에너지생산	
		시계세에너기새사	바이오에너지생산	
		선제 중에 디자 중인	방에너지생산 해양에너지생산 풍력에너지생산 폐자원에너지생산	
		신재생에너지생산	풍력에너지생산	
			폐자원에너지생산	
			지열에너지생산 활용	추가
		에너지관리		, ,
		11-11-1-6-91		조정
		에너지관리 -		
			<u> </u>	
	산업안전		가스안전관리	추가
			방사선측정평가	추가
		산업보건관리 -	산업보건관리	
		안집보신된다 -	근로자작업환경관리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조정
	4	12		
		작물재배 -		
			화훼재배	
			버섯재배	
	농업			
농림어업	0 1	▼ 종자생산·유통 →		
		0/102 110		
		농촌개발 -		
			농산물품질관리	추가
	축산	축산자원개발	사료생산	
		1 2 1 2/11 2	종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동물약품제조				
			수의서비스				
			수의보조				
			애완동물미용	조정			
			젖소사육				
			돼지사육				
		사육관리	가금사육				
				돼지사육			
			말사육				
		사리카이고서	성 임업종묘 산림조성 산림개발				
		전심사원조경	산림조성				
		사리 하기	산림개발				
	임업	신입된다	산림보호				
		임산물생산·가공	임산물생산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필프·종이제조 원양어업				
		산림자원조성 산림관리 임산물생산·가공 어업 양식	근해어업				
		어입	연안어업				
			내수면어업				
			해면양식				
		양식	수산종묘생산				
	수산		내수면양식				
			어업자원관리				
		수산자원관리	수산질병관리				
			염생산				
			어촌체험상품개발				
		어촌개발	어촌체험시설운영				
			어업환경개선				

#### 2) 훈련 직종별 훈련기준

훈련 직종별 훈련기준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 '자료실-훈련기준') 게재



## 다. 직업훈련 교재개발 현황

#### 1) 교 재

(단위 : 종)

				(E11 · 8/
구 분 연 도	계	이 론	실 기	이론+실기
'08	38	20	12	6
'09	38	20	14	4
'10	38	24	9	5
'11	30	17	9	4
'12	30	15	12	3
'13	30	15	10	5
'14	30	11	19	0
'15	30	17	13	0

<sup>\*</sup> 직업훈련(HRD) 교재와 학습모듈의 중복 개발 문제로 '16년부터 훈련교재 개발 중단

#### 2) 매체

(단위 : 종)

구분/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40	40	40	30	30	30	61	98	82	64
투시물	-	-	_	-	_	_	_	_	_	_
비디오테이프	3	_	_	_	_	_	_	_	_	_
CD-ROM(플래쉬)	37	40	40	30	1	_	_	_	_	_
PPT	_	_	_	-	18	19	19	15	_	_
MP4(QR)	_	_	_	_	10	7	_	_	_	_
APP(OSMD)	_	_	_	_	1	4	4	3	_	_
E-Book	_	-	_	_	_	_	38	60	_	-
동영상	_	_	_	_	_	_	_	20	82	64

<sup>\* &#</sup>x27;16년부터 직업훈련(HRD) 교재 개발·보급 사업을 NCS 기반 HRD Contents 사업으로 전환

# 6. 숙련기술기능장려 시업현황

## 가. 연도별 전국기능경기대회 현황

ط <i>د</i>	-II <del>-</del> I HJ	디원버 시시지	시시지조	참가인원	O E	ᅰᆌᆔ		
연도 대회	대회별	실시직종	(명)	계	1 위	2 위	3 위	개최장소
'08	43	50	1,833	265	51	87	127	경북
'09	44	55	2,097	295	57	98	140	광주
'10	45	56	2,151	312	59	104	149	인천
'11	46	48	1,896	272	51	89	132	충북
'12	47	48	1,876	271	51	90	130	대구
'13	48	48	1,884	275	51	91	133	강원
'14	49	48	1,884	276	51	92	133	경기
'15	50	49	1,928	285	53	97	135	울산
'16	51	49	1,916	282	53	93	136	서울
'17	52	50	1,901	282	54	94	134	제주

## 나. 연도별 지방기능경기대회 현황

연 도	실시직종	참가인원		입 상	· 자	
D I	일시역 <del>중</del>	심기단편	계	1위	2위	3위
'08	642	7,877	1,930	649	651	630
'09	701	8,905	2,166	727	728	711
'10	716	9,878	2,225	747	750	728
'11	626	9,034	1,958	658	658	642
'12	619	8,825	1,929	647	651	631
'13	48	8,468	1,951	656	660	635
'14	48	8,352	1,967	662	658	647
'15	49	9,312	2,014	672	681	661
'16	49	8,795	2,004	671	670	663
'17	50	7,681	1,997	676	668	653



## 다. 연도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현황

(단위 : 개, 명)

~ F	미의원소		(	입 상	현 횡	+	ᄌᆗᄉᅁ		(근귀·기, マ	
연 도	대회횟수	파견선수	계	금	인	동	종합순위		개 최 국	
계		945	565	304	148	113				
'67	16	9	5	2	1	2	6	스	페	인
'68	17	15	8	4	4	_	3	스	위	스
'69	18	17	8	2	5	1	3	벨	기	에
'70	19	29	13	4	4	5	2	일		본
'71	20	26	11	3	8	_	4	스	페	인
'73	21	18	12	6	4	2	2	서		독
'75	22	25	19	8	6	5	2	스	페	인
'77	23	28	21	12	4	5	1	네	델 란	드
'78	24	31	31	22	6	3	1	한		국
'79	25	33	23	17	5	1	1	아	일 랜	드
'81	26	31	24	15	6	3	1	_  		국
'83	27	32	20	15	2	3	1	오	스 트 리	아
'85	28	33	24	15	6	3	1	일		본
'88	29	34	21	12	6	3	1	오스	노트레 일리	리 아
'89	30	32	16	11	2	3	1	영		국
'91	31	32	18	13	2	3	1	녜	델 란	드
'93	32	32	20	12	3	5	2	대		만
'95	33	33	18	10	5	3	1	<u> </u>	랑	스
'97	34	35	17	10	3	4	1	스	위	스
'99	35	36	16	7	7	2	1	캐	나	다
'01	36	39	32	20	5	7	1	한		국
'03	37	39	25	11	6	8	1	스	위	스
'05	38	39	16	3	8	5	2	핀	란	드
'07	39	47	27	11	10	6	1	일		본
'09	40	45	23	13	5	5	1	캐	나	다
'11	41	43	25	13	5	7	1	영		국
'13	42	41	23	12	5	6	1	독		일
'15	43	45	25	13	7	5	1	브	라	질
'17	44	46	24	8	8	8	2	아	부 다	비



## 라. 대한민국명장・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선정

(단위 : 명, 개소)

구 분		련기술자 업 우수기능인")	우수지도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연 도	우수숙련기술자	우수산업기술인	1 1 1 1 1 1 1 1 1 1 1 1	1122 100	(구 "기능 장 려 우수사업체")
'05	99	30	5	23	3
'06	100	30	5	17	1
'07	100	-	7	12	1
'08	100	_	7	14	_
'09	100	_	4	12	_
'10	100	_	10	21	_
'11	22	_	_	24	_
'12	49	_	_	27	1
'13	50	_	_	23	1
'14	50	_	_	17	1
'15	50	_	_	18	1
'16	50	_	_	11	1
'17	47		_	11	4

※ 우수지도자는 '11년도 폐지

#### 마.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단위 : 명, 천원)

구 분 연 도	지 급 인 원	지 급 액		
'05	606	1,392,680		
'06	645	1,632,400		
'07	656	1,823,520		
'08	676	2,077,400		
'09	716	2,225,030		
'10	732	2,307,770		
'11	764	4,032,720		
'12	761	4,072,384		
'13	785	4,330,211		
'14	850	5,531,697		
'15	865	5,726,013		
'16	889	5,863,829		
'17	912	6,038,232		

※ 지급대상:대한민국명장,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관련자료

1.	직업능력개발 연혁	131
2.	직업능력개발 조직	141
3.	직업능력개발 관계법령 주요변천 현황	146
4.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178
<i>5.</i>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185
6.	직업능력개발관련 조사 현황	186



#### 1. 직업능력개발 연혁

- 1967. 1.16 직업훈련법 제정(법률 제1880호)
- 1968. 6. 25 중앙직업훈련원 설립(대통령령 제3490호 UNDP 지원)
- 1971. 12. 16 한독부산직업훈련원 설립(대통령령 제5860호 독일정부지원)
- 1973. 2. 9 정수직업훈련원 설립
- 1973. 3. 13 직업훈련법 개정(법률 제2606호)
- 1973. 10. 11 춘천·대구직업훈련원 설립(대통령령 제6895호 ADB 차관)
- 1973. 12. 31 국가기술자격법 제정(법률 제2672호)
- 1974. 12. 26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법률 제2741호)
- 1975. 4. 28 인천·광주직업훈련원 설립(대통령령 제7607호 ADB 차관)
- 1976. 8. 13 창원직업훈련원 설립(조약 제581호, 벨지움정부 지원)
- 1976. 10. 15 대전직업훈련원 설립(조약 제569호)
- 1976. 12. 31 성남직업훈련원 설립
   직업훈련기본법 제정(법률 제2973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정(법률 제2974호)
- 1977. 4. 10 직업훈련법인 청주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7. 4. 12 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 제정(대통령령 제8535호)
- 1977. 4. 21 직업훈련법인 전주·진주·구미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7. 4. 27 인천·광주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5. 4 한독부산·춘천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5. 10 성남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5. 20 직업훈련법인 순천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7. 5. 31 대전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6. 24 정수·창원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7. 23 기능대학법 제정(법률 제3009호)
- 1978. 3. 30 직업훈련법인 원주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8. 4. 3 직업훈련법인 부산·포항·울산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9. 3. 5 직업훈련법인 이리·김천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9. 3. 12 직업훈련법인 목포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9. 3. 16 직업훈련법인 홍성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9. 12. 28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3214호)
- 1980. 3. 4 직업훈련법인 영주·충주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81. 4. 8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3422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개정(법률 제3422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3422호)
- 1981. 12. 3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제정(법률 제3506호)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3507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개정(법률 제3508호)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3509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3510호)
- 1982. 3. 18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설립
   한국기술검정공단, 24개 공법인훈련원,
   창원기능대학, 직업훈련연구소를 통합운영
- 1982. 6.19 중앙직업훈련원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통합
- 1982. 11. 17 24개 기능개발센타 발족
- 1983. 12. 20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3664호)
- 1983. 12. 3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개정(법률 제3712호)
- 1985. 1. 9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정(훈령 제166호)
- 1986. 5. 9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개정(법률 제3813호)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3814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개정(법률 제3815호)
- 1987. 7. 10 7개 농민교육원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통합
- 1988. 1. 1 전남 농민교육원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통합
- 1989. 4. 1 기능장려법 제정(법률 제4123호)
- 1989. 7. 7 학교법인 한국직업훈련학원 설립
- 1991. 1. 14 기능장려법 개정(법률 제4329호)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4330호)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4331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개정(법률 제4332호)
- 1991. 3. 4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일산직업훈련원 설립
- 1991. 3. 14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안성직업훈련원 설립



- 1991. 4. 15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 1991. 9. 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릉직업훈련원 설립
- 1991. 12. 31 일산직업훈련원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
- 1992. 3. 1 인천기능대학 설립 한국기술교육대학 설립
- 1993. 12. 27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4639호)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4638호)
- 1994. 4.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상공회의소로 이관
- 1994. 7.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6개 공공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
   (기타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명칭 변경)
- 1995. 3. 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4개 직업전문학교(부산, 청주, 전주, 구미)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1995. 12. 1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4개 직업전문학교(정수, 춘천, 홍성, 목포)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1995. 12. 29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5102호)
- 1996. 12. 3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3개 직업전문학교(고창, 거창, 대구)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대구직업전문학교 → 섬유기능대학
- 1997. 3. 27 자격기본법 제정(법률 제531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제정(법률 제5315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법률 제5316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5318호)
- 1997. 10.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원
- 1997. 12. 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법률 제5474호)으로 직업훈련기본법 폐지(99.1.1 시행),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5475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개정(법률 제5476호)
- 1998. 1.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칭 변경
- 1998. 2. 5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 설립
- 1999. 1. 1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을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명칭 변경
- 1999.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제천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5733호) 제정, 공포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 조정실로 이관('99.3.18)



- 1999. 2. 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법률 제5880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 법률 제정(법률 제5882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5890호)
- 1999. 3. 1 학교법인 한국직업훈련학원을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명칭 변경
- 1999. 5. 1 서울시립기능대학을 서울시로부터 인수하여 학교법인 기능대학 산하 서울정수기능대학 강서분교로 편입
- 2000.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울산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2000. 3. 7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를 정선직업 전문학교로 개편 및 산하 4개 지방사무소 신설 (부산북부, 강릉, 포항, 목포)
- 2000. 11. 30 항공기능대학 설립
- 2001. 12. 6 아산정보기능대학 설립
- 2002. 12. 10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설립
- 2003. 5. 24 부산디지털정보기능대학 → 부산기능대학(교명변경)
- 2005. 7.15 "공공훈련인프라혁신방안"수립,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 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통합 등 추진
- 2005. 11. 28 바이오기능대학 설립 인가
- 2005. 12. 30 한국산업인력공단법(법률 제7824호) 및 기능대학법 개정 인력공단의 훈련기능 폐지, 직업능력개발 시설을 기능대학으로 이관
- 2006. 3. 1 기능대학(24개)과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21개)를 통폐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 출범(11개 대학 43개 캠퍼스), 2개(충남, 충북) 직업전문학교 폐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평생능력개발 전문기관으로 기능 개편
- 2006. 3. 31 한국고용정보원(구, 중앙고용정보원) 별도 법인화
- 2006. 9. 1 폴리텍대학 3개 캠퍼스(강원, 전남, 한백창원)를 인근 캠퍼스(춘천, 광주, 창원)와 통합 운영(11개 대학 40개 캠퍼스)
- 2008. 1. 1 국가전문자격시험 통합관리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신설
- 2008. 3. 6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 명칭 변경



- 2008. 9.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운영(대구·광주지역)
- 2008. 12.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등 개정
- 2009. 3. 1 고용노동연수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통합
- 2009. 3. 1 지자체협약기관 기능전환 계획 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2개 캠퍼스(정선, 남원) 폐지(11개 대학 38개 캠퍼스)
- 2009. 3.1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국실시
- 2009. 6. 1 한국폴리텍대학 남원연수원 설치·운영
- 2010. 3. 1 지자체협약기관 기능전환 계획 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3개 캠퍼스(제천, 김천, 거창) 폐지(11개 대학 35개 캠퍼스)
- 2010. 3.16 국가가격시험 출제발간 센터 준공
- 2010. 4. 4 한국직업방송 개국
- 2010. 5. 3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1033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개정(법률 제10338호)
- 2010. 9. 6 직업능력지식포털 개통
- 2010. 9. 2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별칭 공모(내일배움카드제)
- 2011. 2. 28 지자체협약기관 기능전환 계획 에 따라 고창캠퍼스 폐지 (11개 대학 34개 캠퍼스)
- 2011. 9. 15 개인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통합
- 2012. 2.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1272호)
- 2012. 3. 2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개교
- 2012. 9. 25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수립
- 2013. 5. 10 '13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선정자 위촉(152명)
- 2013. 5. 21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위원회 개최
- 2013. 10. 10 5개 사업주단체, 11개 대기업에서 일학습병행제로 양성된 인력의 스펙초월 채용, 승진·임금 등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약속(MOU)
- 2013. 10. 23 부산, 경기 등 전국 14개 지역에 '지역·산업HRD위원회' 선정
- 2013. 12. 12 제2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위원회 개최
- 2014. 3.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개원
- 2014. 4. 1 노사정이 함께하는 지역·산업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협력 선언
- 2014. 4. 2 고졸인재 잡 콘서트 개최(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합동 홍보관 운영)



- 2014. 4 고용부 內 일학습병행팀 구성
- 2014. 5. 20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12625호)
- 2014. 6. 20 제3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위원회 개최
- 2014. 7. 21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학습모듈 통합 포털사이트(www.ncs.go.kr) 구축
- 2014. 9. 2 ~ 9. 12 직업능력의 달 행사 실시
- 2014. 9 '산업현장 일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 실시,
   '직업능력개발 혁신 실천 3개년 계획 수립
- 2014. 12. 19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 종목 선정 공고(기계 종목 등 15개 종목)
- 2014. 12. 22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 방안 VIP 보고대회
- 2014. 12. 31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 2015. 1. 20 숙련기술장려법 개정(법률 제13046호)
- 2015. 2. 12 '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
- 2015. 3.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9개교 시범 운영
- 2015. 3. 6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훈련과정 지정공고(27개 과정)
- 2015. 3. 12 「NCS기반, 공공기관 채용 JOB Concert」개최
- 2015. 3. 12 취업준비생을 위한 능력중심채용 사이트(onspec.ncs.go.kr) 개설
- 2015. 3. 24 공공기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MOU 체결
- 2015. 3. 25 ~ 26 고졸인재 '잡 콘서트' 개최(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 및 일학습병행제 특별홍보관 운영)
- 2015. 3. 31 장기현장실습(IPP)형 일학습병행제 대학 선정
- 2015. 4.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
- 2015. 4.17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훈련과정 추가 지정공고(5개 과정)
- 2015. 4. 29 취업준비생을 위한 능력중심채용 상설교육과정 개설
- 2015. 4 ~ 7 11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정(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ISC) 조직·관리체계 구축)
- 2015. 5. 15 제4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위원회 개최
- 2015. 6. 8 '15년 스펙깨기 능력중심 채용박람회 개최
- 2015. 6. 16 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선정
- 2015. 7. 10 직업훈련과정 '15년도 상반기 통합심사 결과 공고
- 2015. 7. 29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사업단 선정
- 2015. 8. 일학습병행정책과 신설



- 2015. 8. 1 훈련기관 품질관리를 위한 훈련기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 2015. 8. 10 '16년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 종목 선정 공고(30개 종목)
- 2015. 8. 11 ~ 16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종합우승)
- 2015. 9. 1 ~ 24 직업능력의 달 행사 개최
- 2015. 9. 4 '15년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개최
- 2015. 9.17 일학습병행제 우수기업 경진대회
- 2015. 9. 22 능력중심채용 컨퍼런스 개최
- 2015. 10. 5 ~ 12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2015. 10. 6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2015. 10. 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가 선정
- 2015. 11. 2 '15년~'16년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149개 과정)
- 2015. 11. 24 공공기관 능력중심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2015. 12. 3 한-호주 자격상호인정 전문가 회의 개최
- 2015. 12. 1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2015. 12. 24 '15년 제1회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합격자 발표(51명)
- 2015. 12. 30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 결과 공고(62개 과정 선정)
- 2015. 12. 31 직업훈련과정 '15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결과 공고
- 2016. 1. 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3902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13899호)
   숙련기술장려법 개정(법률 제13907호)
- 2016. 2. 1 ~ 6.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NCS 기반 자격 보완
- 2016. 3. 15 미래산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발굴 전문가회의 구성
- 2016. 3. 28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 대국민 선포식 개최
- 2016. 4. 1 제5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위원회 개최
- 2016. 4. 6 ~ 4. 11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서울)
- 2016. 4. 7 산학일체형도제학교 비전선포식 개최
- 2016. 4. 15 '16년도 하반기 우영 훈련과정 통합심사 공고
- 2016. 5. 1 수용자 중심의 직업훈련정보제공시스템 개편 추진
- 2016. 5. 4 과정평가형 자격 기업운영 확산 MOU 체결(현대자동차 등 6개사)
- 2016. 6. 2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2016. 6.30 '16년도 하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 인정 공고
- 2016. 7. 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



- 2016. 7. 20 '16년도 하반기 운영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과정 인정 결과 공고
- 2016. 7. 27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개정
- 2016. 8. 8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군 교육·훈련과정 연계 MOU 체결(육군본부)
- 2016. 8.18 산학일체형도제학교 확대 발전 방안 수립 발표
- 2016. 8. 30 제6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위원회 개최
- 2016. 9. 1 ~ 23 직업능력의 달 행사 실시(직업능력개발훈련 유공 포상 포함)
- 2016. 9. 5 ~ 12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총 49개 직종에 1,916명이 참가, 282명 입상)
- 2016. 9. 5 일학습병행제 우수기업 경진대회
- 2016. 9. 30 '16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공표(HRD\_Net) '17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
- 2016. 10. 5 '17년도 상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함심사 공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 2016. 10. 25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 공고
- 2016. 11. 2 IPP형 일학습병행제 대학 선정
- 2016. 11. 22 '한국형 NQF(안) 관련 관광숙박 분야 업무협약 체결
- 2016. 11. 29 '1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훈련기관 선정 공고
- 2016. 12. 15 제2차 국가인력양성협의회 개최
- 2016. 12. 20 '17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과정 선정결과 공고
- 2016. 12. 26 '1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 우수훈련기관 선정 공고
- 2016. 12. 27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14497호)
- 2016. 12. 28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심사 결과 공고
   '16년도 하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함심사 인정 공고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민간 선도훈련기관 공모
- 2016. 12. 30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개정
- 2016. 12. 31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상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현장훈련 실시(상시)
- 2017. 1. 3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7. 1. 10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완료
- 2017. 2. 13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민간 훈련기관·훈련과정 선정



- 2017. 2. 22 기술융합형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출범식
- 2017. 3. 8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 2017. 3. 22 ~ 23 2017 고졸인재 잡 콘서트 개최
- 2017. 3. 2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 수요자 맞춤형 직업능력포털 HRD-Net 서비스 정식 개시
- 2017. 3. 28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발표
- 2017. 4. 4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공고
- 2017. 4.1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시 개정
- 2017. 4. 27 '16년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고시
- 2017. 5. 3 대한민국명장 선정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마련
- 2017. 5. 31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와 발전 세미나 개최
- 2017. 6. 28 '17년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발표
- 2017. 6. 30 '17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자단 발대식 개최
- 2017. 7. 5 평등한 기회 ·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
- 2017. 8. 31 '17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발표
- 2017. 9. 1 제21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18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
- 2017. 9. 8 일학습병행제 우수기업 경진대회
- 2017. 9. 15 '17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추가 선정
- 2017. 9. 22 제44회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 2017. 9. 28 일학습병행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17. 10. 23 IPP형 일학습병행제 신규 운영대학 선정
- 2017. 10. 31 P-Tech 운영대학 신규 선정
- 2017. 11. 14 '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훈련기관 공모
- 2017. 12. 12 '17년 '이달의 기능한국인' 수기집 발간
- 2017. 12. 1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 2017. 12. 1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 2017. 12. 20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발표
- 2017. 12. 28 '18년 상반기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발표
- 2017. 12. 29 '17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훈련기관 선정 공고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심사 결과 공고
- 2017. 12. 31. IoT통신망구축 등 미래유망분야 포함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추가 개발



- 2018. 1. 8 '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과정 선정
- 2018. 1.12 직업훈련 부정수급 방지대책 발표
- 2018. 2. 7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 2018. 3. 22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18년~22년) 발표
- 2018. 3. 26 '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
- 2018. 4. 5 실업자 직업훈련 수기집『내;일을 그리다』발간
- 2018. 4.13 '18년 하반기 운영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신청 공고
- 2018. 4. 18 '18년 하반기 운영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신청 공고
- 2018. 4. 23 '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추가 공모
- 2018. 5. 10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공모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사업 참여사업장 공모
- 2018. 5. 30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 개최
- 2018. 5. 31 '17년 신규 개발한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



## 2. 직업능력개발 조직

### 가.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직업능력평가과 인적자원개발과 일학습병행정책과 ▲ 직업능력개발 정책 ▲ 블라인드채용 ▲ 사업주 ▲ 일학습병행제 기획 및 수립 능력개발지원 ▲ 재학생 단계 ▲ NCS 개발·활용 ▲ 공공훈련기관 운영 ▲ 구직자훈련 일학습병행제 ▲ 국가기술자격 ▲지역·산업 맞춤형 ▲ 직업능력개발 ▲ P-TECH ▲ 숙련기술장려 인력양성체제 구축 심사·평가 운영 ▲ 특성화고 ▲일-교육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 ▲훈련 교·강사 양성 현장실습 지원 자격의 연계 인력양성

- (본부) 직업능력정책과, 직업능력평가과, 인적자원개발과, 일학습병행정책과
- (지방) 86개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담당
- 직업능력정책국 인원 현황(정원)

('18. 7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잍	! 반 직(별	성직 포함		'에 기교,	
구 분	합계	고위 공무원단	3.4~ 4급	4.5~ 5급	6급 이하	사무 운영직	기타
직업능력정책국	47	1	4	24	17	1	3*
직업능력정책과	14	1	1	6	5	1	1
직업능력평가과	12	_	1	8	3	_	1
인적자원개발과	13	_	1	6	6	_	_
일학습병행정책과	8	_	1	4	3	_	1

※ 기타: 조사·연구위원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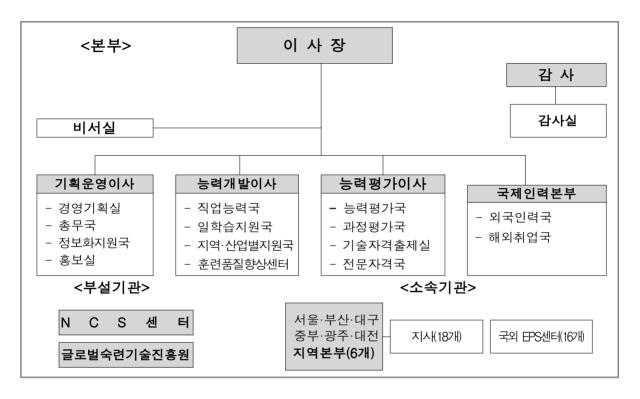
###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 ○ 조 직

- 본 부 : 이사장, 1감사, 3이사, 1본부, 13실·국(47팀)

- 부설기관 : 1센터·1원(8팀)

- 소속기관 : 6지역본부, 18지사(93팀), 16국외EPS센터



#### ○ 정·현원

('18. 7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별정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계)				1,352	46	168	291	367	314	166
일반직	1 205	5	8	1,159	38	141	241	293	280	166
능력개발직	1,365	5	0	104	1	9	23	37	34	0
출제연구직				89	7	18	27	37	0	0
현원(계)				1,375	38	168	261	319	469	120
일반직	1 201	2		1,203	33	144	224	272	410	120
능력개발직	1,381	3	3	98	0	7	12	20	59	_
출제연구직				74	5	17	25	27	_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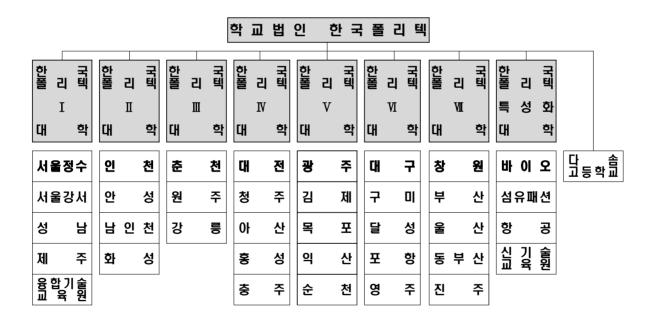
<sup>※</sup> 별도정원 해당인원 및 무기계약직 제외, 시간선택제 직원 전일제 환산 기준



- 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법인(본부): 이사장, 이사, 3국, 1단, 1센터, 1실, 9팀, 1인재원



○ 소속학교: 8대학(34캠퍼스), 2교육원, 1다솜고등학교



#### ○ 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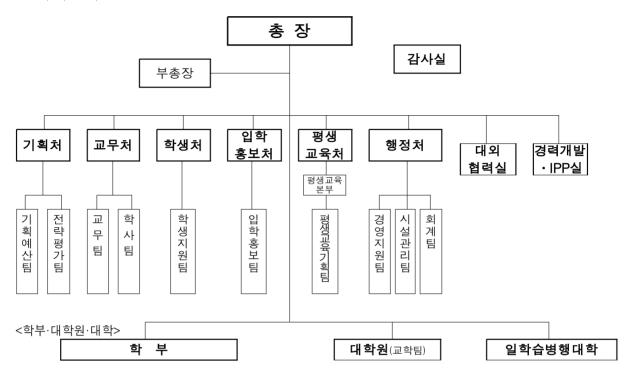
('18, 7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임원	학장	지역 대학장	교장	교감	대학 교원	<del>중등</del> 교사	일반직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	무기 계약직
정원	2,664	2	8	27	1	1	1,216	28	473	115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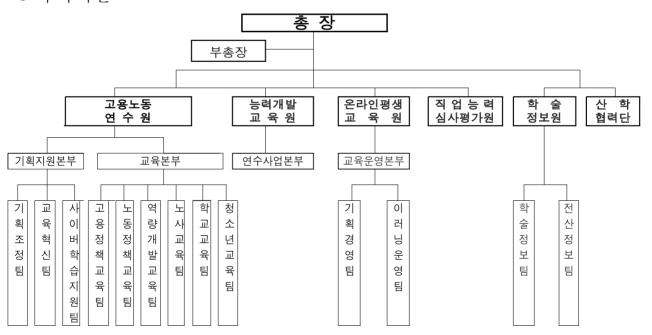


### 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대학본부



#### ○ 부속시설



#### ○ 인력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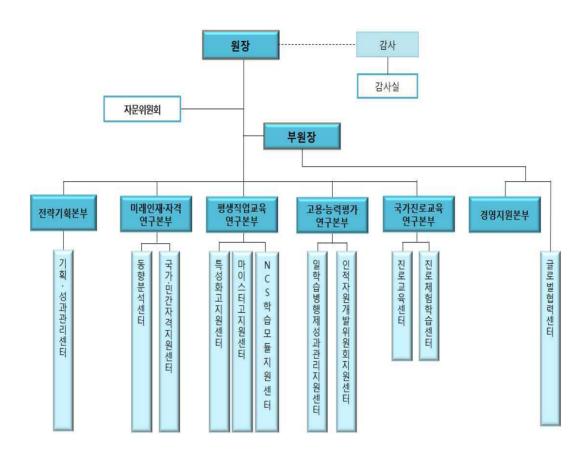
('18. 7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총장	교수	조교	직원
정원	531	1	218	42	270



## 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 직 : 6본부 1실



#### ○ 정 원

('18. 7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임원	연구직	전문직	행정직	업무직	
정원	148	1	113	5	19	10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별도정원 2명(연구직 2명) 제외



# 3. 직업능력개발 관계법령 주요변천 현황

법 링	병 별	주 요 내 용
직 업 훈 련 법	'67. 1. 16 제정 법률 제1880호	○ 근로기준법 · 산업교육진흥법 등에 의해 분산적으로 실 시해오던 직업훈련을 일원화하여 국가적인 정식제도로 제정
	'73. 3. 13 개정 법률 제2606호	○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교사훈련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제정법을 보완
직 업 훈 련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74. 12. 26 제정 법률 제2741호	○ 일정규모이상 사업주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양성토록 하는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제 규정
직 업 훈 련 기 본 법	'76. 12. 31 제정 법률 제2973호	○ 직업훈련법 과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을 통·폐합 ○ 직업훈련분담금제를 설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선택적으로 규정
	'79. 12. 28 개정 법률 제3214호	○ 직업안정촉진을 위해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 양성훈련 외에 전적훈련도 의무에 포함
	'81. 4. 8 개정 법률 제3422호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법률개정 (노동청 → 노동부)
	'81. 12. 31 개정 법률 제3507호	<ul> <li>○ 직업훈련의 원칙에 여성 · 준고령자 및 신체장애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중요성 포함</li> <li>○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직업교사외에 사무 · 서비스직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에까지 확대</li> <li>○ 전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재해위로금등의 지급근거 규정</li> <li>○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 향상 및 재훈련도 의무에 포함</li> </ul>
	'86. 5. 9 개정 법률 제3814호	○ 훈련의무부과기준의 변경 ○ 훈련의무인정범위 확대 ○ 협동훈련제도의 법적근거 신설 ○ 분담금 자진신고·납부제도 도입
	'91. 1. 14 개정 법률 제4331호	<ul> <li>○ 직업훈련과정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재훈련으로 구분하여 직무능력향상훈련체제로 개편</li> <li>○ 직업훈련방법은 산업현장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집체훈련, 현장훈련 또는 산학협동훈련으로 개편</li> <li>○ 인력수급상 직업훈련이 특히 필요한 산업은 사업내 직업훈련의 우선적실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분담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납부하게 하는 제도 신설</li> </ul>



법 링	별	주 요 내 용
직 업 훈 련 기 본 법	'93. 12. 27 개정 법률 제4639호	<ul> <li>○ 향상·재훈련 또는 단기양성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실시 기관이 자체특성에 맞는 교재를 검정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편찬·사용</li> <li>○ 신기술·신직종훈련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교사 면허가 없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li> <li>○ 직업훈련법인의 보호 ·육성시책 강구</li> <li>○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 등 직업훈련시설의 명칭 사용 체계화</li> </ul>
	'97. 12. 24 개정 법률 제4639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으로 직업훈련기본법 폐지
근 로 자 직 업 훈 련 촉 진 법	'97. 12. 24 제정 법률 제5474호	<ul> <li>○ 직업훈련의무제등 각종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하여 민간훈련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영리법인의 훈련사업에의 참여, 훈련기관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으로 훈련시장에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민간주도의 직업능력개발기반을 조성</li> <li>○ 공공훈련을 수요자중심체제로 전환, 기업 근로자 수요에따른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민간훈련에 대한 기술·정보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실직자, 중고령자등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훈련의 역할을 강화</li> <li>○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향상·전직훈련등 다양한 과정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생산직위주의 기능훈련을 서비스직 분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인력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li> </ul>
	'01. 3. 28 개정 법률 제6455호	<ul> <li>○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들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실시 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li> <li>○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훈련비용 지원등에 반영</li> </ul>
근 로 자 직 업 능 력 개 발 법	'04. 12. 31 개정 법률 제7298호	<ul> <li>○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면개정</li> <li>○ 훈련의 취약계층(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li> <li>○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구성되는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 및 훈련대상등 근거 마련</li> <li>○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교육훈련실시경력 등을 갖추어야 함</li> <li>○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li> </ul>
	'06. 12. 21 개정 법률 제8073호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현행 1년간에서 2년간으로 연장



	법	랻	병 별	주 요 내 용
로 력			'07. 1. 26 개정 법률 제8294호	<ul> <li>○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합리화</li> <li>○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훈련시설 지정을 받는 경우 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 완화</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해산절차 개선</li> </ul>
			'07. 12. 27 개정 법률 제8814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
			'08. 12. 31 개정 법률 제9316호	<ul> <li>○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 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li> <li>○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에 대한 서류 보존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li> </ul>
			'10. 5. 31 개정 법률 제10337호	<ul> <li>○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확화하고, 기본계획수립 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li> <li>○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li> <li>○ 직업능력개발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함</li> <li>○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기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li> <li>○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함</li> </ul>
			'12. 2. 1 개정 법률 제11272호	<ul> <li>○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li> <li>○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여 지정취소의 기준을 합리화함</li> <li>○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li> </ul>
			'12. 6. 1 개정 법률 제11461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작성· 보존 근거 마련
			'13. 3. 23 개정 법률 제11690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수정



		법		랻	별	주 요 내 용
그 능	로 력	자 개	직 발	업 법	'14. 5. 20 개정 법률 제12627호	○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실용전문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자율성을 부여
					'15. 1. 20 개정 법률 제13042호	<ul> <li>○ 사업주 훈련 우대 대상 사업에 준고령자/고령자가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추가</li> <li>○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수정 (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li> </ul>
					'16. 1. 27 개정 법률 제13902호	<ul><li>능력중심사회 구축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li><li>지역・산업계 주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역량체계 (훈련・자격・학력 연계)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 추진 근거 마련</li></ul>
						<ul> <li>직업능력개발훈련 관리를 체계화하고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정훈련을 방지</li> <li>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산업수요를 반영하여</li> </ul>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도록 함 ○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 관련 훈련시설에 대한 승인을 삭제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으로 일원화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에서 「건축법」상 용도 적합요건을 폐지하고 「건축법」 등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취소하도록 함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금지 대상 축소 ○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 기능대학의 부설학교 운영 근거 마련 - 기능대학 학점인정 범위 및 초빙교원 임용대상 확대 - 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근 훈 시		자 촉 행		정기 최기 전이	'01. 7. 30 개정 대통령령 제17327호	<ul> <li>○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li> <li>- 실업자훈련이나 재직자훈련 등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훈련인원이 총훈련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과 기준훈련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당해 기준훈련직종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 국가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에 대하여 훈련기준을 정함</li> <li>- 훈련기준에 훈련목표, 교과목 및 그 내용, 시설 및 장비, 훈련기간 및 시간(3월 이상, 350시간 이상), 훈련방법, 훈련교사, 적용기간등을 포함하도록 함</li> <li>○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 훈련기법 및 매체개발 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조사연구사업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에 대한</li> </ul>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O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요건 중 출연재산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밭	1	릳	별 별	주 요 내 용
						<ul> <li>○ 사업주에 대한 지원범위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확대함</li> <li>○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훈련기간이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과정에 한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훈련방법 등에 따라훈련과정의 지정요건을 달리 정할수 있도록함</li> <li>○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훈련기관및과정에 대해서는훈련비추가지원,실업자훈련의 우선실시,훈련시설및장비구입 비용의 우선 융자・지원을할수 있도록함</li> </ul>
그 등 시	· 력 개 발 법 대통령령 제18911호	<ul> <li>○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표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제 5조)</li> <li>○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요건 중 훈련기간・시간 요건을 현행 3일 20시간에서 2일 16시간(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함</li> <li>○ 자비훈련생이 훈련비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훈련비 반환사유 및 반환사유별 반환금액을 정함</li> <li>○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li> <li>○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 중 정부지원 훈련규모 비용을 삭제하고 시설, 인력, 장비 등 훈련실시 능력으로 개편함</li> </ul>				
					'07. 4. 26 개정 대통령령 제20028호 '08. 11. 11 개정 대통령령 제21111호	미만으로 정함 ○ 해산훈련법인의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규정 ○ 훈련을 받은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그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O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경력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갖춘 사업주단체의 경우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실시 경력 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O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시된 훈련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		5	ġ 별	주 요 내 용
그 등 시	능 력 개 발 법	법	'09. 3. 31 개정 대통령령 제21398호	<ul> <li>○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근로자 본인의 신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하고,</li> <li>-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며,사후에 노동부장관이 그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훈련수요를 맞출 수 있는 훈련과정을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li> <li>- 그 훈련과정의 인정요건과 훈련절차에 대하여 직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li> </ul>		
					'10. 8. 25 개정 대통령령 제22356호	<ul> <li>○ 대한상공회의소의 법적지위를 민간훈련기관으로 명확화</li> <li>○ 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선정・변경토록 하고, 훈련기준을 적용하되 훈련기준이 없거나 산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li> <li>○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li> <li>○ 기능대학법 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통합함에 따라기능대학법 시행령 내용을 이 영에 반영하고 법체계 개편에따른 조문 순서 등 변경</li> </ul>
					'11. 4. 6 개정 대통령령 제22890호	○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11.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23467호	<ul> <li>○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추가</li> <li>○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으로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주단체 등 산업계 요구, 채용예정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 등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도 포함</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 시 훈련기관의 훈련실시능력 및 훈련성과 등 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li> </ul>
					'12. 6. 5 개정 대통령령 제23839호	<ul> <li>○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li> <li>○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에 필요한 교원 및 교사(校舍) 확보 기준을 마련</li> <li>○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에게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li> </ul>
					'13. 3. 23 개정 대통령령 제24447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수정
					'14. 12. 9 개정 대통령령 제25840호	<ul> <li>○ 직업능력개발훈련 도중 근로자가 훈련을 포기하는 경우 훈련비 반환 금액을 일할금액으로 변경</li> <li>○ 훈련비의 반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과태료 부과기 준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li> </ul>



		법		5	별		주 요 내 용
그 등 시	능 력 개 발	개 발	발	전 돼 恐		30 개정 제26808호	<ul> <li>사업주나 직업능력개발단체 등이 실시하는 원격훈련이나 원격이 포함된 혼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기간 요건을 달리 정하여 인정</li> <li>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직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없앰</li> </ul>
						26 개정 제27393호	<ul> <li>○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제6조제2항제13호 신설)</li> <li>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li>○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조의4신설)</li> <li>-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대 4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과 위원 중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 내 사업주,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 또는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함.</li> <li>- 심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解囑) 사유를 정함.</li> <li>-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의 위탁(제52조제4항 신설)</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훈련실시 능력 및 훈련성과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함.</li> </ul>
						27 개정 제27968호	<ul> <li>○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기간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또는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학위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li> <li>○ 국가기술자격증 외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이 있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원활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함</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간을 각각 1년 이상으로 명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의 형평을 도모</li> </ul>



법 링	병 별	주 요 내 용
근 로 추 진 법	'01. 11. 5 개정 노동부령 제178호	<ul> <li>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함</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li> <li>- 훈련시설의 건축물대장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훈련시설의 평면도</li> <li>-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의 훈련실적을 증빙하는 서류</li> <li>-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li> <li>-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지정일로부터 1년마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실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li> <li>- 보고내용, 보고방법 등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함</li> <li>○ 영 12조 내지 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 훈련대상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구직등록의 기준을 정함</li> <li>○ 법 제1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해지, 시정요구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설정함</li> <li>○ 의원 중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50/100 미만이어야 하고, 감사는 임원과 친족관계가 없어야함</li> <li>○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 시정명령 및 인정 또는 지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설정함</li> <li>○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변경신청기한을 훈련개시 14일전에서 7일 전까지로 완화함</li> <li>○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과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을 훈련개시 14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완화함</li> </ul>
	'05. 7. 1 개정 노동부령 제225호 '07. 5. 1 개정 노동부령 제273호 '09. 3. 10 개정 노동부령 제315호	<ul> <li>○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기간의 완화(안 제8조)</li> <li>- 훈련과정의 인정신청기간은 훈련개시 14일 전에서 훈련개시 7일전으로, 변경인정 신청기간은 변경예정일 7일전에서 5일 전으로 완화함.</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의 처분기준(안 제17조 및 별표 4)</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함</li> <li>○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안 제23조 내지 제27조)</li> <li>-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지급기준 등을 정함.</li> <li>○ 부정수급 훈련비 등에 대한 추가징수 규정</li> <li>○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구성 규정</li> <li>○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li> </ul>
	, <b>포승</b> 구당 제시3오	위단의 대용・정도가 성미단 성무에는 행정저문기문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법 경	형 별	주 요 내 용
근 로 자 직 업 능 력 개 발 법 시 행 규 칙	'09. 4. 1 개정 노동부령 제320호	<ul> <li>○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하되, 저소득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li> <li>○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 등이 3년간 보존해야 할 서류를 훈련생 출석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li> </ul>
	'09. 5. 12 개정 노동부령 제324호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시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민원처리를 활성화 및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자적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함
	'10. 8. 3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5호	<ul> <li>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li> <li>법률에서 기능대학법 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li> <li>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함</li> </ul>
	'11. 3. 1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행한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 제한기간을 차등화하고,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정수급 금액과 규모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차등화 함
	'11. 12. 3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3호	<ul> <li>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기회 확대</li> <li>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의 훈련과정 인정 권한을 현재의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li> </ul>
	'12. 6. 8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57호	○ 실업계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을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16. 7. 26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62호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훈련법인정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해당 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승인취소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2회 위반 시부터 승인취소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7. 3. 27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84호	<ul> <li>○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사람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을 총 74일 이내에서 총 60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고</li> <li>○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해당 훈련 기준 제안서 서식 정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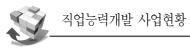
법 링	ġ ġ	주 요 내 용
직 업 훈 련 촉 진 기 금 법	'76. 12. 31 제정 법률 제2974호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81. 12. 31 개정 법률 제3815호	<ul><li>기금의 용도 확대</li><li>(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대한 출연금)</li></ul>
	'86. 5. 9 개정 법률 제3815호	○ 기금의 용도 확대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직 업 훈 련 촉 진 기 금 법 폐 지 법 률	'99. 2. 8 제정 법률 제5882호	<ul><li>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li><li>직업훈련촉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고용 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 승계</li></ul>
고 용 보 험 법	'93. 12. 27 제정 법률 제4644호	○ 피보험자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96. 12. 30 개정 법률 제5226호	<ul> <li>○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 신설</li> <li>○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기능・기술장려 사업 등을 실시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ul>
		<ul> <li>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li> </ul>
	'98. 2. 20 개정 법률 제5514호	○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 능력의 개발 ·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ul><li>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li></ul>
		<ul> <li>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된 것의 반환을 명하거나 또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li> </ul>
	'05. 12. 7 개정 버를 제공705호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
	법률 제7705호	○ 사업목적에서 경기불활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08. 3. 21 개정 법률 제8959호	<ul> <li>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 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li> </ul>



	밭	1	령	별	주 요 내 용
고 용	<b>,</b> 보	허	법	'08. 12. 31 개정 법률 제9315호	<ul> <li>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대부 실시</li> <li>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에게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li> <li>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함</li> </ul>
				'11. 7. 21 개정 법률 제10895호	<ul> <li>○ 50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적용</li> <li>-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을 신설</li> <li>○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근로소득(보수)으로 변경</li> <li>○ 고용안정사업 또는 다른 지원금·장려금간 중복수급 방지 등 근거 마련</li> <li>○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특례규정 신설</li> </ul>
				'13. 6. 4 개정 법률 제11864호	<ul> <li>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離職)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li> </ul>
				'16. 12. 27 개정 법률 제14496호	<ul> <li>고령자・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 지원(제27조).</li> <li>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li> <li>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li> </ul>
고 용	왕 행	험	법령	'95. 4. 6 제정 대통령령 제14570호 '96. 3. 9 개정 대통령령 제14935호	<ul> <li>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li> <li>○ 고령자수강장려금의 지원범위를 교육훈련기관외에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까지 확대</li> </ul>
				'97. 5. 8 개정 대통령령 제15367호	<ul> <li>아 사업내직업훈련 승인 · 교육훈련기관 지정업무를 지방노동 관서에 위임</li> <li>이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 주에 대하여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비로 창업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장려금 지급</li> <li>○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 장비구입 비용 대부</li> <li>○ 수강장려금 지급대상을 50세 이상자외에 고용조정으로</li> </ul>
				'97.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15587호	○ 구강장려금 시급대상을 50세 이상사외에 고용소성으로 인한 이직예정자까지 확대



		법		 령 별	주 요 내 용
고 시	용	보 <sup>1</sup> 행	험 법 령		○ '98. 7. 1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3사업 전면 확대
				'98. 10. 1 개정 대통령령 제15902호	○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99. 7. 1 개정 대통령령 제16464호	<ul> <li>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 사유확대</li> <li>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함</li> </ul>
				'00.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7090호	<ul> <li>고용유지훈련 지원수준 상향조정</li> <li>지급임금의 1/2~2/3 → 2/3~3/4</li> <li>수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li> <li>도산 · 폐업 등으로 이직예정자 또는 50세 이상 근로자 → 비자발적이직예정자, 정보화기초과정수강 피보험자)</li> </ul>
				'02.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7853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액 상향조정(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 → 100분의 270)
					○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30일 이상 → 14일 이상)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이직예정자 · 50세 이상자 → 50인 미만 중소기업피보험자) ○ 능력개발비용 대부제도 신설
				'04. 2. 25 개정 대통령령 제18165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피보험자가 아닌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50인미만→300인미만, 50세이상→40세이상)
				'04. 10. 1 개정 대통령령 제18555호	<ul> <li>○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150인미만→150인 미만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14일이상 60시간 이상→7일 이상 30시간 이상)</li> <li>○ 교대제 적용받는자 지원(기준외 훈련 80~100%→90~110%)</li> <li>○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액상향조정(개산보험료의 270%→360%)</li> <li>○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li> <li>-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li> <li>-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환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li> </ul>
				'05. 6. 30 개정 대통령령 제18911호	<ul> <li>○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한 지원・융자근거 마련</li> <li>○ 최소인정훈련시간을 3일 이상 20시간 이상에서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기업 1일, 8시간 이상)으로 완화</li> </ul>
					○ 훈련시설 지정요건 훈련실적에서 인력·시설·장비 등 능력요건 중심으로 개편 ○ 훈련비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규정



		법		롣	ġ 별		주		요	내	용	
고 시	용	보 행	험	법 령		26 개정 제19103호	○ 근로자수강자 ○ 사업주 및 근 사업에 대한	로자의	핵심직-			
						30 개정 제19246호	<ul> <li>비정규직을 대 추가 지원히 책정</li> <li>사업주가 구축 비용지원한도</li> </ul>	ト고 근 직자를	로자수? 대상으로	앙지원금의 르 훈련을	의 지원수준 실시하는	돈을 높게 경우 훈련
						23 개정 제19738호	○ 근로자능력기	배발카드	트에 의한	직업능력	벽개발훈련	수강지원
						. 3 개정 제21152호	○ 훈련을 받는 사용하여 훈 - 노동부장관 훈련을 실/ 과정 선택의 투명성을 높 개발계좌카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노동부장관 지급할 수	련비용 이 구 <sup>2</sup> 시함에 I 폭을 든이기 드(신용 하고, <sup>1</sup> · 훈련· 이 그	을 결제 한 경 있어서 넓히고 한 없이고 한 없이고 한 없이고 한 분들이를 할 기 하는 등을 할 시한 한 분들을 할 기 하는 등을 할 기 하는 하는 등을 할 기 하는 등을 할 기 하는 하는 등을 할 기 하는 들을 할 기 하는 등을 할 기 하는 을 할 이 되었다.	할 수 있. 기업을 촉 취업훈련 직업능력, 환련을 받 사용하여 발급한 하는 기곤	도록 조치 진하기 위 현을 받는 : 개발훈련 자 는 자가 근 I 훈련비용 신용카드합	하여 취업 자의 훈련  원제도의 '로자능력 을 결제할 업자가 그 경우에는
						12 개정 제21348호	○ 직업능력개발 대상자 및 질 - 직업능력개 기간제근로 실업자 중에 장관이 정호 정하고 예신	설차 등 발 훈련 자, 단 l서 소 라여 고	!을 받는 기간근로 득수준, 다 시하는 신	저소득 : E자, 파건 I부실적 등 선정기준이	피보험자등 연근로자 5 등을 고려하 네 해당하는	의 범위를 및 이직한 여 노동부 · 사람으로
						31 개정 제22603호	○ 대기업에 대 기업 사업주기 대체인력 인접 ○ 근로자수강지 - 이직예정자기 할 수 있도 근로자를 △	가 유급 건비를 비원금의 가 훈련 록 개정	휴가훈련 추가 지원 시 지원조 수료 후 정하고 40	을 실시하 원할 수 있 건 및 지 · 90일 이 )세 이상	하고 대체인 있도록 지원 원대상 일 내 이직할 인 자 및 2	력 고용시 근거 신설 부 변경 경우 지원 기간제 등
						15 개정 제23139호	○ 개인 지원 직( - 근로자능력 부분을 직압 - 근로자능력/ 근로자수강	업능력기 개 발카 업능력기 개발카 <u>대</u>	배발사업 통 드제·근로 배발계좌제 =제의 직	통합(영 제 로자 수강 데로 흡수 무수행능	43조, 제443 ·지원금의 <sup>:</sup> ··통합	5, 제47조) 전직 지원
						13 개정 제23513호	○ 자영업자 직' 변경(영 제43 - 개정법 시형 피보험기간	3조) 행 이후	임의가	입한 자영	영업자는 62	개월 이상



		법		롣	병 별	주 요 내 용
고시	90	보 행	정	법 령	'13. 4. 22 개정 대통령령 제24514호	<ul> <li>○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li> <li>○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일자리나누기 방식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규정</li> </ul>
					'13. 11. 20 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 "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13. 12. 24 개정 대통령령 제25022호	<ul> <li>○ 일정한 경우 임금·설치비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출에 대한 지원 확대</li> <li>○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급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기준 마련</li> <li>○ 고용촉진시설 지원 기준 구체화</li> <li>○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을 통해 지원금 반환 명령 등의 실효성 확보</li> </ul>
					'14.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25955호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15. 6. 30 개정 대통령령 제26368호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의 확대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전직 준비 등을 돕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을 50세에서 45세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 복귀 등을 돕기 위하여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업 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15. 8. 19 개정 대통령령 제26496호	○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5. 12. 4 개정 대통령령 제26690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훈련 지원수준 상향 근거 마련
					'16.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27738호	<ul> <li>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유급 휴가일수 및 훈련시간을 완화하여 유급휴가훈련 활용률을 제고</li> <li>(7일 이상 유급휴가, 30시간 이상 훈련실시 → 5일 이상 유급휴가, 20시간 이상 훈련실시로 개정)</li> </ul>
					'17. 6. 27 개정 대통령령 제28160호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 (법률 제1449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 하려는 경우 훈련비,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정함



법 링	병 별	주 요 내 용
고 용 보 험 법 시 행 규 칙	'95. 6. 12 제정 노동부령 제100호	○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95. 12. 30 개정 노동부령 제104호	○ 교육훈련계획서 제출기한을 훈련개시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96. 3. 9 개정 노동부령 제106호	<ul> <li>○ 하나의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교육훈련 등계획의 신고시 주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일괄제출하던 것을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제출</li> <li>○ 교육훈련기관 지정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됨에 따라동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li> <li>○ 보험연도를 달리하여계속되는 훈련의 경우 당해연도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은 다음연도 1월까지, 나머지는훈련종료후 1월이내에 정산·제출</li> </ul>
	'95. 6. 12 제정 노동부령 제100호	<ul><li>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li></ul>
	'95. 12. 30 개정 노동부령 제104호	○ 교육훈련계획서 제출기한을 훈련개시 7일 전에서 3일 전 으로 완화
	'96. 3. 9 개정 노동부령 제106호	<ul> <li>○ 하나의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교육훈련 등 계획의 신고시 주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일괄 제출하던 것을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제출</li> <li>○ 교육훈련기관 지정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됨에 따라 동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li> <li>○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훈련의 경우 당해연도 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은 다음연도 1월까지, 나머지는 훈련종료 후 1월 이내에 정산·제출</li> </ul>
	'97. 6. 18 개정 노동부령 제117호	<ul> <li>○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훈련과정과 관련된 실무분야의 유경력 강사를 확보 해야 하는 등의 지원기준을 정함</li> <li>○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을 통합</li> </ul>
	'00. 4. 1 개정 노동부령 제161호	○ 수강장려금에 대한 지원기준 구체화
	'01. 7. 23 개정 노동부령 제173호	<ul> <li>○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훈련종류, 훈련대상자, 훈련방법,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함</li> <li>○ 노동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요건 및한도액을 상향 규정하고, 수강장려금의 지급제한 등을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함</li> <li>※ 훈련수강 신고서 폐지</li> <li>○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훈련실시기관의 위탁계약 체결, 허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훈련실시시 위탁계약 해지ㆍ위탁배제 등의제재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li> </ul>
		정하도록 함  이 예규(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감액 및 미지급되는 범위를 시행규칙에 상향규정하고 훈련수당의 지급수준, 지급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이 유사행정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인력공단 예규에서



법 링	ġ 별	주 요 내 용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대부대상자, 대부대상시설의 범위, 대부한도액, 대부결정의 취소 및 대부금의 반환 등 대부절차 및 비용대부요건을 시행규칙에 상향규정함 ○ 정부위탁훈련의 대상자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탁훈련직종은 노동부장관이 고시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훈련실시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함
고 용 보 험 법 시 행 규 칙	'03. 1. 4 개정 노동부령 제188호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절차 등 신 ○ 능력개발 대부금 대부절차 등 신설
	'04. 10. 1 개정 노동부령 제212호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주말(토/일요일)에만 훈련과정 지원 요건 완화 (2주이상 40시간이상 → 2주이상 20시간 이상)
	'05. 7. 1 개정 노동부령 제229호	<ul> <li>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신청절차 규정</li> <li>인터넷원격훈련 요건을 2주 이상, 40시간 이상에서 8일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완화</li> </ul>
	'06. 12. 1 개정 노동부령 제262호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훈련비 지원금액을 각각의 보험 연도에 최대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훈련과정요건 규정
	'10. 2. 9 개정 노동부령 제338호	<ul> <li>사업주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게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li> </ul>
	'11. 1. 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7호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중 기간제 등 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에서 관련 조항 삭제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12. 1. 2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6호	○ 능력개발비용 대부대상자 선정 철회 근거 마련(제64조)
	'13. 4. 24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81호	<ul> <li>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li> <li>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13. 12. 3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95호	○ 지원에 관한 적용례, 경과조치 보완을 통해 규칙개정을 통한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15. 12. 7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40호	<ul><li>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한 내용을 반영</li><li>시행규칙에 명시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규정 삭제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li></ul>
	'16. 7. 2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ul> <li>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외에 해당 훈련기관도 훈련 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li> </ul>



법 링	병 별	주 요 내 용
국 가 기 술 자 격 법	'73. 12. 31 제정 법률 제2672호	<ul><li>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 제도를 확립하도록 국가적인 정식제도로 제정</li></ul>
	'81. 12. 31 개정 법률 제3510호	○ 국가기술자격법 이관(과학기술처 → 노동부) ○ 기술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신설
	'83. 12. 20 개정	○ 서비스계 신설
	법률 제3664호	○ 보수교육제도 신설 ○ 갱신등록제도 신설
	'97. 3. 27 개정	○ 기술자격등급 단순화
	법률 제5318호	○ 국가와 민간기술자격의 연계체제 구축
	'99. 2. 8 개정	○ 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폐지
	법률 제5890호	○ 갱신등록규정 삭제
	'04. 2. 9 개정	○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계획 수립
	법률 제07171호	○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절차 개선 ○ 자격정지 처분기간의 상한선 명시 등
	'05. 12. 30 개정 법률 제07830호	○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07. 4. 27 개정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교육훈련제도 도입
	법률 제08406호	○ 검정업무 수탁기관 위탁 취소 절차 등
		○ 검정 인증시설 지원 근거 마련
	'10 E 01 71174	○ 자격증 대여 알선자 처벌근거 마련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산업분야를 국가
	'10. 5. 31 개정 법률 제10336호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산업문야들 국가     기술자격의 운영분야로 설정
	티칠 세10000호	○ 주무부장관의 불법대여 조사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14. 5. 20 개정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법률 제12625호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근거마련
	'16. 1. 27 개정 법률 제13899호	○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시에도 자격취소가능 근거마련
		<ul><li>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격인 세부직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일부 심의하는 것으로써 정책심</li></ul>
	'16. 12. 27 개정	의회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 규정
	법률 제14497호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규제 재검토기한 폐지
국 가 기 술 자 격 법	'74. 10. 16 제정 대통령령 제7283호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시 행 령	'76. 12. 31 개정	○ 검정시행을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일부 위탁
	대통령령 제8357호	
	'77. 12. 31 개정	○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위탁 자격종목 확대
	대통령령 제8799호	
	'79. 1. 6 개정	○ 의무검정의 권한 노동청장에 이관
	대통령령 제9283호	
	'79. 6. 22 개정	○ 기술자격 취소 · 정지시 한국기술검정공단에 통보
	대통령령 제9509호	
	'80. 12. 31 개정	○ 열관리기사 1급 등 일부종목 자격기준을 총리령으로 저항
	대통령령 제10124호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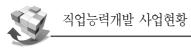
법 링	병 별	주 요 내 용
국가기술자격법 시 행 령	'82. 4. 29 개정 대통령령 제10802호	<ul> <li>사무관리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에 흡수하고 신설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위탁</li> </ul>
	'83. 12. 20 개정 대통령령 제11281호	<ul> <li>검정응시자격에 학력과 경력의 조화 및 사무관리 분야 검정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li> </ul>
	'84. 11. 15 개정 대통령령 제11543호	○ 서비스계 신설 및 보수교육 실시시기, 방법 등 규정 ○ 사무관리분야의 기술자격취득시 등록에서 제외
	'87. 7. 1 개정 대통령령 제12195호	○ 금형, 교통기사 등 신설과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기능사 응시자격 부여
	'88. 12. 19 개정 대통령령 제12555호	○ 각종 서식란에 본적란 제외
	'89. 3. 27 개정 대통령령 제12668호	<ul> <li>화약류관리, 윤활관리 등 14종목 신설과 서비스계에 제과사 및 제빵사 종목 신설과 응시자격 부여</li> </ul>
	'91. 10. 31 개정 대통령령 제13494호	○ 기술계의 분야를 21개분야에서 22개 분야로 확대하고 기능계의 분야를 15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확대
	'93. 7. 8 개정 대통령령 제13925호	<ul><li>교육기관에서 평가받은 성적을 실기시험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자격증 대여시 정지기간 등을 강화</li></ul>
	'94. 11. 10 개정 대통령령 제14413호	<ul> <li>1년간 산학협동훈련을 받은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의 응시자가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 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에서 평가한 성적을 자격검정 성적에 갈음토록 하고, 일부자격 종목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li> </ul>
	'95. 10. 16 개정 대통령령 제14783호	<ul> <li>다기능기술자 응시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기술사등 응시 자격의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섬유기계기능장 등 24개 종목 신설과 서비스계의 타자종목을 폐지</li> </ul>
	'97. 6. 2 개정 대통령령 제15384호	○ 해양생산관리사 1급, 실내건축기능사 등 4개종목 신설 및 전화교환종목 폐지
	'98. 5. 8 개정 대통령령 제15794호	<ul> <li>계열구분 폐지, 자격등급 5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5개 분야</li> <li>기능사보 폐지('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함)</li> </ul>
	'99. 2. 5 개정 대통령령 제16106호	○ 민간이 시행할 수 없는 종목(329종목)을 정함 ○ 전기철도기사·기능사 종목 신설 ○ 모래채취기운전기능사를 준설선운전기능사에 통·폐합
	'99. 10. 11 개정 대통령령 제16572호	<ul> <li>보수교육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전문사무분야를 신설하고 동 분야에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 사회 조사분석사 자격 신설</li> <li>기초사무분야에 전산회계사 신설</li> </ul>



법 링	ġ 별	주 요 내 용
국가기술자격법 시 행 령	'02. 4. 27 개정 대통령령 제17951호 '03. 11. 4 개정	○ 기상예보기술사 등 기술기능분야 21종목 신설 ○ 컨벤션기획사, 게임관련 자격 등 서비스분야 12종목 신설 ○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 기능사 등 15개 종목신설
	대통령령 제18116호 '04. 12. 28 개정 대통령령 제18608호	<ul> <li>○ 검정시행계획 변경기간 설정</li> <li>○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등 운영, 구성</li> <li>○ 응시자격 개선 (관련학과, 비관련학과 차등 적용)</li> </ul>
	'06. 6. 22 개정 대통령령 제19544호 '07. 4. 12 개정	○ 자격종목 신설, 폐지 절차 등 명확화 ○ 자격 등급 법률로 상향 조정에 따른 규정 정비 ○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신설 ○ 전문계고등학교 실기시험 장소 요청 근거
	대통령령 제20003호 '07. 6. 29 개정 대통령령 제20140호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교육훈련 실시기관 ○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일시대행기관
	'08. 12. 17 개정 대통령령 제21170호 '10. 11. 26 개정	<ul> <li>○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업무 대행기관일원화</li> <li>○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면제 기준 조정</li> <li>○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자 응시</li> </ul>
	대통령령 제22507호	자격 규정 삭제
	'11. 10. 12 개정 대통령령 제23216호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검정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2. 1. 6 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12. 1. 26 개정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신설에 검정기준 정비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검정시
	대통령령 제23527호 '12. 5. 1 개정 대통령령 제23759호	학교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 실시 가능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13. 3. 23. 개정 대통령령 제24478호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정비 ○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검정, 자격 상호인정 등 미래부와 고용부 협업 규정
	'13.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14. 11. 19 개정	<ul> <li>○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li> <li>○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관련 세부 규정 신설</li> </ul>
	대통령령 제25741호 '17. 3. 27 개정	○ 신고포상금 및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 관련 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 개정 ○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4497호, 2016. 12.
	대통령령 제27967호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던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규정 삭제  O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도 국가 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17. 12. 19 개정 대통령령 제28485호	<ul><li>과정평가형 자격평가의 외부평가의 재응시 기회를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외부평가에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li></ul>



법 령	ġ ġ	주 요 내 용
국가기술자격법 시 행 규 칙	'74. 10. 10 제정 총리령 제142호	○ 신규제정
	'82. 5. 8 개정 노동부령 제11호	<ul> <li>사무관리분야 종목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흡수됨에</li> <li>따라 시험과목 등을 정함</li> </ul>
	'83. 12. 31 개정 노동부령 제23호	<ul> <li>사무관리분야의 검정기준 및 위탁범위를 정하고 국방부에 위탁할 대상종목을 정함</li> </ul>
	'85. 1. 11 개정 노동부령 제29호	○ 보수교육기관의 종목기관을 정하고 국가기술자격 취소 및 정지기준을 정함
	'87. 9. 1 개정 노동부령 제41호	○ 기술자격종목중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과하는 종목을 신설 하고 사무관리 자격증 서식을 변경함
	'89. 4. 4 개정 노동부령 제51호	○ 윤활관리기사 1,2급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사무관리검정의 합격 결정기준을 신설하며 검정수수료를 정함
	'91. 12. 13 개정 노동부령 제72호	○ 기능장 전종목에 실시 시험부과와 기능사 2급의 선 실 기종목을 폐지하고, 보수교육기관을 추가함
	'93. 8. 19 개정 노동부령 제83호	○ 기술계학원 이수자, 기능사 2급 필기시험 면제기관지정과 응시자격 부여 및 사내기술 대학이수자 응시자격 부여
	'94. 7. 4 개정 노동부령 제92호	○ 직업훈련원의 수료자에게는 훈련과정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목에 바로 응시토록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에게도 필기시험을 바로 면제토록 함
	'94. 11. 15 개정 노동부령 제96호	기능사 2급 자격검정에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공공직업 훈련시설이 평가한 시험성적으로 갈음함에 따라 필요한 문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토록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승강기 기사의 자격종목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을 정함
	'95. 10. 16 개정 노동부령 제101호	○ 다기능기술자 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험과목을 정하고, 기능대학졸업자에게 10분의 5 이상만 이수하여도 시험에 응시토록 조정함
	'97. 7. 29 개정 노동부령 제118호	○ 해양생산관리기사 1급등 4개의 신설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함
	'99. 2. 23 개정 노동부령 제144호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5등급으로 변경 됨에 따른 시험과목 정비, 합격인원예정제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00. 1. 15 개정 노동부령 제160호	○ 보수교육폐지에 따른 규정정비, 상업계졸업자 워드프로 세서 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전산회계사 3급 중 1개 종목 필기시험 면제, 직업상담사 등 4개 직종이 신설됨에 따른 시험과목 등 신설
	'02. 5. 31 개정 노동부령 제183호	○ 컨벤션기획사, 게임관련 자격 등 33종목(기술·기능분야 21종목, 서비스분야 12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등을 신설
	'03. 11. 25 개정 노동부령 제201호	○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15개 종목의 국가기술 자격의 시험과목 신설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복기사, 산업기사 시험과목 변경
	'04. 12. 31 개정 노동부령 제217호	<ul> <li>자격종목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 조정</li> <li>자격증 대여 처분기준 강화</li> <li>출제기준 일몰제 도입</li> <li>종목신설(인간공학기술사 등 9종목), 폐지(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 통합(91→39종목)</li> </ul>



법 링	ġ 별	주 요 내 용
국가기술자격법 시 행 규 칙	'05. 5. 7 개정 노동부령 제223호	○ 시험과목 변경
	'05. 11. 11 개정 노동부령 제239호	○ 자격신설(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종목) ○ 종목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06. 7. 19 개정 노동부령 제255호	○ 전자정부사업 관련 수탁기관 신청서류 일부 전산확인 으로 대체
	'07. 7. 16 개정 노동부령 제279호	○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 검정시설 확보 대상기관 및 지원기준
	'08. 11. 26 개정 노동부령 제311호	<ul><li>○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를 상호주의원칙에 맞도록 삭제</li><li>○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필기시험 면제를 교육훈련</li></ul>
	'10. 12. 1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1호	과정 동일 직무분야로 한정      서비스분야 응시자격의 학력요건 완화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KECO 기반으로 개편하고, 산업     수요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반영      외국자격취득자의 시험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
	'11. 11. 2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35호	○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10개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12. 12. 2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1호	○ 환경분야 자격신설(그린전동자동차기사 등 5개 종목) ○ 종목 통합 및 변경(보일러기능장, 건설기계설비기사) ○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 취득자에 대한 과목면제
	'13. 3. 2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9호	○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그린전동자동차, 온실가스관리, 건설기계설비 및 철도토목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 정비
	'14. 6. 12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 미용사(네일) 종목 신설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소관부처 조정 ○ 국가기술자격 시험합격확인서 수수료 페지
	'14. 11. 2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관련 세부 규정 신설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규정
	'15. 1. 2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 미용사(메이크업) 종목 신설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확대 ○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정비
	'16. 4. 28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55호	ㅇ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시에도 자격취소
	'16. 12. 3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 국가기술자격 54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산업 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5개 자격종목에 대한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정 ○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의 규격 통일



법 링	별	주 요 내 용
국가기술자격법 시 행 규 칙	'17. 12. 15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ul> <li>○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종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 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 및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으로 통합</li> <li>○ 자격취득자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의 유형에 상장형자격증 추가</li> <li>○ 기능사 검정 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대공포야전정비 초급 과정 등 5개과정을 추가하고,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사의종목에 전자기기기능사 등 4개의 종목을 추가</li> </ul>
자 격 기 본 법	'97. 3. 27 제정 법률 제5314호	○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 하는 등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99. 1. 29 개정 법률 제5733호 '05. 5. 31 개정	<ul> <li>○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근거 변경</li> <li>(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li> <li>ㆍ 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li> <li>○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격사유 신설</li> </ul>
	법률 제7428호 '07. 4. 27 개정 법률 제8390호	○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계 도입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 자격정책심의회 신설 ○ 교육훈련 이수자 국가자격 인증 근거 마련
	'08. 2. 29 개정 법률 제8852호 '08. 12. 26 개정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등' 변경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개정
	법률 제9190호 '10. 3. 17 개정 법률 제10093호 '10. 6. 4 개정	○ 자격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 으로 조정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노동부'를 '고용노동부' 변경
	법률 제10339호 '11. 7. 25 개정 법률 제10907호 '13. 3. 23 개정	○ 교육훈련과 자격연계 정비 ○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및 민간자격 신설 기준 마련
	법률 제11690호 '13. 4. 5 개정 법률 제11722호	○ 공인자격취득에 있어서 교육부와 협업체계 마련 ○ 민간자격 관리운영기준 마련 ○ 등록자격 및 자격검정의 운영·지도·감독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인자격의 운영 일반 정비 ○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 변경등록 제도 신설
	'16. 12. 20 개정 법률 제14397호	○ 민간자격의 구구구성관 면성등록 제도 선설 ○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범위 축소



법 경	병 별	주 요 내 용
자 격 기 본 법 시 행 령	'97. 8. 9 제정 대통령령 제15453호	<ul> <li>○ 국가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개선·폐지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제도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자료외에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li> <li>○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현재 당해 민간자격의 시행기간이 1년이상이고, 검정실적이 3회이상 있어야 하는 등 국가의 공인기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li> <li>○ 공인받은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중 국가의 변경공인을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당해 민간자격의 등급·종목 또는검정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 정함</li> <li>○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공인신청서에 민간자격검정실적서 및 검정시설·장비목록등을 제출하도록하는 등 공인신청 및 공인증서교부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li> <li>○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관련되거나 기술변화가급속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보완이필요한 분야의 공인민간자격취득자는 등록·갱신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함</li> </ul>
	'07. 10. 26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346호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 ○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 민간자격의 신설 등록 및 공인절차 마련
	'09. 7. 30 개정 대통령령 제21647호	○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 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자격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며,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409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 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 9. 3 개정 대통령령 제22369호	○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0093호, 2010.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3. 10. 4 개정 대통령령 제24781호	<ul> <li>○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주체의 일원화</li> <li>○ 등록자격관리자 또는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등록 또는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 등의 정지 기준 마련</li> <li>○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제도 도입</li> <li>○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격 광고 표시 내용 구체화</li> </ul>



법 령	별 별	주 요 내 용
자 격 기 본 법 시 행 령	'17. 6. 2 개정 대통령령 제28085호	○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의 근거와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97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였던 근거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 격 기 본 법 시 행 규 칙	'07. 11. 7 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7호	○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법률 제8390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과 「자격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46호, 2007. 10. 26. 공포, 2007. 10. 2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 1. 21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1호	○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 자격의 국가공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격기 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47호, 2009. 7.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서 경제교육 분야와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10. 9. 6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0호	<ul> <li>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함</li> </ul>
	'13. 10. 4 개정 교육부령 제10호	○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등록제 도입 및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2013. 4. 5. 공포, 10. 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81호, 2013. 10. 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 서식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4. 7. 25 개정 교육부령 제41호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등은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 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 및 중앙행정 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민간 자격의 소관 부처 변경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법 링	병 별	주 요 내 용
자 격 기 본 법 시 행 규 칙	'17. 3. 8 개정 교육부령 제126호	○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은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등록관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하되,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간자격등록 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17. 6. 21 개정 교육부령 제132호	○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민간 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이 입증 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을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 사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4397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 자격의 검정기준 등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변경등록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함
직 업 교 육 훈 련 촉 진 법	'97. 3. 27 제정 법률 제5416호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직업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10. 3. 17 개정 법률 제10092호	<ul> <li>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직업 교육훈련정책심의회 폐지</li> </ul>
	'11. 6. 7 개정 법률 제10776호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15. 1. 20 개정 법률 제13048호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시설·장비현황,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신설



법 링	병 별	주 요 내 용
은 한 법 의 전 의 전 의 전 의 전 의 전 의 전 의 전 의 전 의 전 의 전	'16. 2. 3 개정 법률 제13942호 '18. 3. 27 개정 법률 제15525호	<ul> <li>○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현장실습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li> <li>○ 현장실습계약 체결 및 협약서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li> <li>○ 미성년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 실습시간, 휴일 및 야간 근로를 구체적으로 제한함</li> <li>○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함</li> <li>○ 현장실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일부 준용하도록 함</li> <li>○ 현장실습시간을 위반하거나 야간 및 휴일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벌칙을 규정함</li> <li>○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li> <li>○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 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함</li> <li>○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 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li> <li>○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li> <li>○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함</li> <li>○ 현장실습신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li> <li>○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li> <li>○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li> </ul>
직 업 교 육 훈 련 촉 진 법 시 행 령	'97. 8. 9 제정 대통령령 제15452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함     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이수기간은 그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표준 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국가 유공자 등을 정원의 100분의 30범위안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법 경	병 별	주 요 내 용
직 업 교 육 훈 련 촉 진 법 시 행 령		<ul> <li>○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의 위원을 재정경제원장관·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 등으로 정함</li> <li>○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주기는 5년의 범위내에서 산업교육기관 및 기술대학 등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기타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li> </ul>
	'99. 2. 5 개정 대통령령 제16103호	사항을 정함  o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종전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외에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이수하도록 하던 현장실습을 앞으로는 교육과정중에 교과 또는 실습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4.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25901호	○ 직업교육훈련생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기준을 폐지함
	'16. 8. 2 개정 대통령령 제27419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942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및 시・도 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 지도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의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실습계약서에는 직업교육 훈련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의 경우에는 50만원, 2차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3차 위반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 능 장 려 법	'89. 4. 1 제정 법률 제4123호 '91. 1. 14 개정 법률 제4329호	<ul> <li>○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li> <li>○ 장기근속기능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한 명장제도 신설</li> <li>○ 민간부문의 기능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제도 신설</li> </ul>



법 링	병 별	주 요 내 용
기 능 장 려 법	'01. 3. 28 개정 법률 제6453호 '05. 12. 30 개정 법률 제7826호	<ul> <li>○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대상을 기능을 전수하는 자와 함께 기능을 전수받는 자까지 확대</li> <li>○ 기능장려금의 지급범위를 명장 및 우수지도자와 함께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까지 확대</li> <li>○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시·도지사가 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li> </ul>
숙 련 기 술 장 려 법	'10. 5. 31 전부개정 법률 제10338호	<ul> <li>○ 법률의 제명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li> <li>○ 5년마다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규정</li> <li>○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li> <li>○ 민간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li> </ul>
	'15. 1. 20 개정 법률 제13046호 '16. 1. 27 개정 법률 제13907호	<ul> <li>부정행위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등의 지원제한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려는 것임</li> <li>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관을 쉽게 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장료 징수 제도를 폐지</li> </ul>
기 능 장 려 법 시 행 령	'89. 10. 13 제정 대통령령 제12817호 '91. 4. 13 개정 대통령령 제13349호	<ul> <li>○ 기능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li> <li>○ 명장의 선정절차와 우대사항,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li> <li>○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절차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정함</li> <li>○ 국내기능경기대회를 시·도지사 중심으로 지방소재 관련 단체 등에서 개최·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부와 명장부의 구분을 폐지함</li> </ul>
	'00. 5. 1 개정 대통령령 제16800호 '01. 7. 30 개정 대통령령 제17328호 '06. 6. 12 개정	<ul> <li>○ 기능장려적립금의 재원 · 운용방법 · 용도, 기타 동 적립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li> <li>○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를 우수기능인과 기능 장학생으로 하고 선정대상 및 우대사항을 정함</li> <li>○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정함</li> <li>○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권한 등이 노동부장관에서 시 ·</li> </ul>
숙 련 기 술 장 려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9511호 '10. 12. 31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604호 '13. 8. 20 개정	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공고등 관련 권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함  ○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 및 절차와 선정 취소의 세부 내용을 정함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내용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예우 및 우대 조치의 주체를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4693호	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함(대한민국명장증서 및 대한민국 명장패 수여자를 대통령으로 격상)



법 령	별	주 요 내 용
숙 련 기 술 장 려 법 시 행 령	'16. 6. 28 개정 대통령령 제27279호	○ 이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 중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거나 재참기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 후 처음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대회의 참기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기 능 장 려 법 시 행 규 칙	'89. 11. 2 제정 노동부령 제56호	○ 기능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91. 8. 6 개정 노동부령 제70호	○ 명장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추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01. 11. 30 개정 노동부령 제179호	○ 우수기능인 등의 추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06. 5. 30 개정 노동부령 제251호	<ul> <li>○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선정 추천시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의무 폐지</li> <li>○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대상변경(최고득점자→상위 1위에서 3위)</li> </ul>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11. 1. 3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6호	<ul><li>○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의 신청 절차를 정함</li><li>○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 등을 정비</li><li>○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내 개최 시 입장료 징수 규정</li></ul>
	'13. 8. 2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87호	<ul><li>대한민국명장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 민국명장패의 수여자(授與者)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대 통령으로 격상</li></ul>
한 국 직 업 훈 련 관 리 공 단 법	'81. 12. 31 개정 법률 제3506호	○ 직업훈련의 실시 및 연구개발과 기술자격검정을 분산적 으로 실시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설립
	'83. 12. 31 개정 법률 제3712호	○ 공단관리기금 출연근거 확대 (산업기술대학에 대한 출연금)
	'86. 5. 9 개정 법률 제3813호	○ 공단관리기금 출연근거 교부조항 삭제 (산업기술대학에 대한 출연금)
	'91. 1. 14 개정 법률 제4332호	○ 법률명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서 한국산업인력 공단법으로 변경
		○ 공단명칭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으로 변경
		○ 직업훈련자격검정 이외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한 국 산 업 인 력	'97. 12. 24 개정 버를 제5476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
공 단 법   	법률 제5476호	('98. 1. 1) ○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으로 변경
	'99. 2. 8 개정 법률 제5880호	<ul> <li>○ 상근이사 4인을 3인으로 감축</li> <li>○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등 정비</li> <li>○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범위를 "기술자격 검정"에서 "자격검정"으로 확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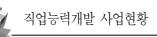
법 령	별	주 요 내 용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법	'03. 8. 16 개정 법률 제6967호 '04. 12. 31 개정 법률 제7298호 '05. 12. 30 개정 법률 제7824호 '08. 12. 31 개정 법률 제9320호 '10. 5. 31 개정 법률 제10338호 '11. 3. 9 개정 법률 제10461호	<ul> <li>의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사업범위에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추가</li> <li>○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의 법명변경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li> <li>○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 양성훈련에서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으로 재편</li> <li>○ 공단의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정비</li> <li>○ 자격검정시험 관련 비밀엄수 의무자 추가</li> <li>○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li> <li>○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사업을 법 목적에 추가</li> <li>○ 국외분사무소 설립근거 추가</li> <li>○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 병격</li> </ul>
한 국 직 업 훈 련 관 리 공 단 법 시 행 령 한 국 산 업 인 력 한 국 산 업 인 력 관 리 공 단 법	'82. 3. 8 제정 대통령령 제10750호 '91. 4. 11 개정 대통령령 제13347호	시기 변경
시 행 령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법 시 행 령	'98. 2. 2 개정 대통령령 제15621호 '08. 1. 22 개정 대통령령 제20560호	<ul> <li>○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이 개정(1997·12·24, 법률 제5476호) 되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이미 폐지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함에따라 현재 19명 이내로 되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의정원 중에서 관련 부처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운영하고있는 당연직이사의 수를 줄임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맞추어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함</li> </ul>



		밭		큥	별	주 요 내 용
1		산 입법 시			'11. 12. 14 개정 대통령령 제23377호	○ 고용노동부장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폐지하고, 공인회계사 외에 회계법인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 산업인력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20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한국노동교육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업무를 인계하고 해산함에 따라 「한국노동교육원법 시행령」을 폐지함
기	니0	대	학	법	'77. 7. 23 제정 법률 제3009호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능장을 양성하여 근로자의 기술·기능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91. 1. 14 개정 법률 제4330호	○ 기능장 양성을 훈련직종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 하여 교육과정을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하여 신축적 운영
					'93. 12. 27 개정 법률 제4638호	○ 기능대학의 기능을 기존의 기능장 양성외에 다기능기술자 양성 등으로 확대
						○ 일정범위 내에서는 교원이외의 자를 시간강사로 위촉 하여 직업훈련을 담당토록 규정
					'95. 12. 29 개정 법률 제5102호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에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인정
					'97. 12. 24 개정 법률 제5475호	○ 기능대학의 정의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 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 업훈련과정 등을 병설·운영하는 대학으로 명시
						○ 기능대학의 설립·운영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법인으로 명시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에게 산업학사 학위 수여
					'01. 1. 29 개정 법률 제6400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
					'04. 12. 31 개정 법률 제7301호	○ 명장취득,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학점 인정범위 확대
					'05. 12. 30 개정 법률 제7823호	○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 등 수행 등 근거 마련
						○ 기능대학의 명칭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 사용 가능
					'08. 2. 29 개정 법률 제 8852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09. 10. 9 개정 법률 제9792호	○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일부 개정



법 링	ġ 별	주 요 내 용
기 능 대 학 법	'10. 5. 31 폐지 법률 제10337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통합 - 기능대학법 폐지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법	'97. 3. 27 제정 법률 제5315호	○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와 국민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개발사업,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 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99. 3. 1 개정 법률 제5733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근거 변경: 정부출연연구 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이관('99. 3. 18)



## 4.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NCS 직종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가(원)	
04 11047171	04 (1047171	01. 프로젝트관리	5,579	
01. 사업관리	01. 사업관리	02. 해외관리	5,579	
		01. 경영기획	7,404	
	01. 기획사무	02. 홍보·광고	7,080	
		03. 마케팅	6,684	
		01. 총무	6,982	
	02. 총무·인사	02. 인사·조직	8,508	
02. 경영 회계·사무		03. 일반사무	5,579	
		01. 재무	6,956	
	03. 재무·회계	02. 회계	6,419	
		01. 생산관리	6,010	
	04. 생산·품질관리	02. 품질관리	7,161	
		03. 무역・유통관리	6,313	
		01. 금융영업	6,331	
		02. 금융상품개발	5,880	
	01 70	03. 신용분석	6,467	
	01. 금융	04. 자산운용	5,886	
03. 금융·보험		05. 금융영업지원	5,418	
		06. 증권·외환	6,620	
	02. 보험	01. 보험상품개발	7,436	
		02. 보험영업·계약	6,913	
		03. 손해사정	6,258	
	01. 학교교육	01. 학교교육	6,070	
┃   04. 교육·자연·	02. 평생교육	01. 평생교육	6,083	
04. 교육·사원·   사회과학	UZ. 성경포폭 	02. 평생교육운영	6,427	
사외파의	00 제어크오	01. 직업교육	6,585	
	03. 직업교육	02. 이러닝	6,506	
	01. 법률	01. 법무	6,688	
	UI. 日 B	02. 지식재산관리	6,655	
05. 법률·경찰·소방·		01. 소방	6,136	
교도·국방	02. 소방방재	02. 방재	6,150	
		03. 스마트재난관리	6,143	
		01. 의료기술지원	4,009	
	01. 보건	02. 보건지원	5,543	
06. 보건·의료		03. 약무	4,009	
	00 01 =	01. 임상의학	6,962	
	02. 의료	02. 간호	5,775	



NCS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가(원)
		03. 기초의학	6,166
		04. 임상지원	5,953
	04 시원보기	01. 사회복지정책	6,173
	01. 사회복지	02. 사회복지서비스	6,618
		01. 직업상담서비스	6,411
07. 사회복지·종교	02. 상담	02. 청소년지도	6,419
		03. 심리상담	6,412
	03. 보육	01. 보육	6,102
		01. 문화예술경영	6,440
	04 묘원 에스	02. 실용예술	6,679
	01. 문화·예술	03. 공연예술	6,454
		04. 문화재관리	6,190
08. 문화·예술·	02. 디자인	01. 디자인	5,263
디자인·방송		01. 문화콘텐츠기획	6,997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2. 문화콘텐츠제작	6,181
	03. 문화콘텐츠	03. 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6,829
		04. 영상제작	5,421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8,144
	00 TEQUIOA	01. 철도운전운영	6,403
	02. 철도운전·운송	02. 철도시설유지보수	6,385
09. 운전·운송		01. 선박운항	8,147
	03. 선박운전·운송	02. 검수·검량	6,698
	04 최고 0 저	01. 항공기조종운송	7,117
	04. 항공운전·운송	02. 항공운항	7,117
	01. 영업	01. 일반·해외영업	7,389
		01. 부동산컨설팅	6,959
	00 H = 1	02. 부동산관리	6,066
10 어어린테	02. 부동산	03. 부동산중개	5,796
10. 영업판매		04. 감정평가	6,462
		01. e-비지니스	6,904
	03. 판매	02. 일반판매	6,767
		03. 상품중개・경매	6,836
	01. 경비	01. 경비·경호	5,839
11. 경비·청소	00 청소 비타	01. 청소	6,433
	02. 청소·세탁	02. 세탁	6,278
	01. 이·미용	01. 이·미용서비스	6,253
12. 이용·숙박·여행·	00 71 - 71-"	01. 결혼서비스	6,440
오락·스포츠	02. 결혼·장례	02. 장례서비스	5,903



NCS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가(원)
		01. 여행서비스	6,302
	00 717171	02. 숙박서비스	7,882
	03. 관광·레저	03. 컨벤션	6,221
		04. 관광레저서비스	5,850
		01. 스포츠용품	6,443
		02. 스포츠시설	6,343
	04. 스포츠	03. 스포츠경기·지도	6,299
		04. 스포츠마케팅	6,358
		05. 레크리에이션	6,420
		01. 음식조리	7,567
13. 음식서비스	01. 식음료조리·서비스	02. 식음료서비스	7,696
		03. 외식경영	7,602
		01. 건설시공전관리	7,210
	01. 건설공사관리	02. 건설시공관리	7,203
		03. 건설시공후관리	7,346
		01. 토목설계·감리	7,529
	02. 토목	02. 토목시공	7,587
		03. 측량·지리정보개발	6,781
		01. 건축설계·감리	6,276
	03. 건축	02. 건축시공	5,845
		03. 건축설비설계·시공	5,821
	04. 플랜트	01. 플랜트설계·감리	6,093
		02. 플랜트시공	5,441
		03. 플랜트사업관리	5,767
	05. 조경	01. 조경	6,760
14. 건설 	00 54 75	01. 국토·도시계획	6,381
	06. 도시·교통	02. 교통계획·설계	6,381
		01. 토공기계운전	7,252
		02. 기초공건설기계운전	7,155
	07 7 M 7 1 N 0 N 1 N 1 N 1 N 1 N 1 N 1 N 1 N 1 N	03. 콘크리트공기계운전	7,155
	07. 건설기계운전·정비	04. 적재기계운전	7,155
		05. 양중기계운전	7,325
		06. 건설기계정비	7,330
		01. 해양환경조사	6,536
		02. 해양환경관리	6,536
	08. 해양자원	03. 해양플랜트설치·운용	6,536
		04. 해양자원개발·관리	7,321
		05. 잠수	6,536



NCS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가(원)
	04 기계사계	01. 설계기획	6,218
	01. 기계설계	02. 기계설계	5,438
	00 71717	01. 절삭가공	5,673
	02. 기계가공	02. 특수가공	6,057
		01. 기계조립	5,702
	03. 기계조립·관리	02. 기계생산관리	5,641
	04. 기계품질관리	01. 기계품질관리	5,850
		01. 기계장비설치·정비	6,874
	05. 기계장치설치	02. 냉동공조설비	7,434
		03. 이륜차정비	7,154
		01. 자동차설계	4,471
		02. 자동차제작	5,495
	06. 자동차	03. 자동차정비	5,391
		04. 자동차정비관리	5,495
		05. 자동차관리	5,358
15. 기계		01. 철도차량설계·제작	6,223
	07. 철도차량제작	02. 철도차량유지보수	5,736
		01. 선박설계	5,543
		02. 선체건조	5,916
		03. 선체의장생산	5,318
	08. 조선	04. 선박품질관리	4,685
		05. 선박생산관리	4,618
		06. 시운전	4,605
		07. 선박정비	5,250
		01. 항공기설계	7,231
	00 회고기제자	02. 항공기제작	7,115
	09. 항공기제작	03. 항공기정비	6,560
		04. 항공장비관리	7,400
		01. 사출금형	5,506
	10. 금형	02. 프레스금형	5,506
		03. 다이캐스팅금형	5,506
		01. 금속엔지니어링	5,788
		02. 금속재료제조	5,788
	01. 금속재료	03. 금속가공	6,223
   16. 재료		04. 표면처리	6,544
		05. 용접	7,097
		01. 파인세라믹제조	6,114
	02. 요업재료	02. 전통세라믹제조	6,114
		VC. LOMINITMIT	0,114



NCS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가(원)
	01 취하므지 취하고저	01. 화학물질관리	5,914
	01. 화학물질·화학공정 관리	02. 화학공정관리	5,382
	- 건니 	03. 화학제품연구개발	5,850
	00 사이 기구 하하므	01. 석유·천연가스제조	7,000
	02. 석유·기초화학물 제조	02. 기초유기화학물제조	5,784
17 취하	시 ·	03. 기초무기화학물제조	6,184
17. 화학		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6,752
	02 저미칭하게프게 조	02.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7,000
	03. 정밀화학제품제조	03. 바이오의약품제조	7,000
		04. 바이오화학제품제조	7,000
		01. 플라스틱제품제조	7,000
	04. 플라스틱제품제조	02. 고무제품제조	7,000
		01. 섬유생산	6,015
	01. 섬유제조	02. 섬유가공	6,024
		03. 섬유생산관리	6,015
18. 섬유·의복		01. 패션제품기획	6,335
	02. 패션	02. 패션제품생산	5,765
		03. 패션제품유통	6,492
		04. 신발개발·생산	7,812
		01. 발전설비설계	8,997
		02. 발전설비운영	5,696
		03. 송배전설비	8,966
		04. 지능형전력망설비	5,540
		05. 전기기기제작	5,437
	04 7471	06. 전기설비설계·감리	5,566
	01. 전기	07. 전기공사	6,250
		08. 전기자동제어	5,858
		09. 전기철도	6,418
   19. 전기·전자		10. 철도신호제어	5,934
		11. 초임계CO <sub>2</sub> 발전	6.466
		12. 전기저장장치	6,466
		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7,541
	02. 전자기기일반	02. 전자부품기획·생산	5,194
		03. 전자제품고객지원	7,298
		01. 가전기기개발	5,200
		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5,091
	03. 전자기기개발	03. 정보통신기기개발	5,054
		04. 전자응용기기개발	5,635



NCS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가(원)	
		05. 전자부품개발	6,473	
		06. 반도체개발	5,333	
		07. 디스플레이개발	5,768	
		08. 로봇개발	5,744	
		09. 의료장비제조	5,570	
		10. 광기술개발	5,504	
		11. 3D프린터개발	5,504	
		12. 가상훈련시스템개발	5,534	
		13. 착용형스마트기기	5,534	
		01. 정보기술전략·계획	7,324	
		02. 정보기술개발	6,574	
	01. 정보기술	03. 정보기술운영	6,577	
	UI. 정도기물	04. 정보기술관리	6,577	
		05. 정보기술영업	5,718	
		06. 정보보호	6,554	
20. 정보통신	02. 통신기술	01. 유선통신구축	5,888	
		02. 무선통신구축(이동통신포함)	5,590	
		03. 통신서비스	5,995	
		04. 실감형콘텐츠제작	5,824	
		01. 방송제작기술	5,756	
		02. 방송플랫폼기술	9,607	
		03. 방송서비스	6,383	
		01. 식품가공	9,825	
  2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2. 식품저장	5,608	
21. 역품/18 		03. 식품유통	6,420	
	02. 제과·제빵·떡제조	01. 제과·제빵·떡제조	6,609	
	04 이세 초교	01. 출판	5,968	
22. 인쇄·목재·가구·	01. 인쇄·출판	02. 인쇄	5,959	
공예	00 7.11	01. 공예	7,971	
	02. 공예	02. 귀금속·보석	7,813	
		01. 수질관리	8,497	
		02. 대기관리	8,758	
	   01. 산업환경	03. 폐기물관리	8,789	
	VI. CHEO	04. 소음진동관리	8,960	
23. 환경·에너지·안전		05. 토양관리		
	00 =1=1::=!		8,971	
	02. 환경보건	01. 환경보건관리	9,123	
	03. 자연환경	01. 생태복원·관리	7,385	



	NCS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가(원)	
	04. 환경서비스	01. 환경경영	8,437	
	104. 된경시미요	02. 환경평가	8,472	
		01. 광산조사·탐사	9,912	
		02. 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9,266	
	│ │05. 에너지·자원	03. 광산환경관리	6,176	
	00. 에디지 시원	04. 광산보안	5,644	
		05. 신재생에너지생산	6,832	
		06. 에너지관리	7,101	
		01. 산업안전관리	5,353	
	06. 산업안전	02. 산업보건관리	7,889	
		03. 비파괴검사	5,641	
		01. 작물재배	6,992	
	01. 농업	02. 종자생산·유통	7,676	
		03. 농촌개발	8,587	
	   02. 축산	01. 축산자원개발	5,464	
	02. 독년	02. 사육관리	5,891	
   24. 농림어업		01. 산림자원조성	7,100	
[24. 궁금이님	03. 임업	02. 산림관리	8,715	
		03. 임산물생산·가공	8,748	
		01. 어업	6,222	
	   04. 수산	02. 양식	5,022	
	04. 구긴	03. 수산자원관리	5,022	
		04. 어촌개발	8,255	

## 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 직종 개수 : ('07) 91개 → ('08) 83개 → ('09) 78개 → ('10) 103개 → ('11) 102개 → ('12) 109개 → ('13) 109개 → ('14) 109개 → ('15) 114개 → ('17) 112개 → ('18) 122개

대분류	기간산업직종(46개)	전략산업직종(26개)	서비스산업직종(50개)
경영·회계·사무(5)			물류관리, 품질경영, 마케팅전략기획(마케팅PD), 핀테크, 기술문서작성가 (5)
교육·자연·사회과학(1)		빅데이터 전문가 (1)	
문화·예술· 디자인·방송(8)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영상제작, 디지털디자인, 3D영상제작, 게임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8)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3)			국제관광마케팅, 크루즈, 마리나 (3)
건설(17)	건축목공, 건축시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조경, 가스설비시공, 열냉동설비, 건축설비 설계·시공, 창호시공, 철도안전 (11)	그린홈시공,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4)	U-city(건설·토목·IT), BIM (2)
기계(33)	기계설계제작, 공유압, 생산기계, 치공구, 기계조립, 선체의장, 선체조립,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타), 사출금형, 선반(CNC선반),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기계, 공조냉동기계, 열기계, 시스템제어, 측정 (18)	의료기기제작,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새시정비, 자동차튜닝, 영상촬영드론조종 (6)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생산정보시스템, 선박기관정비, 드론 제어, 스마트팩토리 설계, 스마트팩토리 운영 관리 (9)
재 료(5)	레이저용접, 수중용접,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4)	품질관리기술자 (1)	
섬유·의복(2)	염색가공 (1)		패션디자인 (1)
전기·전자(13)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 생산), 전자시스템제어, 전자부품개발, 전기시스템제어 (7)	LED응용, 반도체장비설비, 반도체생산, 태양광발전설비,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3D프린터 운용 (6)	
정보통신(18)	광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2)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3)	정보시스템구축(개발, 운영),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RFID·USN응용,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홈IOT관리, 산업IOT 관리, 클라우드 운영 관리,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UI전문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13)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5)	특수인쇄, 평판인쇄 (2)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 · 에너지 · 안전(6)	광산자원개발생산 (1)	태양에너지생산 (1)	생태복원·관리, 산업환경, 비파괴검사, 환경보건관리 (4)
농림, 수산(6)		종자생산·유통, 할랄/코셔, 스마트팜구축 (3)	말조련, 곤충사육, 동물매개치유 (3)

## 6. 직업능력개발관련 조사 현황

조사명	주요내용	조사대상 ('14기준)	수행기관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 지역별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 훈련기관 훈련공급 능력	○ 사업체	○ '07~'08 : 한고원 ○ '09 : 노동연구원 ○ '10 : 한국기술교육대 ○ '11~'14 : 직능원 ○ '15~'17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능원 위탁)
직업훈련이수자 실태조사	○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참여 현황 및 훈련성과 체계적 분석, 훈련지원정책 방향 모색, 이수자 성과 평가방법론 정립 등	○ 훈련참여자	○ '08 : 직능원 ○ '09 : 노동연구원 ○ '10 : 성균관대 ○ '11 : 고려대 ○ '12~'13 : 직능원 ○ '14 : 한국노동경제학회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매년)	○ 숙련부족 및 훈련인프라, 근로자 직업훈련 실시 현황, 정부지원제도 및 향후 교육훈련 투자 전망, 중소기업 숙련 수요 등	○ 10인 이상 기업	<ul> <li>○ '08~'15</li> <li>: 고용노동부</li> <li>○ '16</li> <li>: 고용노동부</li> <li>(직능원 위탁)</li> <li>○ '17</li> <li>: 고용노동부</li> </ul>

## 직업늉력개발 사업현황

- ■인 쇄 2018년 7월 30일
- ■발 행 고용노동부
- ■편 집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 (044)202-7282
- ■제 작 디자인 범신

(042)254 - 8737